

월간

재정포럼 7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11년 7월호 제181호

현안분석 • 장기재정전망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박형수
• 대지진이 일본 경제에 미친 영향/ 원종학

정책연구 •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조세정책방향 외

정책흐름 •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외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02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을 위한 제언 · 김성태
현안분석	06 장기재정전망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 박형수 16 대지진이 일본 경제에 미친 영향 · 원종학
공공정책포럼	31 2020 Vision과 KEPCO Way
정책연구	37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조세정책방향 · 노영훈 41 헌법과 재정 · 김정훈 · 박형수 · 김종면 · 최준욱 · 김현아 · 홍승현 43 저출산 대응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 및 영향 분석 · 최준욱 · 송헌재 47 재정분권과 지역경제 성장의 수렴 · 김정훈 50 유효법인세율 측정과 법인세율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 이 영 · 조명환 5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모형 연구 · 이 영 · 전병hil 56 탄소배출권의 회계처리 및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이준규 · 김문철 · 박상원 58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 손원익 · 이순태 · 박세경
주요국의 조세동향	60 뉴질랜드의 예산안 발표 외
정책흐름	70 2012년도 예산안 요구현황 및 편성방향 73 2011년 제2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개최 78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92 지방세 환급금 정보공유체계 구축으로 체납 징수 강화
재정통계	94 일반회계 일반재정 세입세출 결산규모 외
이슈 & 포커스	112 한국 GDP 대비 법인세 비중, OECD 평균의 1.2배 외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을 위한 제언



김성태
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최근 무상급식으로 시작하여 무상보육, 더 나아가 무상의료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복지논쟁은 자체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는 너무 소모적이다. 복지논쟁의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범국민적으로 복지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한국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복지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간의 복지논쟁은 정치권이 복지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우리 사회가 추구하여야 될 진정한 복지제도를 모색하는 것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OECD 작성기준으로 2009년 약 111조원으로 추계되어, GDP 대비 10.3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아직도 절대규모에 있어 낮은 수준이나 1990년에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3.08%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증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OECD 국가 평균 19.84%에 비하여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고령화나 조세부담률 등을 고려하더라도 복지국가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이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경제적 복지 포퓰리즘, 소모적 논쟁 불과

복지국가(welfare state)는 모든 국민의 경제·사회적 후생의 보호와 증진이 국가의 주요 사명인 국가를 의미한다. 복지국가는 일찍이 고전적 복지국가로부터 시작하여 북구형 복지모형을 근간으로 하는 현대적 복지국가에 이르기까지 특정 국가의 경제·사회 환경에 따라 각기 고유의 특징을 보이면서 발전하여 왔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복지국가 모델은 무엇인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최근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보여준 복지 포퓰리즘은 진정한 복지국가 건설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야당은 무상급식을 선

거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지방선거에서 성공하자 후속타로 무상으로 보육을 하고, 의료까지 무상으로 하겠다고 기세가 당당하다. 수세에 몰린 여당은 급기야 반값 등록금으로 반격(?)하여 여론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하였다. 물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50%는 안 되고 30%까지는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물론 국가재정에서 4조~5조원의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이다. 최근의 복지논쟁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복지 이슈를 도출하여 여론에 터뜨리고 다시 사회는 그 제안에 대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하는 아주 좋지 않은 과정을 되풀이할 개연성이 아주 높다.

우리나라 고유의 복지국가 모델 정립 개요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복지국가 모델을 정립하여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어찌보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기회가 온 것이다.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첫째, 사회복지지출의 규모와 증가속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국민으로 하여금 네 가지 옵션 - <고부담-고복지>, <저부담-저복지>, <고부담-저복지>, <저부담-고복지> -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이 중에서 <고부담-저복지>는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으므로 논외가 될 것이다. 한편 <저부담-고복지> 역시 재정적 뒷받침이 없으므로 선택가능 집합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끝으로 남는 것은 <고부담-고복지> 또는 <저부담-저복지> 두 가지 옵션밖에 없다. 그러나 사실은 국민의 선택은 더욱 다양할 수 있다. 즉, 국민이 부담을 전제로 복지혜택 수준을 정하는 한 모든 수준의 세부담과 그에 따른 복지혜택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북구 제국의 경우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조세부담률이 한 때 60%가 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그밖에도 근로의욕 감퇴, 투자의욕 감퇴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의 활력을 감퇴시켜 궁극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활력을 잃게 되어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복지수준과 조세부담률이 너무 높아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뒷받침되는 복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복지제도가 재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어 국가채무를 증가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저부담-고복지> 선택이 가능한 것처럼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대안이므로 선

.....
 사회복지지출의
 규모와 증가속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현재로서는
우선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또한 향유하여야만 하는
최소한의 복지 수준과
범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것이다.
.....

택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래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현재 세대의 복지를 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셋째, 매년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결정되면 하향식(top-down) 복지지출 모델은 기본으로 분야별 지출비중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최근의 복지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각계각층의 복지에 대한 수요는 다양하고 그 규모도 상당히 크다. 따라서 재원의 제약을 고려하여 필요한 분야부터 지출하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보편적 복지 대 맞춤형 복지” 논쟁은 현재 우리의 복지수준으로 보면 너무 고급스런 논쟁이다. 현재로서는 우선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또한 향유하여야만 하는 최소한의 복지(national minimum) 수준과 범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될 것이다. 최소한의 복지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조달과 조세부담률 수준은 현재 수준보다는 확실히 높은 수준이 될 것이다.

넷째, 한국형 복지국가모델의 마지막 문제는 재정조달방안이다. 궁극적으로 조세부담률을 현재 수준보다 높일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어떤 세목의 부담비중을 높일 것인가라는 과제에 대한 해답은 소비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 소비세가 뒷받침하는 복지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KIP**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장기재정전망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박형수 ·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 대지진이 일본 경제에 미친 영향
원종학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장기재정전망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hspark@kipf.re.kr)

일부 선진국의 경우
복지분야 개혁 지연으로
경제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의 작성을 통해
중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 및 의료 분야에서의
제도적 개선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

I. 문제 제기

국가운용의 핵심인 재정 측면에서 국가 미래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국가적 당면과제에 대해 미래 경제·재정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불안을 해소하고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장기재정전망(long-term fiscal projection) 및 세대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 보고서의 작성은 이러한 노력의 첫걸음이자 논의의 중요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어느 선진국보다 급속하고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지금부터라도 복지 등 세출 구조조정·효율화, 세원확충 노력을 시작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장기재정전망은 이러한 미래 대비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책추진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복지분야 개혁 지연으로 경제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영국은 1970년대에 복지지출 및 실업급여 확대로 재정적자가 급증한 적이 있으며, 스웨덴도 복지지출 증대로 1990년대 초에 경기침체 및 재정악화를 겪었다. 일본도 1970년대 이후 복지지출의 지속적 증가 및 1990년대 이후 경기침체로 최근까지 재정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의 작성을 통해 중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 및 의료 분야에서의 제도적 개선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¹⁾.

* 본 원고는 2011~2015 국가재정 운용계획 총괄 및 총량분야 작업반(장기재정반)의 작업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저자의 판단으로는 국민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연계하여 2007년 연금개혁 이후의 추가적인 연금제도 개선 및 재정안정화 방안이, 지역연금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 재정안정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의료비지출 효율화 방안, 민간과 정부의 역할 재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OECD,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각국 정부로 하여금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지침으로 권고하고 있다²⁾. 2009년 현재 OECD국가 중에서 아이슬란드,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27개국이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장기 재정전망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5년 시계의 중기전망만 실시하고 있다.

〈표 1〉 OECD국가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작성 현황

작성주기 전망기간	매년	정기(3~5년)	부정기	소계
21~30년	-	-	한국	1
31~40년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3
41~50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 스페인, 영국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	18
51~60년	체코, 스웨덴			2
60년 이상	덴마크, 미국		네덜란드	3
소계	18	5	4	27

자료: OECD "Fiscal Futures, Institutional Budget Reform and Their Effects: What Can Be Learned?" (2009년 9월)

그런데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장기 재정전망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5년 시계의 중기전망만 실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는 2006년 8월 참여정부 당시 발표된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2030』이 유일한데, 전망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객관적인 전망이라기보다는 능동적인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목표를 제시하는 등 장기비전 제시에 가깝다. 또한, 한국조세연구원 등 일부 연구기관과 IMF의 2007년 한국 경제보고서 등 정부 이외 기관에서 장기재정전망이 시도된 바 있었으나 전망의 대상 및 추계방법이 달라 205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75.4%~115.6% 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2) OECD 재정투명성 지침 (Best Practices on Budget Transparency, 2002년)의 1.7. 'Long-term report' 항목 및 IMF 재정투명성 지침(Code of Good Practices on Fiscal Transparency, 2007, 1997년판의 업데이트 버전)의 '3.1.7' 항목 등을 참조하라.

우리나라는 장기재정추계 인프라가 부족하고 체계적인 장기재정전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장기재정전망 비교

(단위: GDP 대비, %)

전망기관	시나리오	변수	2006	2010	2015	2020	2030	2040	2050
• IMF ('07. 10)	현행제도	재정수지	0.4	2.0	-	1.5	0.1	△3.0	△7.2
		국가채무	33.4	34.8	-	33.0	38.0	52.9	79.2
• 조세연 ('09. 10)	조세부담률 고정	재정수지	-	△2.93	△0.8	△1.1	△3.1	△5.5	△8.0
		국가채무	-	6.9	33.0	29.0	36.1	66.9	115.6
• 삼성연 ('07. 10)	현행제도	재정수지	0.40	1.82	1.14	0.45	△1.21	△2.85	△4.33
		국가채무	33.4	24.8	25.9	30.8	44.9	60.3	75.4

자료: IMF('07. 10)은 "Republic of Korea: 2007 Article IV Consultation," IMF Country Report No. 07/344, October 2007, 조세연('09. 10)은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조세연구원, 2009. 10, 삼성연('07. 10)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과제」,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625호, 2007. 10. 17.

이상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적 당면과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의 작성이 불가피하며, 부족한 장기재정전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다.

II. 장기재정추계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장기재정추계 인프라가 부족하고 체계적인 장기재정전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7조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장기 재정전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5년 시계의 중기 전망만 실시하고 있다³⁾. 4대 공적연금은 각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전망 일정이나 전망방법 및 전망 전제가 상이한 등의 문제가 있으며 전망체계나 결과 공개도 부족한 실정이다. 장기재정전망의 중요한 또다른 축인 의료지출에 대해서는 공단의 전망 결과는 있으나, 공식적인 장기재정 추계에 대한 법적 근거나 정부의 공식적인 추계치는 없다.

그러나 중기전망만으로는 고령화 등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재정부담 대비를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기존의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보더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연금·의료 등 지출이 급속히 증가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연금, 의료 등을 포함한 세입 및 세출 양 측면에서의 중장기 재정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하의 체계적인 장기재정추

3) (국가재정법 제7조)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중·장기 재정전망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중략)·· 중·장기 대내·외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크다.

가. 공적연금의 재정계산

4대 공적연금의 경우를 살펴보면, 법률에 근거하여 재정계산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추계 전제 및 일정이 상이하고 추계체계가 제도화되지 못하여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적 근거로는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법 등 관련 연금법에 최소 5년 주기로 재정계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을 들 수 있다. 최소 5년 주기로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실시도 가능하다. 그러나 추계관련 조직, 절차 등 추계체계를 제도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계산에서는 재정추계 및 재정평가만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재정조정 및 제도개혁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별도의 논의와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분리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 특수직역연금의 경우에는 재정계산 결과의 공개를 확대하고 재정안정화 등 연금제도 개선과 연계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재정계산의 주체 및 추진체계를 보면, 소관부처 주관하에 연금공단이 주도하던 체제로부터 보다 투명한 추진체제로 이행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추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계의 전제, 추계방법, 추계결과에 대한 평가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게 하여 추계의 객관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최근 사학연금에서 이러한 추진체계를 원용한 바 있어, 나머지 직역연금도 보다 투명한 추계작업을 위한 작업추진 체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각 연금별 재정추계는 추계 전제 및 시기가 상이하여 일관성이 부족하며, 추계결과에 대한 평가나 정보공개도 개선될 필요도 있다. 인구추계 및 거시경제에 대한 전제가 각기 다르고 객관성도 검증되지 않아, 연금별 추계결과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장기재정전망이 곤란하다. 추계결과를 평가하는 재정평가지표나 보합계리적 평가도 부족하며, 국민연금은 법에 따라 재정계산 결과를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표하고 있는 반면 특수직역연금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국민연금은 법에 따라 재정계산에 이어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수직역연금은 이러한 후속조치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추계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계방법 및 절차, 평가방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과 더불어, 재정계산 결과를 공개하는 보고서의 내용 및

4대 공적연금의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재정계산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추계 전제 및 일정이 상이하고

추계체계가 제도화되지 못하여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한국개발연구원의 2008년 국회에 산정정책 용역보고서를 참조하라.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도 장기재정추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추계방법 및 전문인력 등도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포맷도 사전에 지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추계기간, 연금 가입자수 추계, 각종 기초율 등 추계에 필요한 전제를 설정하는 방법과 과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금재정 추계를 위한 조직 및 인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직역연금의 경우에는 자체 추계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3〉 4대 공적연금 재정계산 현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법적근거 (설치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법 제4조 (1998년) • 국민연금법 시행령 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199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3조 (199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연금법 제36조 (2006년)
실시주기 (실시연도)	매5년 2차례 (2003년, 2008년 실시)	최소 5년마다 2차례 (2005년, 2010년)	최소 5년마다 3차례(2001년, 2006년, 2010년)	최소 5년마다 1차례(2007년)
추계기간	2008~2078년 (70년)	2010~2080년 (70년)	2010~2080년 (70년)	2007~2070년 (63년)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구성 • 국민연금공단의 추계 모형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PS 연구소 등 공단 자체추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2차는 외부용역 실시 • 3차에는 재정재계산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연구용역 실시
결과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재정추계보고서」 보건복지부장관 보고 • 장관은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대통령 승인 및 국회 제출 • 일간신문 1개 이상 및 경제신문 1개 이상에 각각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공단 연차보고서 및 인터넷 공시: 10년간 금액전망, 70년간 지표전망 결과 등 주요 내용 공개 • 2010년에는 공단에서 「재정재계산 연구보고서」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연금재정계산」 보고서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보고서 발간

나. 의료부문의 장기재정추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도 장기재정추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추계방법 및 전문인력 등도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 및 노인장

기요양보험에 대해 2030년까지의 장기전망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없는 공단 전망치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 등을 위한 중기재정추계 이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준정부기관으로서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작성을 위해 중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있다⁵⁾.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 등을 위한 중기재정추계(5년)만 실시해 오다가, 2010년에 처음으로 2030년까지의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한 바 있다⁶⁾.

이는 공적연금과 달리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매년 수지균형을 목표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어, 중장기적 시계에서 보험재정을 평가하고 의료비 증가에 사전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 과거 추세에 기반한 현행 추계방법은 중기추계에 적합한 방법으로 장기추계에는 한계가 있으며, 장기의료지출 추계를 위한 조직은 명확한 반면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 선진국 사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대부분 선진국은 연금, 의료 등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분야에 대해 정부 차원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정부보고서 형태로 공표하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 직속의 백악관 조직인 관리예산처(OMB)와 의회예산처(CBO) 2곳에서, 영국과 독일은 재정당국인 재무부에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여 발표하고 있다.

장기재정추계의 목적은 인구고령화에 수반하는 세출증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며, 추계기간은 향후 2세대(50년간)~3세대(75년간) 정도이다.

대부분 선진국은 연금, 의료 등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분야에 대해 정부 차원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정부보고서 형태로 공표하고 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2006년부터 매년 중장기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가장 최근 보고서는 2010년 12월에 발간된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이다.

6)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0년 11월에 발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장기 재정운용전망』을 참조하라.

〈표 4〉 선진국의 장기재정전망 법적근거 및 추진체계

	법적근거 (기간)	추진체계/전담조직 등
미국 (CBO)	없음 (45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 등 정보제공을 위해 2003년 이후 평균 2년주기로 『Long-Term Budget Outlook』 발표 The Health and Human Resources Division 산하 Long-Term Modeling Group의 주도하에 전 부서 참여 2000년 최초 공표 이후 2003년부터는 매 2년마다 공표(2005년, 2007년, 2009년)
미국 (OMB)	없음 (75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6년 이후 매년 대통령 예산교서의 첨부문서인 Analytical Perspectives의 1개 장으로 포함 1996년 이후 매년 1회 공표
영국 재정부	1998년 재정 안정화 규칙 (50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에는 Pre-Budget Report의 부속자료 형태로 2002년부터 매년 『Long-term public finance report』 발표 2002년 이후 매년 1회 공표
독일 재정부	없음 (45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IFO 연구소에 위탁하여 2005년, 2008년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 작성 2005년 6월 공표 이후 2008년 6월 발표
EU 위원회	2005년 개정된 성장 및 안정협약 (45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Economic Policy Committee(EPC) 산하 Working Group on Ageing Populations and Sustainability(AWG)에서 인구고령화 관련 장기재정추계 및 장기재정 지속성 평가 2006년 10월 최초 공표 이후 2009년 9월 The 2009 Ageing Report 및 Sustainability Report 2009 발표

〈표 5〉 공적연금 재정계산의 해외사례

	실시부서	전망체계	전망기간	주기
미국	사회보장청 (수석계리인실)	인구추계(NCHS) → 경제변수추계, 제도가입자 및 수급자 추계(OCACT) → 연금재정추계(OC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향후 10년간의 적립배율 100%를 목표로 연금재정상태 검증 - 장기: 향후 75년간 연금재정상태 검증 	1년
일본	후생노동성 (연금국 수리과)	기초자료(사회보험청, 공제조합), 인구추계(국립사회보장·인구사회보장연구소), 노동자료(NIPSSR) → 기초경제변수는 3가지 시나리오로 단기는 내각부, 장기는 사회보험심의회 연금부회 경제전제전문위원회에서 전망 → 연금재정추계(연금국 수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향후 10년간 - 장기: 향후 100년간 연금재정이 균형을 이루고 소득대체율이 5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증 	5년
캐나다	금융감독청 (연금수리국)	인구 및 경제변수 가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경제변수(물가는 중앙은행 및 정부예측치, 금리는 국제장기수익률) → 연금재정추계(연금수리국)	- 장기: 향후 75년간	3년

Ⅲ. 장기재정추계의 개선방안

우선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별도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및 공단,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토록 법적 근거 마련 및 재정추계 연계 등을 위한 법적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선진국에서처럼 정부가 장기재정전망 작업을 직접 실시해야 한다. 장기재정추계의 실효성 확보 및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현행 국가재정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을 보완하여 실시 근거, 전망주기·기준·절차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개별 연금법의 재정계산 제도와 연계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개별 연금법이 최소 5년 주기로 재정계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시 시기를 특정연도(예 : 국민연금의 3차 재정계산연도인 2013년)로 통일시키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EU방법 등을 참고로 체계적인 장기재정추계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재정추계의 목적을 정부 차원에서 현행 제도 유지시의 '기준선 전망(Baseline)' 제공으로 명확히 하고, 추계주체도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부처 및 공단,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전망절차 및 각 기관의 역할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장기재정전망협의회는 인구추계 및 경제성장률, 물가, 금리 등 거시경제 전제, 추계방법 및 추계결과 평가에 대한 공통사항, 결과 보고서의 구성 및 공개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개별 부처 및 공단은 동 전제 및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 제출한다.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개별 부처 및 산하 공단의 추계결과를 검증하고 기관별 전망결과를 종합하여 현행 제도 유지시 장기재정추계(기준선 전망) 결과를 도출한다. 기획재정부는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정리하여 공표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장기재정추계(기준선 전망) 결과는 엄밀한 의미의 '전망'이 아니라 현 제도 유지를 전제한 '추계'이다. 기획재정부는 기준선 전망 결과, 각종 리스크 등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기재정 목표의 설정 등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각 기관 및 정치권 등은 기준선 전망을 토대로 신규 제도 및 정책의 재정효과 분석 등 정책수립 및 정책대안 제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기본 시스템을 중심으로 부처 및 공단별로 미흡한 법적 기반 강화, 전망체계의 투명성 향상, 전망전제·방법 등 개선, 추계결과의 객관적 평가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할 법적 근거 마련 및 재정추계 연계 등을 위한 법적 장치 강화가 필요하고, 「장기재정전망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장기재정추계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부처 및 공단별로 미흡한 법적 기반 강화, 전담체계의 투명성 향상, 전담전제·방법 등 개선, 추계결과의 객관적 평가 및 충실한 공개·활용 등 구체적 실천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및 충실한 공개·활용 등 구체적 실천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 자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공적연금과 달리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단기적인 시계에서 보험재정이 운용되고 있으므로, 주기적인 장기재정추계 및 평가를 통해 중장기적 제도운영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부처 및 공단은 추계과정의 투명성 및 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외 전문가로 국민연금과 같은 '재정추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계의 전제, 추계방법, 추계결과에 대한 평가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추계기간, 가입자 수, 각종 기초율 등 추계에 필요한 전제를 설정하는 방법과 과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매뉴얼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⁷⁾.

추계방법에 대해서도 공적연금의 경우 보험수리모형(Actuarial model)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의료부문의 경우에는 국제기구 등의 모형을 기초로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는 추계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료부문의 경우 추계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국제비교가 가능한 모형과 우리나라 특수성을 감안한 모형 등 복수의 모형을 유지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또, 추계결과를 평가하는 재정평가지표나 보험계리적 평가방법도 개발되어야 한다. 관련 정보를 재정계산 또는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사전에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지정한 보고서의 내용 및 포맷에 따라 충실하게 공개하는 한편 제도개선과 연계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는 장기재정추계를 위한 조직 및 인원을 보완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2013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이전에 장기재정추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2011년 말에 통계청에서 5년 만에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다시 발표할 예정이므로, 2012년이 장기재정추계 작업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연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KI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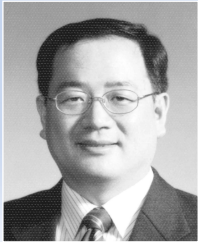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 연구보고서 2010-07, 박일수·이동현, 2010. 12.
 _____,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장기 재정운용전망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10-22, 최인덕·현경래·이호용·이은미, 2010. 12.
 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원, 『장기재정전망』, 박형수·송호신, 2011. 3

7) 미국의 경우 연금재정 추계를 담당하는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내의 수석계리인실(The Office of the Chief Actuary: OCACT)은 추계작업 전면에 대한 추계지침을 매뉴얼화한 사례를 참조하면 좋겠다.

-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조세연구원,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박형수 · 전병목, 2009. 10.
- 삼성경제연구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과제」, CEO Information 제625호, 2007. 10. 17.
- 정부 · 민간 합동작업단,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 2006. 8.
- 한국개발연구원, 『공적연금 재정계산 및 발전방안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용역보고서, 문형표, 2008.
-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의 장기재정모형』, 박형수 · 류덕현, 2006. 12.
- IMF, “Republic of Korea: 2007 Article IV Consultation,” IMF Country Report No. 07/344, October 2007.
- _____, *Code of Good Practices on Fiscal Transparency*, 2007
- OCACT, *Summary of Long-Range OASDI Projection Methodology: Intermediate Assumptions of the 2007 Trustees Report*, November 2007.
- OECD, *OECD Best Practices for Budget Transparency*, 2002
- _____, *Fiscal Futures, Institutional Budget Reform and Their Effects: What Can Be Learned?*, September 2009.

대지진이 일본 경제에 미친 영향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jweon@kipf.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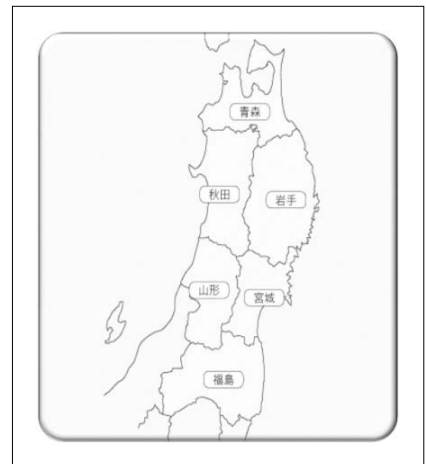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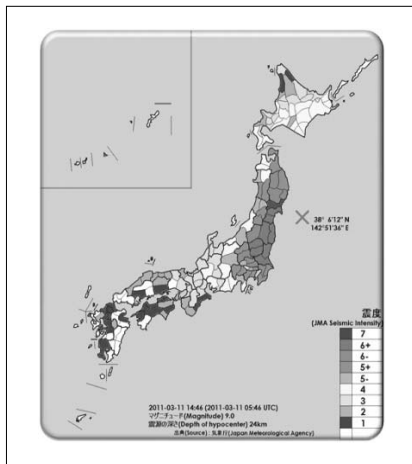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동북부 지방에는
진도 9의 일본 기상청이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강한 지진이 발생하였다.

I. 서론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동북부 지방에는 진도 9의 일본 기상청이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강한 지진이 발생하였다. 지진규모가 컸던 만큼 피해도 넓은 지역에 걸쳐 발생하였으나, 특히 진원지와 가까운 도호쿠(東北)지방¹⁾의 피해가 매우 컸다. (그림 1, [그림 2] 참조)

[그림 1] 동일본 대지진의 지역별 크기

[그림 2] 동북지방 상세도



1) 일본 본토의 동북지역에 위치한 아오모리(靑森), 아키타(秋田), 이와테(岩手), 야마가타(山形), 미야기(宮城), 후쿠시마(福島) 6개현을 합하여 도호쿠 지방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3월의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원자력 방사능이 누출됨에 따라 자연재해에 이은 원자력 방사능 누출이라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3월의 대지진은 그 규모가 미증유의 것으로, 지진에 대한 대비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도 이번 지진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규모가 컸던 만큼 3월의 대지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되나, 본고에서는 3월에 발생한 대지진이 일본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복구를 위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주로 조세와 재정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진 및 해일에서 비롯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파손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이 사회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매우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등 본고의 영역을 훨씬 초월하는 큰 문제이므로 이를 다루지는 않고, 대신 발전시설의 파괴로 인한 전력공급 부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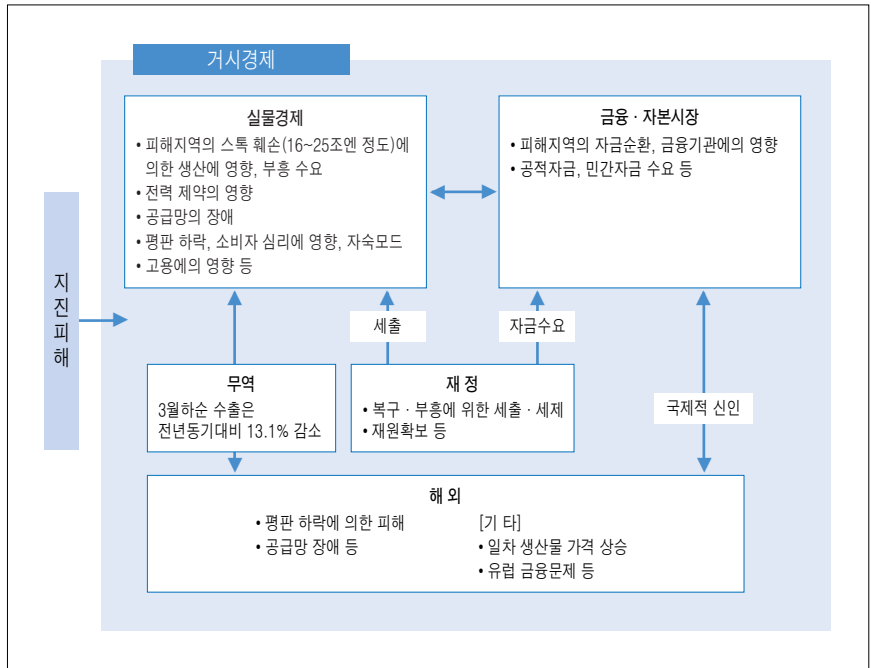
3월의 대지진은 그 규모가 미증유의 것으로, 지진에 대한 대비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도 이번 지진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II. 지진피해 현황 / 규모

[그림 3]은 3월의 지진피해가 일본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지진피해는 우선 실물경제에 피해를 끼치게 되는데, 실물경제의 피해는 금융·자본시장이나 무역 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실물경제의 복구 및 부흥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가에 대해 재정이 관여하게 된다.

6월 28일까지 집계된 인적 피해현황을 보면, 사망이 15,506명, 행방불명 7,297명, 부상이 5,386명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림 3] 지진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출처: 내각부(2011), <http://www5.cao.go.jp/keizai/bousai/pdf/micro-eikyuu.pdf>

3월에 발생한 대지진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진, 해일, 원자력발전소 파손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와 경제순환의 단절로 인한 공급 쇼크(shock), 둘째, 발전시설의 파손으로 인한 전력 제약, 셋째,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문제 이후 일본제품이나 일본브랜드에 대한 신뢰성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우선, 첫번째에 해당하는 인적·물적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6월 28일까지 집계된 인적 피해현황을 보면 (<표 1>), 사망이 15,506명, 행방불명 7,297명, 부상이 5,386명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지진의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3개현의 인명피해가 전체 인명피해의 94.5%, 사망자의 9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도호쿠 지방 가운데서 도 이 3개현의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인적피해 상황 (6.28현재)

(단위 명)

	사 망	행방불명	부 상	계
합 계	15,506	7,297	5,386	28,189
이와테현(岩手県)	4,565	2,318	186	7,069
미야기현(宮城県)	9,278	4,659	3,477	17,414
후쿠시마현(福島県)	1,597	316	236	2,149

출처: 警察庁, “平成23年(2011年)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について被害状況と警察対策”
 참고: 1995년 고베 지진으로 인한 인적피해: 사망 6,434, 행방불명 3, 부상 43,792명

대지진으로 인한 물적 피해를 내각부의 3월의 월례경제보고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전체 피해액은 16조~25조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 금액은 일본 GDP의 약 0.5%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1995년 인구가 밀집한 도시 지역인 고베에서 발생한 한신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6,400여명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은 지역인 도호쿠 지방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한신 대지진의 3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부터도 3월의 대지진이 어느 정도 큰 것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대지진으로 인한 물적 피해를 내각부의 3월의 월례경제보고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전체 피해액은 16조~25조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 금액은 일본 GDP의 약 0.5%에 해당하는 액수이다²⁾. 피해액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지역의 인프라 자산액은 약 175조엔,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가 70조엔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의 인프라 가운데 14조~23조엔 규모가 파손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 지역의 피해가 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은 일본의 내각부가 추산한 금액이며 민간 연구단체인 니코우증권의 시산에 의하면, 인프라 시설복구에 약 20조엔, 쓰나미 피해를 입은 농림수산업 재생, 여진을 대비한 방재, 고용·중소기업대책 등 간접피해에 대한 대응 등을 고려할 때 피해액은 최소 30조 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의 지진이 고용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피해지역의 취업자 수는 약 500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³⁾. 즉, 500만명 정도의 취업자가 지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복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대로 실업상태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실업자 수의 증가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지만, 현재 일본에서 더욱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공급망(supply chain)의 단절이다. 이는 피해지역 공장의 조업중지 및 도로망의 파손으로 인한 영향이 공급망(supply chain)을

2) 단위 피해액에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이 경제에 미치는 2차적인 피해액은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3)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오모리가 68.5만명, 이와테가 68.9만명, 미야기 110.8만명, 후쿠시마 101만명, 이바라키 146.2만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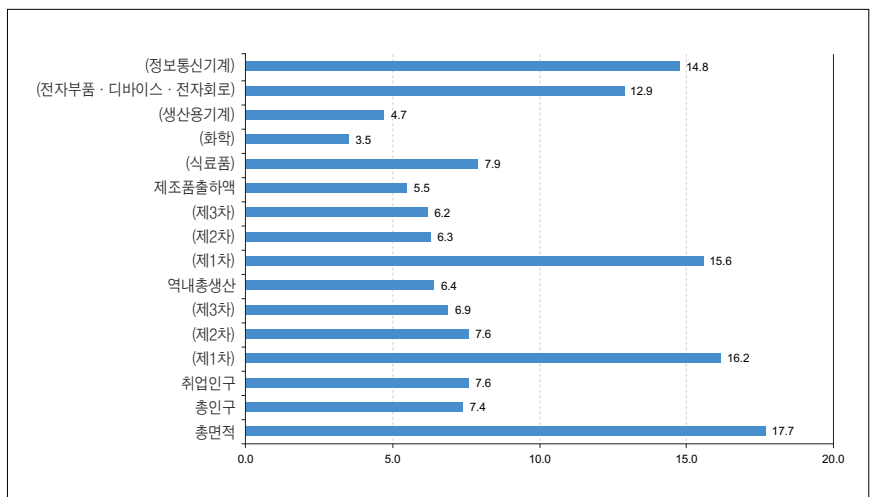
도요타 생산방식이란, 생산과정에서 불필요한 가공, 재고, 동작, 운반, 불량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가능한 한 재고를 없애며, 필요한 양을, 필요할 때 조달하여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해 전국에 파급되기 때문이다. 왜 도호쿠 지방 공장으로부터의 부품 공급 중단이 거시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도호쿠 지방의 산업구조와 더불어 일본에서 현재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생산시스템인 도요타생산방식(Toyota Production System)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도요타 생산방식이란, 생산과정에서 불필요한 가공, 재고, 동작, 운반, 불량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가능한 한 재고를 없애며, 필요한 양을, 필요할 때 조달하여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낭비를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원가절감을 추구하는 생산방식인 것이다. 도요타 생산방식이란 말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생산 방식은 도요타가 개발하여 정착시킨 생산방식으로서, 이 방식에 의해 도요타가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됨에 따라, NEC, 캐논 등 많은 기업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와 유사한 생산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이 놀라운 성장을 거듭할 때,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전 세계가 주목한 것도 이 생산방식이며, 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⁴⁾. 필요한 양을 필요할 때 정확히 생산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Just In Time 생산방식이라고도 하고, 재고를 두지 않는 생산방식이라 하여 Lean Production System이라고도 한다.

다음으로 도호쿠 지방의 산업구조를 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도호쿠 지역 산업구조 (전국 대비)



출처: 經濟産業省東北經濟産業局, 『東北經濟のポイント』, 2010

4) 현재 TPS는 물건을 만드는 과정뿐 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 아이디어 도출, 경영, 인재육성 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도호쿠 지방은 1차산업이 중심인 지역이나,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부품, 디바이스, 전자회로도 생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즉, 이 지역은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간토(關東)지역의 생산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 적지 않은 곳이다⁵⁾.

이들 부품을 제공하는 공장 및 도로망이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부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없게 되고, 재고를 거의 두지 않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생산방식으로 보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품공급이 중단되는 것은 생산 과정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한 영향이 공급망 단절에 의한 피해이며, 공급망 단절에 의한 피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일본의 생산방식에 연유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한 일본 내각부의 시간에 의하면, 공급망(supply chain)의 단절로 인한 피해는 자동차 메이커, 정보통신기기 메이커 생산이 약 1.5개월 정도 전국에서 완전히 정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자동차 산업은 생산 감소 2.1조엔, 타 산업 파급효과를 포함한 생산 감소는 6.1조엔, 정보통신기기산업의 경우 생산 감소 0.67조엔, 타 산업 파급효과를 포함할 경우 1.3조엔의 생산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방식에 의한 공급망 단절 이외에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력 공급의 제한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지진과 해일의 영향으로 일본 수도권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중지함에 따라,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시간을 정해 송전을 중지하는 계획정전을 실시하였다. 계획정전에 의한 공장조업 정지의 영향은 공급망의 단절 등을 통해 계획정전 지역 외의 거래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 제조업 5업종에 대해, 계획정전 역내 기업수와 직접 거래가 있는 역외 기업 수를 합하면 전체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공급망 단절에 의한 피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일본의 생산방식에 연유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여기에 더하여 도호쿠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후쿠시마 현 바로 아래에 있는 이바라키 현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바라키 현의 경우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상대적으로 많다.

실물경제의 훼손으로 인해
3월의 경우 생산은
2월에 비해 15.5% 감소하였으며,
가동률은 21.5%나 감소하였다.

〈표 2〉 계획정전에 의한 영향을 받은 기업 수

(단위: 개, %)

	계획정전 지역내 기업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외 기업 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합계비율
운송용 기계기구	1,560	42.2	1,008	27.3	69.5
전자부품· 디바이스· 전자회로	1,007	45.9	509	23.2	69.1
생산용 기계기구	3,108	36.7	2,053	24.3	61.0
화학	1,620	45.6	1,219	34.3	79.9
식료품	2,941	27.9	2,641	25.0	52.9
계	10,236	36.0	7,430	26.1	62.1

주: 계획정전 도한: 토치기, 이바라키, 군마, 치바, 가나가와, 사이타마, 아미나시, 시즈오카의 8개현과 도쿄도
출처: 東日本大震災復興構想会議 <http://www.cas.go.jp/jp/tukkou/>

이상 지진으로 인한 실물경제의 훼손으로 인해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생산이 어느 정도 감소하였는가를 생산, 출하, 재고량 등을 통해 살펴본 것이 〈표 3〉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3월의 경우 생산은 2월에 비해 15.5% 감소하였으며, 가동률은 21.5%나 감소하였다.

〈표 3〉 생산, 출하, 재고, 재고율, 가동률 지수 (2011. 3)

항 목	계절조정지수		원지수	
	지 수	전월대비(%)	지 수	전년동월대비(%)
생산	82.7	-15.5	88.7	-13.1
출하	85.0	-14.6	95.0	-12.1
재고	97.7	-4.2	92.6	3.5
재고율	108.6	4.1	95.6	5.1
가동률	73.6	-21.5	77.8	-18.4
생산능력			108.4	1.6

한편, 생산과 출하에서 발생한 많은 감소가 국민경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GDP 기여도 분해를 통해 살펴본 것이 〈표 4〉이다. 표에서 연율로 표시된 것은 분기별 각 해당항목의 증감률을 연율로 환산한 것이다. 먼저 실질 GDP 성장률을 보면, 2010년 3사분기가 3.8%, 4사분기가 -3.0%인 데 비

해 2011년 1사분기는 -3.7%로 더욱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여도의 변화를 보면, 내수에서는 주택투자의 기여도만 증가하였으며, 공공수요와 수출이 GDP 성장에 플러스의 기여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마이너스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여도의 변화를 보면, 내수에서는 주택투자의 기여도만 증가하였으며, 공공수요와 수출이 GDP 성장에 플러스의 기여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마이너스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1~3월 실질 GDP 성장률 기여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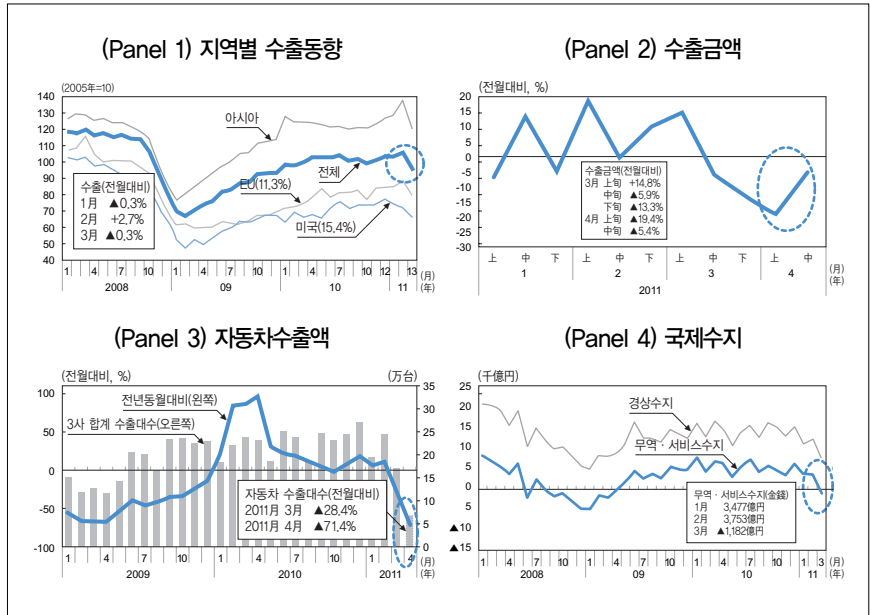
		7~9월	10~12월	1~3월	
		(연율)	(연율)	(연율)	(연율)
실질GDP 성장률		3.8	-3.0	-3.7	-0.9
기여도	내수	4.4	-2.7	-3.0	-0.8
	민간	4.6	-2.1	-3.7	-0.9
	개인소비	1.9	-2.3	-1.3	-0.3
	설비투자	0.6	0.1	-0.5	-0.1
	주택투자	0.2	0.3	0.1	0.0
	재고투자	1.9	-0.2	-1.8	-0.5
	공공수요	-0.3	-0.6	0.6	0.1
	공공투자	-0.4	-1.0	-0.2	-0.1
	외수	-0.5	-0.3	-0.6	-0.2
	수출	1	-0.5	0.4	0.1
	수입	-1.5	0.2	-1.1	-0.3

주: 수입은 증가하면 성장률에 대해 마이너스 기여를 하며, 감소하면 플러스 기여
 출처: 内閣府(2011. 5. 24), 『月例経済報告等に関する関係閣僚会議資料』

〈표 4〉에서 대지진 이후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5]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수출은 3월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panel 1), 수출 금액은 4월 중순까지는 계속하여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panel 2). 그러나 4월 자동차 수출은 대폭 감소가 전망되며 (panel 3), 무역과 서비스 수지는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연재해는 일시적으로는 경제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한 나라의 경제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림 5] 수출동향



출처: 内閣府(2011. 5. 24), 『月例經濟報告等に関する関係閣僚会議資料』

Ⅲ. 자연재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연재해는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하여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이 둔화되나, 복구를 위한 노력이 정부·민간 레벨에서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 자연재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⁶⁾, 1) 일반적으로 피해는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 크게 나타나며, 2) 자연재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재해발생 이후 1년 내외는 경제성장률이 0.5~2.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자연재해가 오히려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주장⁷⁾과, 자연재해는 경제 성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⁸⁾이 있는 등 아직 확정된 결론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자연재해는 일시적으로는 경제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한 나라의 경제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6) 자연재해와 경제에 관한 이 부분은 대외경제연구원(2011)의 관련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임
 7) Skimore and Toyal(2002), "Do Natural Disasters Promote Long-run Growth?", *Economic Inquiry*
 8) Cavallo et al. (2010), "The Economics of Natural Disasters: A Survey", IDB working paper

실제로 1995년 1월 일본에서 발생한 한신 대지진의 피해가 조기에 회복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진과 같은 자연피해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은 일본경제가 자연재해로부터의 회복력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실제로 일본 내각부가 지진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⁹⁾ 일본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하반기 이후는 플러스 성장이 기대되나 이하의 요인이 앞으로 일본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 전력 제약이 광역화할 우려이다. 현재 운전중인 원자력 발전소 17기는 내년 봄까지 정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재가동을 하지 않고 원자력 발전소를 전면적으로 정지하는 경우 전력 제약이 넓은 지역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원자력 발전소를 대신하여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상승하면 구조적인 가격 상승 요인과 합해져서, 경제가 고비용 구조로 전환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공동화 위험이다. 지진 이후 이미 나타난 바와 같이 제조업의 해외 이전 및 이를 부추기는 아시아 등으로부터의 유치 움직임이 있다. 예컨대, 일본 반도체 관련 기업이 위험 분산 입장에서 해외생산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투자 기피와 이노베이션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고용악화 및 인재육성에 차질이 발생할 위험이다. 올 봄의 신규졸업자 취업률(대졸)은 과거 최악의 수준인데, 지진의 영향으로 신규졸업자, 청년층의 고용정세가 더욱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 청년층의 비정규직화, 장기 실업회는 인적자원 형성을 저해하여 장래 성장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금융·자본시장, 외환시장 안정도 중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 확보' 나 '새로운 성장을 위한 대응' 이 중요하다

일본 내각부가 지진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IV. 복구를 위한 조세·재정 정책

일본에서는 5월 2일 잔해 철거, 인프라 복구를 위해 4조엔 규모의 제1차 추경예산을 책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의 국고부담률을 인하여 2.5조엔을 염출하였으며, 1차 추경예산은 고용창출 20만명, 고용유지 150만명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0.6% 정도의 성장률 상승을 가져올

9) 内閣府, 「震災3か月後の日本経済の現状, 見直し, 留意点」
<http://www5.cao.go.jp/keizai/bo-usai/pdf/3month-nihonkeizai.pdf>

복구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향후 일본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격적인 복구를 위한 예산은 여름 이후로 예정되어 있는 제2차 추경예산에서 다루기로 하였는데, 제2차 추경예산의 규모는 수조~10조엔 규모로 예상되며,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1995년에 발생하였던 한신 대지진 때는 인적·물적 피해액 10조엔을 복구하는데 3년이 걸렸다. 올해 3월에 발생한 대지진의 인적·물적 피해를 한신 대지진 때와 마찬가지로 3년 정도에 복구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피해액이 낮게 산정하여도 16조~25조엔이었으므로, 2011년 1차 추경으로 투입된 4조엔을 빼고, 3조엔씩을 3년간 충당하더라도 약 3조~13조엔 정도의 재원이 부족한 셈이다. 복구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향후 일본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복구재원을 살펴보기 전에, 대지진으로부터 복구를 위해 일본 정부가 취하는 정책을 정책시점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3년 정도의 단기정책, 그리고 3년 이상에 걸친 중장기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당면한 과제로는 2011년도 1차 추경예산의 조기 집행이다. 3년 정도의 시간을 둔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1) 피해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 2)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자금수요 확대를 통한 선순환구조 형성 (피해지역에 시범사업 실시), 3) 재정복구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 사회보장·稅 일체개혁 실행 등을 들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하며 자율적인 성장을 실현(사회보장·稅 일체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정 및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복구를 위한 재원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증세, 국채발행, 기존 예산의 전용 및 매장금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증세는 소비세, 소득세, 법인세 가운데 어느 세목을 증세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뒤에서 보다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복귀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국채발행일 것이다. 실제 일본도 국채발행을 통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고 있으나, 문제는 기존의 국채발행액이 900조엔 정도로 GDP의 200%를 초과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지진복구를 위한 국채발행의 재원을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재원 충당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지진복구를 위해 발생한 채권(지진부흥채)을 인수하는 방안이 있다. 이 안은 디플레이션대책도 될 수 있다 하여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본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는 것은 신중해

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예산을 전용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충당하자는 논의 가운데 가장 먼저 논의된 것은 공무원 임금 삭감이었다. 일본 정부는 공무원 임금의 10% 일괄 삭감을 제안하였으나, 공무원 노조가 이에 반대하여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직급에 삭감 폭에 차등을 두어 5~10% 정도 삭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연간 3,000억엔 정도를 복구재원으로 염출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민주당이 정책공약으로 제시한 자녀수당, 고속도로 무료화, 고교교육 무상화, 호별소득보상제도 등 소위 4K정책을 변경할 경우 연간 3조엔 정도의 재원을 지진복구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구재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매장금은 국채정리기금의 여유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국채정리기금에는 10조엔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으므로 이를 재해 복구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무성은 10조엔의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채정리를 위한 것으로 국채 이자율이 낮은 상태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 국채정리기금의 여유자금이 없어질 경우 시장에 더욱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당면한 재해 극복을 위해 국채발행을 통해 필요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여러 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발행한 부흥국채를 비롯하여 장기적 부흥에 필요한 재원은 증세를 통해 마련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진피해 복구에 용도를 한정된 '부흥재생채(復興再生債)'를 발행하여 일반 회계와는 별도로 관리하여 특별세로 상환하는 방안이 정부와 여당에서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증세의 대상이 소비세나 소득세 혹은 법인세나, 즉 어떤 세목을 통해서나 하는 것이다. 소비세의 경우 현행의 5%에서 1%p 인상하면 세수는 2.5조엔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비세와 법인세는 10%p의 정률증세를 가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소득세로부터는 약 1조엔 정도의 세수증대, 법인세는 수천억~1조엔 정도의 세수가 새로 징수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소비세 인상을 통해 재원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4월 14일 부흥구상회의 의장인 이오키베(五百旗頭)씨의 "(부흥에는) 전 국민적인 지원과 부담이 불가결"하다는 주장과 오카다 민주당 간사도 "부흥재생채(復興再生債) 상환재원의 기본은 세금"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민주당이 재원으로 고려하고 있는 세목이 소비세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일본 정부는 당면한

재해 극복을 위해 국채발행을 통해 필요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복구를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다시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재정건전화에 대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에 대해 야당인 자민당의 이시하라(石原)간사는 “소비세는 사회보장에 충당하여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야마구치(山口) 공명당 대표도 “바로 소비세를 적용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명확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6월 하순에 공표된 ‘사회보장·稅 일체개혁’안은 앞으로 일본의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청사진을 제공한 것으로 개혁의 우선순위, 안정적 재원확보와 재정건전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위한 세계 전체의 근본적 개혁을 다루고 있다. 개혁에 필요한 여러 안을 담고 있으나 ‘사회보장·稅 일체개혁’안의 핵심은 소비세율을 현행의 5%에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10%로 5%p 인상하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 정부안을 정리하여 각료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증세에 대한 반대가 많아 7월 초순인 현재까지도 상정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집권당 대표인 간 수상의 정치적 구심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수상이 퇴진을 하게 되면 사회보장·稅 일체개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¹⁰⁾ 복구를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V. 전망 및 시사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1995년의 한신 대지진의 경우, 일본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단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빠른 정상화는 일본 경제가 자연재해로부터 회복력이 높음을 보여주는 반증이 되기도 하였다. 지난 3월에 도호쿠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그 규모나 피해 모두 일본 역사상 최악의 지진이었다. 그러나 자연재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적으로는 크지 않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시에 고려할 때 3월의 도호쿠 대지진도 단기적으로는 일본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재 국가 채무가 GDP의 200%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구를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다시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재정건전화에 대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로서는 지진피해로부터의 복구를 위한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재정건전성이 더욱 위협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다, 재정악화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10) 毎日新聞, 6월 30일 인터넷판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문제로 인한 피해 역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나, 방사능 누출 문제가 야기할 경제적 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경우가 많으며, 방사능 누출과 관련하여서는 분석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분석을 할 수가 없었다. 향후 방사능 문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기대해보기로 한다. KIP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문제로 인한 피해 역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대외경제연구원, 『일본의 지진사태로 본 자연재해와 거시경제』, 『KIEP 오늘 의 세계정세』, Vol 11, No 8, 2011
 大野耐一, 『トヨタ生産方式』, ダイヤモンド社, 1978
 内閣府, 『月例経済報告等に関する関係閣僚會議資料』, 2011. 5. 24
 内閣府 <http://www5.cao.go.jp/keizai/bousai/bousai.html>



공공정책포럼

■ 제18회 공공정책포럼

공공정책포럼 소개

공공정책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및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본 포럼은 공공기관정책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수요를 청취하고 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2020 Vision과 KEPCO Way

제18회 공공정책포럼 개요

- 주 제 2020 Vision과 KEPCO Way
- 일 시 2011년 6월 15일 07:30~09:30
- 장 소 서울 팔레스호텔 스카이블룸
- 진행순서
 - 07:30~08:00 조찬
 - 08:00~08:05 인사 말씀
송대희 좌장
 - 08:05~08:45 주제 발표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
 - 08:45~09:25 자유 토론
 - 09:25 폐회

* 본 원고는 2011년 6월 15일 서울 팔레스호텔 스카이블룸에서 「2020 Vision과 KEPCO Way」를 주제로 공공기관정책연구소가 개최한 제18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 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인사 말씀

송대희/좌장

이스라엘이 전기자동차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향후 전기 에너지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 지도상에서 전력강국으로 표시되고 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전력회사가 글로벌 진출이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과 비전을 세울지 논의해야 할 차례이다.

주제발표 요약

2020 Vision과 KEPCO Way

김쌍수/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전력은 주식회사로서 이윤 창출을 우선시하며, 양질의 전기를 생산함과 동시에 비용절감에 노력하고 있다.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믹스 연구는 J-power 등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이다. 또한 정비 등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얽매이지 않고 투자하되, 낭비요인을 줄이도록 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전에 반도체 · 조선 · IT산업 등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이끌어 왔다면, 앞으로 3만달러 시대에는 전력산업이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전력 · IT · 그린에너지 · 녹색경제 관련 산업은 대표적인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KEPCO 그룹은 '스마트 그린 유토피아'의 계획을 토대로 Global Top 5 Energy & Engineering 회사

의 비전을 갖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발전소 설계, 건설, 운전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원전사업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다. IGCC발전소는 오는 7월에는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건설하여 오염 절감에 기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태양열, 풍력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발전 사업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전기의 무분별한 낭비와 낮은 전력요금은 큰 부담요인이 되는 실정이다. 이는 IFRS 도입 이후의 부채비율 조정, 투자보수율 하락 등 상존하는 위험요인과 더불어 KEPCO 경영과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KEPCO는 세계 10위권인 현재의 위치에서 2020년 Top 5에 진입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국내 사업을 통한 매출, 인력만으로 비전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매출신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대안은 해외사업에서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로의 원전 수출과 운전 ·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은 국내 사업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매출과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미 해외 자원을 개발하고, 수화력발전 및 신재생에너지를 수출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카자흐스탄, 도미니크 공화국에 스마트 그리드 디자인의 설계, 건설 및 컨설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인력 120명을 공개적으로 선발 · 육성하였는데, 이는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개인의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게 한 좋은 예이다.

이제까지 KEPCO는 위대한 기업(Great Company)에 필요한 혁신 지향적 기업문화를 위해 GE, Toyota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그에 따라 혁신 풍토 조성(Culture), 도전정신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육성(People), 비부가가치 업무 제거(Work),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가치 제공(Product/Service)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고객 중심의 문제해결, 정전 등 사고를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6시그마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한 예

이다. 또한 혁신의 10계명이 조직 구석구석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계최고, 고객존중, 성과추구, 도전혁신, 사회적 책임 확보에 앞장서는 KEPCO Way야말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이다. 특히 해외사업을 통해 KEPCO의 매출과 고용신장이 국가적인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장형 공기업에 적합한 자율권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료비 연동제의 시행을 통한 적정 이윤 확보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자유 토론

홍성길/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공공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이유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요금 인상을 위한 정치적 갈등 발생, 물가상승에 따르는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김쌍수/발표자

요금 인상은 미국 등 해외 기업에도 이슈 사항이다. 그러나 과연 흑자 산업에까지 기존과 같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급작스러운 인상이 아니라, 2~3%씩 순차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면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가스와 석유의 연동제가 먼저 시행되

면서, 상대적으로 전력 난방 수요가 상승했던 기이한 현상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철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공기업으로서 정부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외국의 한 설문조사를 보면 많은 공공기관 CEO들이 정부의 인내 부족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공기업 기관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 임기·사업의 지속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부탁드린다.

김쌍수/발표자

임기 문제도 중요하지만, 공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할 것이다. 경영 활동에 대한 지나친 외부의 영향은 공기업 스스로의 책임경영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김형진/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태양광 발전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도서지역에 기존의 디젤 발전 대신 태양광 발전을 도입하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 도입은 물론 울릉도 등에 이미 설치된 풍력 발전 역시 운영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한전의 검토가 필요하다.

김쌍수/발표자

조성일/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도서지역 태양광 발전의 경우 지역의 동식물 문제도 있지만, 저장장치 등으로 인해 생각보다 발전 단가가 비싸다. 한전의 계획 외에도, 근본적인 계획 및 지원 등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시장형 공기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율권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사장님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한전이 공기기업으로서 가지는 한계는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다.

김성진/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민영화과장

김쌍수/발표자

한전이 공기기업으로서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영화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전의 민영화 효과는 좀 더 면밀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현재 공기기업으로서도 고용창출, 원전수출 등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으로 전환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더 큰 실익, 나아가 국민경제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특히 해외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 제약이 발생하는 것이 어려움이다. 또한 사업 외적인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이다. 때로는 한전의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가브랜드 향상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러나 향후 15~20년 후의 상황은 보다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Global Company로 성장하기 위해 현재의 전략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김쌍수/발표자

송대희/좌장

KEPCO는 스스로 설계·건설·시공의 모든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독특한 형태의 기업이다. 이는 원전수주 경험에서도 보였듯 외국 시장에서 KEPCO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역할을 했다.

아일랜드 등 유럽의 재정사태, 일본 원전사고 등을 보면서 우리의 혁신력과 기술수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한전 역시 원전수출 등으로 글로벌 수익원을 확보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큰 발전을 위해 관행이나 정부와의 관계 개선 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공기기업으로서의 한전의 역할은 양질의 전력을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 외에도 공기기업이기 때문에 투자 활동 등에까지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박정수/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한전의 사례를 통해 시장형 공기기업의 미래와 가치 창출에 대해 고민하였다. 7월에는 공공기관 선진화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해 배준호 교수의 말씀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 8월에는 배국환 감사원 감사위원, 9월에는 이창우 경영평가단 단장을 모실 예정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KIPF**

政策研究



정책연구

■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조세정책방향

노영훈

■ 헌법과 재정

김정훈 · 박형수 · 김종면 · 최준욱 · 김현아 · 홍승현

■ 저출산 대응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 및 영향 분석

최준욱 · 송헌재

■ 재정분권과 지역경제 성장의 수렴

김정훈

■ 유효법인세율 측정과 법인세율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이영 · 조명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모형 연구

이영 · 전병힐

■ 탄소배출권의 회계처리 및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이준규 · 김문철 · 박상원

■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손원익 · 이순태 · 박세경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조세정책방향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연구배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간 칸막이 완화를 통해 경쟁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새로운 규율체계 하에서 투자자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 관련 분쟁조정 이슈와 맞물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조세정책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즉, 금융기관과 금융서비스 소비자라는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규제권자인 정부가 금융 및 조세당국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금융 소비자이자 동시에 납세자인 개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전부터도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그 시장이 팽창한 집합투자기구(fund)와 추가연계증권(EIS)과 같은 구조화 금융상품(Structured Product)들에 대한 조세정책도 소비자(투자자) 보호 측면과 함께 다루고자 한

다. 주식형펀드나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IS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식종목의 시세 상승에 기초하여 투자수익률이 결정되고 이들에 대한 시장 중립적 조세정책의 마련은 자본시장의 발전의 기초가 되며 조세회피적 금융투자상품 개발의 기회를 줄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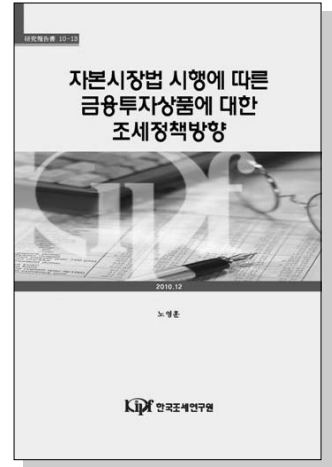
II.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제도

2000년대 이후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이에 대한 과세문제에 급박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과세 원칙을 채택한 것은 상품 간 세제 형평성을 중시하여 시장 중립성을 확보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펀드의 주된 구성자산 및 운용이 주식형일 경우 국내·외 주식을 불문하고 소득의 성격 측면에서 상장 및 협회등록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제도와의 조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007년 세법개정으로 소득세법 배당소득 규정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명시적으로 열거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그 외의 신탁이익 즉 투자

회사의 경우는 소득 내용별로 소득의 성격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문제가 남아 있게 된다. 또한 폐쇄형(환매금지형) 펀드의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장제도에 기초하여 설정된 해외주식형펀드나 부동산펀드의 과세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기본적으로 펀드투자의 본질은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집합하여 전문 투자지식을 갖춘 펀드매니저가 간접투자한다는 데에 있고, 직접투자에 비해 간접투자가 사회적으로 우대해야 할 금융투자 행태이기 때문에 정책목적상 우대해야 할 대상이라면 주식 직접투자수익에 비해 불리하게 과세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분석 위에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기본조세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일반론적으로, 펀드 및 펀드투자자에 대한 과세 체계를 설계할 때의 주요 고려사항은 ① '기준과세제도(basic tax regime)' 체계 내에서 투자자와 펀드에 대한 과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약, ② 펀드체제의 중립성, 경제적 비효율성 최소화, 세수충분성 및 세무행정 용이성과 같은 바람직한 특성의 달성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펀드 과세일반론의 틀 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현행 펀드세제는 집합투자구가 수취한 배당, 이자, 자본이득 등 어떤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않다가 투자자가 펀드 지분의 매각 또는 환매를 통해 수익권을 처분할 때 과세되어 과세연기에 따른 이익이 부여된다는 측면에서 세금우대적 요소가 일부 존재한다. 여기에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분리과세제도를 시행하는 세무행정적 측면을 감안하면, 펀드상품 간 시장 중립성을 강조하여 투자자에 대한 인적 과세(personal taxation) 장점이 있는 도관모형 과세방법론도 일부 혼재된 형태이다. 우리나라는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해 기준금액까지는 인별 차등



B5변형/ 153면
2010. 12

없이 동일한 원천징수세율로 저율분리과세하며, 유가증권 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 원칙을 유지하는 등 인별차등과세의 정도가 약하다는 특징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대리과세방법론도 채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펀드라는 투자상품의 물건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세무행정 편의성과 납세 순응성을 중시한다면 대리인(surrogate)과세모형을, 그리고 투자자라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시장 중립성을 강조한다면 도관모형(pass-through) 과세방법론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양 극단 사이에는 수많은 펀드과세 방법론이 존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선택은 그 나라의 기본조세구조라는 상위 제약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향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과세 시행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변화 등 개인소득세의 종합누진과세화 경향이 강화되는 시점에 맞추어 펀드과세제도도 도관모형에 더욱 충실한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에는 종합소득세 세율체계와 분리된, 부동산 등을 주된 과세대상으로 하는

현행의 누진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개편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Ⅲ. 구조화증권에 대한 투자자보호와 조세정책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조화금융상품인 추가연계증권인 ELS의 경우, 독일이나 스위스와 달리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연간 발행액을 기준으로 25조원을 넘어섰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현물주식 상장시가총액의 2%에 해당하는 20조원 이상으로 회복하여, 단기간 내에 급성장을 하였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ELS 시장은 급팽창 과정에서 원금비보장형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이자산역전화사채(Two-Asset Reverse Convertible)형 구조상품이 가장 많이 판매됐다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주식파생상품인 옵션이 주식현물시장에 변동성을 가중시키는 효과를 통해 불안정한 시장을 야기하고 투자자의 시장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추가 하락기에 발행사는 기초자산인 개별 대형주 주가가 원금손실가능선(Knock-In barrier)까지는 풋옵션(put option)을 활용해 헷징을 하지만, 추가 하락하게 되면 발행사가 원금보장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어 무위험포지션으로 가기 위해 현·선물을 팔거나 공매도 등을 무차별적으로 실행하여 선물헤지 청산물량을 쏟아내는 과정에서 지수선물, 주식현물이 추가로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통상 ELS 상품들은 기초자산 주식의 최초 기준가격과 대비하여 조기상환 여부 및 만기 수익이 결정되는데, 발행사는 원금보장의무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또는 조기상환 조건 성취를 방해하여 수익률을 조작하기 위해 해당종목의 주식을 중도 및 만기

일에 대량 매도하여 투자자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불투명한 문구에 따른 불공정계약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추가연계증권들은 기초자산 주식의 최초 기준가격이 조기상환 여부 및 수익률 결정에 중요한데, 투자설명서상에 명시된 '기초주가 조정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그 판단 여부를 ELS 발행사나 운용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불공정계약 및 신의원칙위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LS와 같은 구조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발행사에 비해 기초자산 주식가격의 향후 동향에 대해 열악한 정보와 분석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시장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발행사가 사용한 (가격)평가모형이 무엇이고 평균 및 분산과 같은 분포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거나 규제당국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구조화상품의 발행사는 통상 델타헷징이라는 활동을 통해 상품판매에 따른 위험 노출에 대비하게 되는데, 헷지포지션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면 의도적으로 시세조작을 하고도 만기 직전 주식 대량 매도를 델타헷지 포지션을 되돌린 것일 뿐이라고 합리화할 수 있는 상황도 문제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존재하고 이에 대해 발행사와 대칭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면 발행사 제시가격에서 할인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위험 자체를 모를 수 있어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LS와 같은 구조화가 복잡한 투자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스위스나 독일처럼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환금성을 보장하는 거래소 상장화와 같은 제도적 개선을 고려해 볼 만하다. 기초자산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과 비교하여

EIS는 매도를 통한 투자회수가 상당히 제약되어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에도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와 달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세제적 불이익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오히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EIS 판매는 시장평가 및 유동성 확보가 보장된 거래소 상장 EIS에 국한하고, 고객주문형 구조를 갖는 사모 EIS에 대해서만 상법상의 계약의 사적자치 원리에 따라 현행 투자권유 준칙에 따라 판매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물론 양자 모두 수익의 성격, 원천 및 시간적 측면이 주식직접투자자와 유사하므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세제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주가연계증권과 같은 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한 세제문제는 상품을 분해한 개별 구성부분들에 대한 기존 개인소득세의 차등과세제도를 활용하여 조세회피적 상품구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EIS의 상장화를 통해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정책시사점 및 향후 연구과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펀드 및 주가연계증권 등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상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구성 기초자산인 현물상품에 대한 실현주의 과세원칙과 분류과세제도의 문제점에서 비롯되므로 이들에 대한 기준과세제도(baseline taxation)를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 개인소득세인 종합소득세를 미국 연방소득세와 비교할 때 포괄적 소득세제로의 근접정도가 낮은 일종의 혼합형소득세제(hybrid income taxation system)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형펀드나 주식형구조화상품 과세문제를 다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정책시사점으로, 개인

소득세의 경우 (기초자산인) 현물에 대한 유가증권 양도차익과세의 도입을 주장하거나 그 중간 과도단계서의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양도소득세제 틀 내에서 이들 상품에 대해 양도차익과세를 하게 될 경우 세부담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없어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되 그 기본적 구조는 양도차익과세를 종합소득세 내에서 포괄과세화하는 방향에서 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파생금융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은 본연의 위험분산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투자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긍정적 기능이 인정되었으나, 2000년대 후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공정가격평가의 문제점으로 금융시스템적 위기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들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나 공공연기금 등의 투자가 제한될 수 있도록 규제와 차등조세정책이 마련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KI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0-13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조세정책방향』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헌법과 재정

김정훈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형수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종면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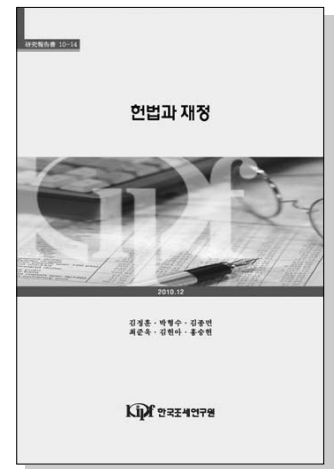
최준욱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아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홍승현 /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보고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헌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가 재정과 관련하여 헌법에 포함되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 ‘재정의 장’ 과 관련된 조항들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제2장의 분석을 요약하면, 국민들을 대표하는 의회가 재정과 관련된 권한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헌법의 조항들이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재정민주주의’ 라는 대원칙 하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지만, 의외로 각국의 헌법이 재정과 관련한 절대적인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헌법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재정과 관련된 의회의 권한을 현재보다 강화하되, 법률 등을 통하여 행정부에 합리적인 수준의 재정권한을 또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재정규율 헌법 포함 여부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는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법제를 통한 재정규율의 강화는 원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재정 운영의 경직성 때문에 헌법에 명시적으로 재정규율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비교헌법 연구를 통하여 각국 헌법의 분권 조항을 검토하였고,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B5변형/ 310면

2010. 12

간 재정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장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헌법 조항이 북유럽 수준으로 집권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나 경제력 규모는 인구가 1,000만명이 되지 않는 북유럽보다는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에 더 가깝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다양한 계층과 지역의 정치경제적 욕구가 북유럽 수준의 집권적 헌법을 통하여 앞으로도 계속 만족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법 개정의 논의에

서 지방정부의 헌법적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각국의 헌법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국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의 헌법을 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와 정부간 재정관계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을 고려할 때, 그리고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육박하고 인구가 5,000만명인 국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계층과 지역의 분권에 대한 정치적 욕구를 감안할 때, 이태리와 스페인과 같은 준연방적 국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프랑스 정도의 분권형 헌법구조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더 적합해 보인다. 물론 헌법 개정이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다양하고 심층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제4장은 헌법을 받쳐 주는 하위 구조로서의 법률과 제도가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헌법에서의 재정조항에 대한 논의가 규범적 원칙의 측면에 치우쳐 있고, 그러한 원칙이 긍정적으로 발휘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에 나타나 있는 재정민주주의적 원칙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제적 구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대분류된다. 한 가지 방식은 의회가 행정부에 예산편성 권한을 위임하고 예산 심의권한을 의회에 둬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위임방식(delegation)이다. 또 한 가지 방식은 정치적·사회적 다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유재 비극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계층의 주요 대표자들이 우선 협의하고 이 협의를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계약방식(contract)이다.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정수지와 정부부채의 경우 위임방식이 바람직한 국가에서 계약방식

형태의 법과 제도를 많이 갖추고 있을 경우 그만큼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경제성장의 경우에는 반대로 계약방식이 바람직한 국가에서 이를 법제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그만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하여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적용해 보면,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예외가 있지만 단일정당이 다수당인 경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운영도 위임방식이 더 적절하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는 헌법에 포함될 재정관련 조항이 예산당국에 효율적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가 시사하고 있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0-14 『헌법과 재정』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저출산 대응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 및 영향 분석

최준욱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헌재 /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나, 저출산의 원인 및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기초 연구는 취약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 추이 및 출산율 하락 원인 등에 대해 이해하여 저출산 대응에서의 재정 정책수단의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수단 중 하나인 출산장려금 제도를 통해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고, 소득재분배 효과 등 저출산 대응 재정정책의 영향 및 저출산 대응정책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저출산 대응정책도 범위가 매우 넓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에 영향을 중점을 두어 논의하였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출산력 자료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동안 출산관련 연구에 많이 사용되었던 출산력 자료는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알 수 있는 변수들이 조사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동일한 가구를 추적조사하지 않고 매년 조사 대상자가 달라지는 횡단면자료(repeated

cross-section data)를 사용하기 때문에 분석 과정에서 가구 고유의 특성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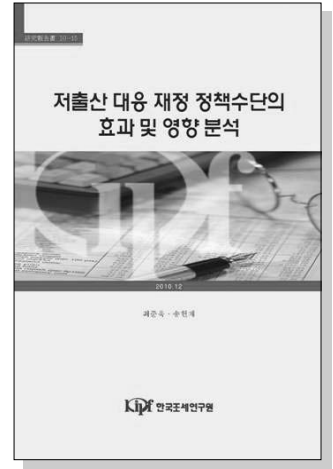
본 연구의 취지와 관련하여 특히 소득이 출산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데, 이는 다양한 재정 정책수단이 가지는 1차적인 효과는 출산가구의 소득을 변화(증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재정정책의 효과를 직접 분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소득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저출산 대응 재정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간접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본장의 실증분석에서는 가구 소득 및 자산이 자녀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러한 결과는 자녀 순위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 소득이 첫째아의 출산에 미치는 확률에 대해서는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과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모두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으며, 두 자료에서 추정된 추정계수의 부호 자체도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는 경우는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가구 소득이 둘째아 이상의 출산확률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러나 가구 소득이 둘째아 이상의 출산에 미치

는 확률과 관련하여, 추정계수의 크기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편적인 자녀수당 등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노동패널자료의 분석이 보여주는 것처럼 가구 소득의 증가가 둘째 이상의 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출산율을 의미 있는 정도로 높이기 위해 필요한 출산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의 규모는 실현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크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도의 대규모 소득지원을 위해서는 조세의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로 인해 지원액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혜택은 더욱 작아지게 되는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추이 및 출산율 하락 원인 등에 대해 이해하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의 변화 추이 및 출산율 하락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저출산 대응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자료의 해석에서 잘못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며, 실제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향후 완결출산율이 적어도 최근의 합계출산율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점은 다행스럽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점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 행태를 살펴보면 세대별로 출산율이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1970년생을 전후로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추세에서는 단순한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출생연도별 결혼 및 출산 행태의 변화에서 불연속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



B5변형/ 201면
2010. 12

서, 이러한 변화를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경제구조의 변화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간접적인 경로를 통한 영향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결혼 연령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기는 하지만, 결혼을 늦게 하지 않는 여성들의 출산율은 크게 하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971~1975년생의 경우 30~34세 기혼인 여성들의 평균자녀 수는 최종적으로는 약 1.8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 하락의 큰 부분은 미혼의 증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비혼의 증가 혹은 늦게 결혼하는 여성들의 출산 감소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출산율 하락의 원인에서 경제적 요인보다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부분이 크다면, 정부가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성공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여서도 소득을 보전하는 등의 재정적인 정책수단보다는 가치관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클 수 있을 것이다.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하

여 발생하는 부담 중에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제도의 개선을 통해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접근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수단 중 하나인 출산장려금 제도를 통해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도입된 다양한 정책들이 실제로 출산율 제고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중요하다. 물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정책들이 아직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도입된 후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대응 정책인 출산장려금 제도가 출산율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출산장려금 사업은 출산율 저하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전국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지급수준이 지자체별로 차별화되어 있어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성을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출산장려금과 출산율에 대한 결정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가임여성의 출산율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출산장려금이 기혼 여성의 출산 계획(의향)을 유도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의 해석과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첫째, 지역별로 출산장려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녀의 출산지역 선택에 영향을 미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효과가 출산장려금과는 상관없이 출산의 선호에 대한 해당 지역의 고유의 효과(local fixed effect)를 반영

한 결과일 수도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에 포함된 모든 설명변수간에 내생성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출산장려금의 추정결과에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이 앞으로의 자녀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실제로 출산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제고에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분석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제외한 가구 소득과 가구 순자산은 자녀 계획 단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왜 소득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추가적인 소득지원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위에 언급한 몇 가지 가능성으로 인해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과다하게 추정된 것이 아니라면, 출산장려금이 단순한 소득지원 외의 다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제Ⅴ장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재분배 효과 측면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정책논의와 연결시키는 시도를 하고자 하였다. 저출산 대응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이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정책의 영향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거나, 정책의 형성과 관련된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재분배 효과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분배 효과가 출산율을 제고하는 경로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재분배가 출산율 제고 효과를 초래하는 경로로 작용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

로 소득불평등이 존재하며, 추가적인 소득이 출산을 제고하는 효과가 소득계층별로 다른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도인 출산장려금, 보육지원 제도,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그리고 조세제도의 재분배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득공제를 통한 지원은 그 혜택이 주로 중산층 이상에 귀속되는 성격을 갖는다. 소득 대비 비율로 본 혜택이 가장 큰 집단은 중상위 정도의 소득계층이며, 정확하게 누진적인 성격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다. 기타 저출산 대응정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역진적인 성격을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 중 규모 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육정책은 그 혜택이 중간 이하의 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강하게 역진적인 성격을 갖는다. 전체적인 혜택도 대체적으로 역진적, 즉 저소득층에서의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출산을 제고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면, 우선지원 대상의 선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정부가 한정된 재원을 소득공제 등의 혜택으로 제공할 것인가 혹은 이전지출 형태로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해외사례와 국제비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족지원을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혹은 그러한 재원을 다른 형태로 지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조세와 이전지출 간의 가장 큰 차이는 두 수단의 재분배 효과가 다르다는 점이다. 사회가 추구하는 것이 좀 더 강한 재분배라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출산을 제고라는 정책목표 달성 측면에서 평가하더라도, 소득공제의 확대보다는 저출산 대책 지출의 확대가 더 효과적

이다. 그러나 조세제도에서의 어떠한 소득공제 제도의 타당성은 단순히 저출산 대책이라는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무엇보다도 조세 본연의 기능에서 세부담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출산 제고 정책으로서의 조세정책 활용의 효과성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출 관련 정책이 좀 더 본격화된다면, 그 시점에서는 조세제도와 통합적인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단계가 아니라면, 저출산 대책으로서 소득공제를 무리하게 활용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0-15 『저출산 대응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 및 영향 분석』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재정분권과 지역경제 성장의 수렴

김정훈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재정분권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우선 첫째로 지역 경제 변수의 특징을 비교적 자세히 통계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GRDP 비중이 24%로 인구 비중 20.6%에 다소 높고, 지역소득은 서울의 비중이 30.6%로 인구 비중에 비하여 10%p 가량 높다. 경기도의 경우 GRDP 비중이 19.3%이어서 인구 비중 22.8%보다 오히려 낮고, 지역소득 비중은 20.9%로 인구 비중에 약간 못 미친다. 즉 지역소득과 GRDP는 지역간 분포가 상당히 다를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에서도 양자의 분포에 큰 차이가 있다. 한편 1990년 이후 서울의 인구는 정체 상태에 머물렀지만, 경기도의 인구는 지난 20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경기도의 1인당 생산량과 소득이 전국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도로의 인구 유입은 이 지역의 생산성이나 실질소득 수준보다 교육, 문화, 공공시설과 같은 생활 환경과 서울에의 근접성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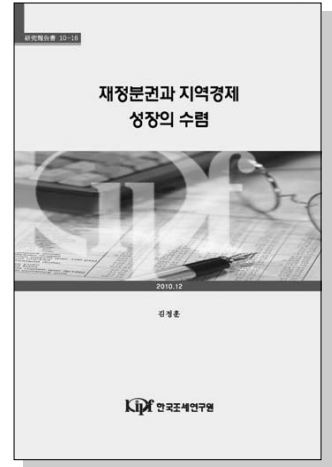
지방재정 지표 중 1인당 지방세의 분포는 주목할 만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2008년 서울, 경기, 인천, 울산의 1인당 지방세가 각각 127만원, 104만원, 85만원, 101만원이었다. 반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의 1인당 지방세는 각각 73만원, 65만원, 63만원, 72만원이었다. 또한 도 지역의 1인당 지방세는 60만원에서 80만원 사이의 분포를 보인다. 따라서 1인당 지방세의 지역간 격차는 상당히 큰 편이고, 특히 서울과 경기의 1인당 지방세는 비수도권 대도시와 도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부산, 대구와 같은 지방 대도시 및 도지역보다 1.7에서 2배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다. 수도권 지역의 소득 수준이 평균보다 높기는 하지만, 1인당 지방세가 다른 지역의 거의 2배에 가깝다는 것은 단지 소득 수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더구나 경기도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1인당 생산과 소득이 평균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지방세가 다른 지역의 1.5배 수준이라는 점은 우리나라의 지방세 체계가 수도권에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수도권의 지방세 여건이 지역생산이나 지역소득에 비하여 훨씬 더 유리한 이유에는 17개의 지방세 세목에서 주민들이 내는 지방세 이외에 비거주인, 특히 법인이 부담하는 지방세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세 과표와 지역 경제 활동의 연계성이 수도권에서 훨씬 더 밀접하다는 것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1인당 지방세 격차를 키

우는 요인이다. 지방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등록세의 과표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지역 생산량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지방세 세수가 결정되는 하나의 예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제Ⅲ장에서는 재정분권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단순한 형태로 포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0대 중반을 전후로 지역생산·소득 및 지방재정 변수의 지역간 분포와 성장률 수렴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95년 이전에는 1인당 GRDP가 수렴하는 추이를 보다가, 1995년 이후에는 오히려 확산하는 추이를 보인다. 또한 지역소득은 2000년 이후 수렴하는 추이가 관찰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인당 지방세의 경우 1990년 이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렴 현상이 관찰되었지만, 1995년 이후부터의 수렴 추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이전재원의 경우에는 성장률의 수렴 현상이 뚜렷하다는 점이 관찰되었다.

제Ⅲ장의 지역경제 성장의 절대적 수렴 여부를 회귀분석한 것인데, 제Ⅳ장에서는 지역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특성 변수들을 회귀모형에 포함하여 수렴 강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네 가지 회귀모형(1990~2008년 1인당 GRDP, 1990~1995년 1인당 GRDP, 1996~2008년 1인당 GRDP, 2000~2008년 1인당 지역소득) 모두 일관적으로 주목할 만한 추정 결과를 보여주는데, 지역생산 및 지역소득의 성장률 수렴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1인당 지방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인당 지방세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지 않을 경우 지역경제 변수의 수렴속도가 매우 느려서, 각 지역의 경제력 수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균형 상태에 도



B5변형/ 140면
2010. 12

달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1인당 지방세를 통제변수에 포함할 경우 지역경제 변수의 수렴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진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1인당 지방세가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일 경우 절대적 수렴의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1인당 지방세와 지역경제 성장 수렴 간의 관계는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양자 간에 부의 관계가 관찰된 것이 아니라 정의 관계가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재정적 부담이 아니라 지역경제 성장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점이 본 보고서에서의 실증분석 결과가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의외라 할 수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방세 세율이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1인당 지방세 세수의 격차는 주민들의 세부담을 반영하는 지방세 세율의 격차가 아니라 지역의 지방세 여건, 특히 지방세 과표에서 법인 등 비거주자가 부담하는 세부담을 반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IV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만약 수도권 지역의 1인당 지방세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이면, 지역소득의 수렴 속도는 현재보다 훨씬 더 빠를 것이고, 그만큼 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이 감소할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균형발전에 대한 정치적 수요가 큰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정책의 시장 개입적 성격 때문에 자원배분의 왜곡적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세 체계가 보다 합리화되어서 지역성장의 격차가 굳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자원배분의 효율화가 달성되고 또한 동시에 지역 세원배분의 형평성도 제고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인당 지방세 세수의 격차가 가격신호 역할을 하는 지방세 세율 격차가 아니라, 각 지역별로 차등화된 지방세 여건으로 인한 과표 격차로 발생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자체의 세수가 지역주민이 아닌 비거주자, 특히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지방세출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커질 뿐만 아니라 본고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지역경제 성장이 시장 메커니즘이 아닌 지방세 체계로 인하여 수렴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지역간 자원의 흐름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성성과 효율성 관점 모두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KIP**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0-16 『재정분권과 지역경제 성장의 수렴』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유효법인세율 측정과 법인세율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이 영 /한양대학교 교수

조명환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현, 서울시립대 교수)

본 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세계 70여개 국가의 국가-산업-시기별 유효법인세율을 추정·분석하고, 감가상각비 공제 전·후의 유효법인세율을 추정하여 법정법인세율이 나타내주지 못하는 각종 공제 및 감면제도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본의 탄력성 추정을 통하여 법인세율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인세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에 대해 개괄한다. 법인세와 관련한 기존의 문헌들로 우선 Harberger(1962), Ballard et al.(1985), Goolsbee(1998) 등 법인세로 인한 비효율성에 관한 연구들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연구는 법인세가 법인 과 비법인, 또는 자본과 다른 생산요소 사이의 자원배분에 왜곡을 가져오으로써 비효율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Jorgen(1963), Hall and Jorgenson(1967), Jorgenson and Yun(1991) 등은 자본의 사용자 비용 모형을 통하여 법인세가 자본의 사용자 비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투자유인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후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많은 실증연구들에서는 법인세부담과 투자 간에 역의 관계가 있다

거나 뚜렷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등의 결과가 혼재하고 있다. 법인세와 경제성장에 관해서는 Jones and Manuelli(1990), King and Rebelo(1990), Lee and Gordon(2005) 등이 있으며 Lee and Gordon(2005)은 법인세가 경제성장 간에 부(-)의 관계가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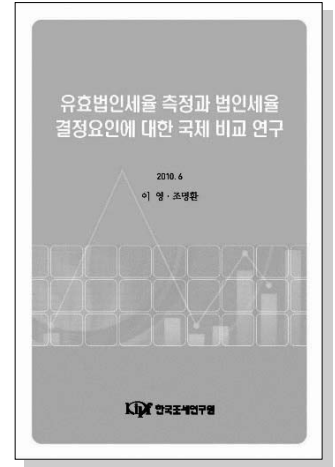
OECD 주요국들의 명목법인세율을 우선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법인세율의 지속적 인하가 관찰되며 법인세율의 수렴현상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이 증가하면서 탄력적인 부분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조세정책의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수 측면에서 국가별 법인세를 살펴보면 법인세율의 인하추세에도 불구하고 세수의 증가추세를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법인세율 인하와 더불어 취해진 각종 감면제도의 축소, 법인 비중의 증가, 법인 소득의 증가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유효법인세율의 국제비교를 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Bureau van Dijk Electronic Publishing에서 제공하는 OSIRIS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OSIRIS 데이터는 1981년부터 2008년까지 138개국

49,000여 기업의 재무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Koester and Kormendi(1989)에서 사용된 방법을 참고하여, 세액을 세전이익에 OLS를 사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나오는 세전이익의 계수 값을 법인세의 유효한계세율의 추정치로 사용하였다. 추정의 결과, 우리나라의 유효한계세율은 1990년대 초반에는 24%로 비교 대상이 된 46개 국가 중 20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2000년대 후반에는 21%로 72개국 중 40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유효한계세율은 비교 대상이 되는 국가들 중에서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빠르게 인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감가상각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하고 유효한계세율을 추정함으로써 국가별 감가상각제도로 인한 세부담 경감효과를 살펴보았다. 2000년대 후반에 있어 우리나라의 감가상각으로 인한 세부담 경감률은 3%로 비교대상 72개국 중 49번째로 높은 경감률을 보이고 있고 있어 감가상각으로 인한 세부담 경감률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리고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등의 감가상각을 통한 세부담 감면율은 14~18%에 이르고, 감가상각을 통한 감면비율이 높은 국가들에는 많은 선진국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OSIRIS 데이터는 개별 기업의 재무자료 및 다른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어 산업별 유효한계세율을 추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을 Energy, Materials, Industrials, Consumer Discretionary, Consumer Staples, Health Care, Financials,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 Services, Utilities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 유효한계세율을 추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부분과 테크놀로지 부문의 유효한계세율이 비교적 낮은 것



B5변형/ 134면
2019. 6

으로 나타났으며, 통신, 보건, 유틸리티(utility) 등의 부문에서 유효한계세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법인세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본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에 이용된 설명변수는 1인당 GDP와 무역개방도, 그리고 이들 두 변수들과 유효법인세율 간의 교차항 등을 포함한다. 회귀분석은 OLS와 유효법인세율과 자본의 탄력성 사이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변국들의 유효법인세율의 가중평균을 도구변수로 하여 이루어졌다. 분석의 결과로 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자산의 증가율이 감소하고, 개방도가 높아질수록 자본의 증가율이 세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탄력성이 큰 곳에 낮은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을 생각하면, 회귀분석의 결과로부터 경제규모가 클수록 법인세율을 높게, 그리고 개방도가 높을수록 법인세율을 낮게 가져가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으로 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우리나라에서의 감가상각 비용처리를 통한 조세감면효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점은 향후 법인세제 개편시 감가상각과 관련된 부분의 개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감가상각제도는 1995년의 잔존가액의 폐지와 자산별 세법상 내용연수의 대폭 단축 등의 개편이 있을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그 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더욱 세부담 감면 효과가 큰 감가상각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감가상각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다. 최근 상시적인 세액공제 허용으로 그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면서 대신 감가상각제도의 세부담 감면 효과가 좀 더 크도록 개선하는 것이 하나의 가능한 정책조합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회귀분석을 통해 개방국가로 갈수록 자본의 탄력성은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를 유지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개방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유효세율을 개방도가 높은 국가들보다 더 낮게 유지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기타보고서 『유효법인세율 측정과 법인세율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모형 연구

이 영 /한양대학교 교수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학자금 용자제도는 능력은 있으나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 정부는 무상보조, 이차보전, 정상대출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인적자본 투자의 시장메커니즘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최근 정부는 상환액이 대출자의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였다. 현행 도입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보증하는 조건하에 한국장학재단이 9조원의 재단채를 발행하여 초기년도 소요 재원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 연동형 학자금 대출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고는 제한된 재원이란 제약조건 아래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 및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소득연동형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의 상환액 결정방식, 대출주체, 용자대상, 용자대상 선별방식 등을 비교하여,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구성요소를 추출하고자 했다.

제Ⅲ장의 해외사례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제Ⅳ장에서는 도입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의 제안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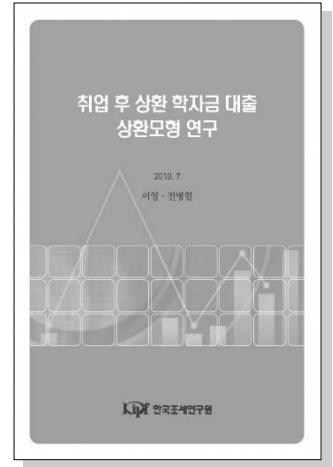
우선 대출대상자 제한과 관련된 쟁점으로 부각된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고령자에 대한 대출 제한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는 어렵지만, 상환의무 면제 연령 및 장기 미상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연령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위험 부담에 대한 다른 제도적 장치를 감안할 때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방식을 따르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상환종료 연령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 같이 상환개시 시점에 연동하는 방식이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된다. 상환조건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상환개시 소득은 일정 금액으로 고정하기보다는 매년도 최저생계비에 연동되어 자동적으로 변경되도록 하는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본다. 상환율 구조는 주어진 재원규모를 감안할 때, 평균 상환기간이 약 10~12년을 만족하여야 할 것이다. 비례적 상환구조와 누진적 상환구조의 선택과 관련해서는 제Ⅵ장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비교 대상으로 선정된 두 구조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관측되지 않았다.

적정 상환율 구조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방식의 추가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다만, 누진적 구조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제도가 너무 복잡하지 않도록 상환율 구조를 2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다른 국가들과 같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운영비용 감소란 측면에서 조기상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3% 수준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와 관련하여 최적의 대안은 현재의 교육비 공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상환액에 대해서만 대출자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소득공제의 근본 취지는 물론 형평성 및 조세수입 증대관점에서 최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는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제외하는 대신 차후 이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자녀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Ⅴ장과 제Ⅵ장에서는 학자금 상환실적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제Ⅴ장에서는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남녀별로 연령별 소득에 대한 확률과정을 추정하였다. 제Ⅵ장에서는 추정된 확률과정에 기초하여 남녀별로 가상적인 소득흐름



B5변형/ 120면
2010. 7

을 생성하여, 주어진 상환모수에 따른 상환실적을 계산하였다.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두 가지의 상환모수는 현재 상환구조하에서의 모수와 도입과정에서 대안으로 고려되었던 또 다른 모수, 2가지이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200만원 대출 시 남성 집단의 상환 미완료자 비율은 대안 1에서 14.2%, 대안 2에서 12.0%로 나타났다. 대출규모 대비 미상환액 비율을 살펴보면 대안 1과 대안 2에서 각각 6.2%와 4.9% 수준이었다. 4,000만원 대출을 가정한 경우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비율은 대안 1과 대안 2에서 18.9%와 16.0%로 약 4%p 이상 상승하였다. 대출금 대비 미상환액의 비율 역시 4,000만원 대출 시에는 8.4%와 6.8%로 이전과 비교하여 높은 수치가 얻어졌다. 절대적인 수준에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여성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대출규모 간, 대안 간 비교결과는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현재의 소득구조 아래서는 비례적 상환구조가 누진적 상환구조에 비해 다소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흥

미로운 사실 하나는 사전적으로 상환액이 소득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구조에 비해 누진적으로 결정되는 구조가 초기 대출금 회수 측면에서 저조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와는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현재 소득흐름 아래서 남성의 상환실적에 비해 여성의 상환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며, 여성의 상환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취업률과 임금 수준 두 가지 모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전체적인 상환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가족 내 상환방식이 비교적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단순히 상환종료 연령을 연장하는 방식은 상환실적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제약적인 가정에 의존한다는 한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다 일반적인 상황 아래서의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주요 쟁점들 외에도 추가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사항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대상자 확대 여부, 상환율 제고 방안 모색, 부부공동상환제 적용에 따른 부차적 사항의 처리, 구조조정을 포함한 대학의 책무 제고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들 문제점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적절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이 제도가 장차 상당한 규모의 재정 부담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재정 부담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행 초기에 사업대상자를 제한하여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더불어 운영과정을 통해 얻어진 여러 자료들에 기초하여 도입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들, 예를 들면 상환율 모수 설정 문제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사업 확대 시에 요구되는 소요 재원 추정 및 확보 방안을 마련한 후에 점차 사업 범위를 확대시키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장기적인 안정성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한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기타보고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모형 연구』의 요약 및 정책시시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탄소배출권의 회계처리 및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이준규 /경희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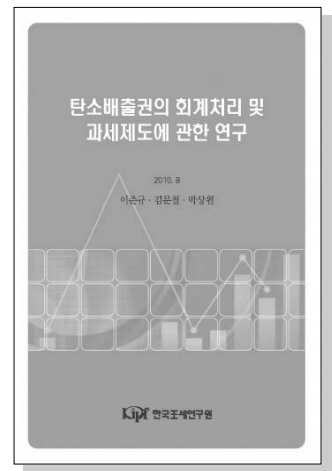
김문철 /경희대학교 교수

박상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에서는 탄소배출권제도의 도입시 예상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한 회계처리 및 과세상의 쟁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회계처리 및 과세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탄소배출권제도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탄소배출권 회계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탄소배출권 회계에 대해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방법을 분석한 후 각 방법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배출권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 이슈는 배출권의 자산성 여부와 자산의 분류 그리고 배출권을 할당받는 시점에서 행할 상대계정의 회계처리로 요약된다. 현재 실무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은 개념적 체계에서 규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거나 회계불일치(accounting mismatch) 문제를 발생시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시키는 데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배출권의 자산성 여부와, 자산성을 인정할 경우 어느 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업이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아 자산으로 기록하는 경우 그 상대계정에 대해 어떤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였다.



B5변형/ 126면
2010. 8

탄소배출권 회계에 대한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는 방법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후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단,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는 방법은 해당 회계기준서가 이러한 회계처리를 허용하도록 개정됨을 전제로 한다. 둘째,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의 상대계정은 조

건부 부채항목으로 처리하고, 매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며, 재측정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즉시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탄소배출권 회계처리 방법에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회계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배출권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는 부가가치세 등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와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의 소득과세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거래에 대한 과세측면에서는 탄소배출권을 외국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탄소배출권의 국내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따라 과세형평과 조세의 중립성이 훼손된다. 또한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탄소배출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환수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활성화시켜 탄소배출 감축 노력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둘째, 법인세의 측면에서 탄소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은 경우 현행 규정에 의하면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탄소배출권이 탄소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지 해당 기업에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탄소배출 할당량을 조기에 사용한 기업이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노력한 기업에 비하여 익금산입으로 인한 과세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탄소배출권의 할당 당시 익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CDM 사업 등에 참여하여 탄소배출권을 창설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탄소배출권의 시가 상당액을 탄소배출권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총투자

지출 중 나머지 금액을 탄소배출 감축사업에의 투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탄소배출권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에는 평균법을 적용하여 단위당 취득원가를 산정하되, 할당량 배출권과 그 이외의 배출권(승계취득 배출권과 창설취득 배출권)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평균법이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득세의 측면에서 개인이 탄소배출권을 매매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의 산정과 분리과세 적용 등에 있어서 무체재산권의 양도대가에 준하는 방식으로 과세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 논의된 탄소배출권의 회계제도 및 과세제도는 향후 탄소배출권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에 그 내용이 확정되어 거래자로 하여금 거래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기타보고서 『탄소배출권의 회계처리 및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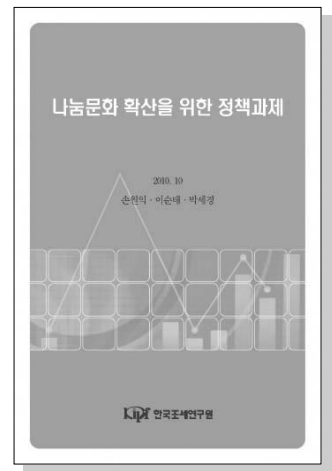
손원익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순태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세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갑자기 증가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다. IMF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단행된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하여 기업의 도산, 대량실업, 중산층의 추락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미비하여 심각한 양극화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고, 그 결과 민간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나타나게 되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나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나눔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기부에 대한 통계를 보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 8,500억원이었던 개인기부가 2001년에 2조 9,8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오히려 1999년 2조 500억원에서 2001년 1조 6,900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2000년을 기점으로



B5변형/ 238면

2010. 10

개인기부의 규모가 법인기부의 규모를 사상 처음 추월하게 되었다. 법인기부를 추월한 개인기부의 증가추이는 최근까지도 유지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개인기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한 번 고조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정부의 정

책도 변화되어 왔다. 우선 기부와 관련된 법적 근거와 관련제도가 정비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기부금품모집에 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을 쉽게 하여 비영리공익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신탁에 대한 법제 개선의 노력도 진행 중이다. 기부와 관련된 세제의 경우 2000년과 2007년에 대폭적인 개편이 있었으며, 개편의 핵심은 개인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2010년 세제개편안에도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제도를 단순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기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하게 된 데에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나눔의 형태 중에는 현금기부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단이지만, 부동산·주식 등 현물기부도 비중은 크지 않지만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부수단 이외에도 최근에 와서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태안반도의 오염사태를 겪으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전 국민이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시간을 기부하는 재능기부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모두 3편으로 구성되며, 제2편에서는 “우리나라의 나눔문화 실태 및 정책과제”, 제3편에서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 개선”, 제4편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의 확산”을 주제로 논의한다.

제2편에서는 우리나라의 나눔에 대한 현황을 다

양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주요국의 현황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나눔의 현주소를 파악한다. 또한 나눔과 관련된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하고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눔과 관련된 현황 및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제3편에서는 나눔을 위해 필요한 모금활동에 대한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민간공익활동과 관련된 법제를 개관하고 민간공익활동주체에 대한 법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에서 논의중에 있는 공익신탁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제4편에서는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원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국가봉사조직 설립의 기본방향 및 모형에 대하여 논의한다. 국가봉사조직의 설립과 관련된 논의는 미국의 AmeriCorps의 운영성과 및 한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진행한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기타보고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1-12

요약

- 뉴질랜드는 조세지출을 감축하는 방향의 2012년 예산안을 발표함
 - 주요 세제조치로는 법인세율의 인하, 퇴직저축 제도(KiwiSaver scheme)의 변화, 근로자보조 제도(Working for Families Scheme)의 혜택 축소, 외국인 소유 은행에 대한 새로운 과소자본 세제 등이 포함됨
- 스페인 관보(Official Gazette)는 2011년 5월 27일 도박사업을 합법적으로 허가하고 게임세(gaming tax)를 부과하는 내용의 게임법(Law 13/2011)을 발표함
- 이탈리아 과세당국은 2011년 5월 26일에 피지배 외국회사 규정(CFC rules)의 적용대상인 외국실체를 명확히 하는 시행지침(ruling 23/E)을 공포하였음

1. 뉴질랜드의 예산안 발표

- 뉴질랜드 재무부는 예산 적자(167억뉴질랜드달러 상당)를 감소하기 위하여 조세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포함된 2012년 예산안을 2011년 5월 19일에 의회에 제출하였음
- 예산안의 주요 세제조치는 법인세율의 인하(30%에서 28%로) 등을 포함함
 - 법인세율 인하 외의 주요 세제조치로는 퇴직저축제도(KiwiSaver scheme)의 변화, 근로장려세제(Working for Families Scheme)의 공제 축소, 외국인 소유 은행에 대한 새로운 과소자본세제가 포함됨
 - 주요 세제검토로는 혼용자산(mixed-use assets)에 대한 과세조치의 검토, 생물 재고(livestock)의 평가를 선택하는 조치의 검토, 현물혜택(non-cash benefits)에 대한 과세조치의 검토가 있었음

가. 퇴직저축제도(KiwiSaver scheme)의 변화

- 'KiwiSaver'는 납세자가 은퇴에 대비하여 저축하는 것이며¹⁾ 이 제도를 통한 납세자의 저축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1) <http://www.kiwisaver.govt.nz/new/about/>

- 고용주가 납세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납세자가 미리 신청한 율²⁾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이를 'KiwiSaver Scheme'에 투자함
 - 이렇게 투자된 자금 및 투자수익은 납세자의 퇴직 대비 자금이 됨
- 퇴직저축제도(KiwiSaver)와 관련된 세제혜택이 축소됨
- 2011년 6월부터 세액공제가 반으로 줄어들음
 - 최대 세액공제가 1,042뉴질랜드달러/년에서 521뉴질랜드달러/년로 인하됨
 - 2012년 4월부터 고용주 기여분에 대해 고용주 퇴직연금 기여세 (Employer Superannuation Contribution Tax, ESCT)가 부과됨
 - 2012년 4월 이전에 고용주 기여분은 과세면제였음
 - 고용주 퇴직연금 기여세 (Employer Superannuation Contribution Tax, ESCT)는 종업원 한계세율로 과세됨
 - 2013년 4월부터 고용주와 종업원의 최소기여분이 2%에서 3%로 인상됨
 - 종업원은 종업원 기여분으로 4%나 8%를 선택할 수 있음
- 이러한 세제조치로 인하여 뉴질랜드는 4년에 걸쳐 26억뉴질랜드달러의 조세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나. 근로자보조제도(Working for Families Scheme)의 혜택 축소
- 근로자보조제도(Working for Families)는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임³⁾
-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보조금의 지급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보조금을 축소함
- 보조금이 감소되기 시작하는 소득기준을 36,827뉴질랜드달러에서 35,000뉴질랜드달러로 낮춤
 - 이 조치를 통하여 더 적은 소득수준에서 보조금이 감소되기 시작하므로 동일한 소득수준에서 지급받는 보조금이 적어짐
 - 보조금이 감소되는 비율도 높아짐
 - 일정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보조금이 감소되는 경우에 보조금이 감소되는 비율이 초과소득에 대한 뉴질랜드달러당 20센트에서 25센트로 인상함
 - 이 조치를 통하여 초과소득이 동일한 금액일 때 감소되는 보조금이 더 커짐
 - 이 조치는 1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한 가족세액공제 (Family Tax Credit, FTC)를 13세 이상 15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가족세액공제(Family Tax Credit, FTC)와 동일하게 축소할 것임
- 이 조치는 2012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4단계에 걸쳐 점차적으로 진행될 것임

2) 2%, 4%, 8%로 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세제개정안에 따르면 최소화적비율을 2%에서 3%로 인상하게 됨

3) <http://www.workingforfamilies.govt.nz/>



- 이러한 세제조치로 인하여 뉴질랜드는 4년에 걸쳐 448백만뉴질랜드달러의 조세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다. 외국인 소유 은행에 대한 새로운 과소자본세제

- 외국인이 소유한 은행에 대하여 최소자본비율(minimum prescribed percentage of equity)을 4%에서 6%로 인상함
 - 2012년 4월 1일 이후에 시행될 예정임
 - 이러한 조치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비은행 다국적기업의 과소자본세제규정의 변화를 따른 것임
- 최소자본비율이 4%에서 6%로 인상되면 외국인 소유 은행의 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이 더욱 제한됨
- 이러한 세제조치를 통하여 뉴질랜드는 2012년에 28백만뉴질랜드달러, 이후에 매년 31백만뉴질랜드달러의 세수증가를 예상하고 있음

라. 기타 과세조치에 대한 검토

- 업무 용도와 사적 용도로 동시에 사용하는 혼용자산에 대한 과세조치를 검토함
 - 요트와 별장과 같은 고가자산을 혼용자산으로 쓰는 경우에 손금산입이 과대하다는 것이 논의의 중심이 있음
- 생물 재고(livestock)의 평가규정 선택조치를 검토하였는데, 현재 생물 재고의 평가규정 선택조치에 의하면 농부는 두 가지의 평가방법 중 하나로 생물 자산을

평가할 수 있음

- 두 가지 방법은 herd scheme과 national standard cost scheme임
 - herd scheme은 재고자산의 원가가 생물자산군별로 결정되고, national standard cost scheme은 전체 원가의 평균으로 결정됨
- 농부는 세무 목적상 유리한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나의 평가방법에서 다른 평가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함
 - 그 결과 시장가치가 증가되어도 과세되지 않고 시장가치가 감소될 때는 손금산입이 가능함

- 현물혜택(non-cash benefits)에 대한 과세조치도 검토함
 -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등을 검토하면서 이익을 재정의함
 - 이익의 범위에서 현물혜택(non-cash benefits)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검토함

2. 스페인 게임법 도입

- 스페인 관보(Official Gazette)는 2011년 5월 27일 도박사업을 합법적으로 허가하고 게임세(gaming tax)를 부과하는 내용의 게임법(Law 13/2011)을 발표함
 - 명칭은 “게임법”이나 실질적 내용은 도박사업에 대한 규정임
 - 이 법률은 2011년 5월 29일부터 유효함
- 스페인은 1997년 도박사업을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하는 내용의 칙령(Royal Decree Law 16/1977)을 발표한 바 있음

- 기술 발달로 온라인 도박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등 전통적인 도박의 개념이 변경되어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게임법을 제정함
 - 스페인 정부는 법령으로 도박사업을 합법화함으로써 도박사업자에게 법적 안정성(legal certainty)을 부여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을 불법 도박 서비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신설된 게임법은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등록하여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도박사업자에 대해 게임세와 등록비 등의 제반 관리비를 부과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함
 - 게임법의 적용대상은 도박장, 카지노, 온라인 도박 등 도박의 종류나 운영 방법과 관계없이 모든 도박 사업을 포괄함
 - 단, 정부가 운영하는 복권사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도박사업자는 도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해당 자치구(state)에서 정식 라이선스(license)를 취득하고 허가(authorization)를 받아야 함
 - 게임법을 위반한 도박사업자에 대해서는 1백만유로에서 5천만유로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게임세는 도박 종류별로 다른 과세체계가 적용되며, 10%에서 25%의 세율이 적용됨
 - 대부분의 도박은 순이익(gross profit)에 게임세가 부과되나, 일부 도박은 매출액(turnover)에 게임세가 부과됨
 - 스포츠 도박은 매출액에 22%, 경마와 패리뮤추얼(pari-mutuel) 도박⁴⁾은 매출액에 15%의 게임세가 부과됨
 - 위의 도박을 제외한 나머지 도박은 순이익에 게임세가 부과됨. 다만, 위의 도박이 고정승률(fixed odds) 방식이라면 순이익에 게임세가 부과됨
 - 자치구별로 해당 자치국 내 도박사업에 대해 세율을 20%까지 인상 가능함
 - 게임세가 부과되는 도박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게임세 이외에도 연 매출액의 1%를 관리수수료(administration fee)로 납부해야 하며, 그 외에도 등록비, 게임시스템 기술보고서 발행비 등의 제반 수료를 납부해야 함

3. 이탈리아의 피지배외국회사(CFC)에 관한 시행지침 발표

- 이탈리아 과세당국은 2011년 5월 26일에 피지배외국회사 규정(CFC rules)에 관한 시행지침(ruling 23/E)을 공포하였음
- 피지배외국회사 규정 (CFC rules) : 외국법인을 지배하는 거주자가 지배권을 이용하여 외국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외국회사에 유보하여 거주국의 과세를 이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외국회사에 유보된 소득에 대해서 거주자에게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반-조세회피(anti-avoidance) 제도임
- 시행지침에 포함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4) 패리뮤추얼 도박이란 게임에 건 금액을 베팅에 따라 전체 금액에서 관리비의 수수료만 공제하고 되돌려주는 게임 방식임



가. 피지배외국회사(CFC) 규정 적용대상인 외국실체 명확화

- 시행지침(ruling 23/E)에 따르면, 피지배외국회사(CFC)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회사에는 회사와 회사 등이 아닌 외국실체를 포함하지만, ① 특수관계 없는 다수의 투자자에 의해서 지배되고, ② 개별 국가의 규제위원회(regulatory commission)의 통제를 따라야 하고, ③ 전문 중개인(professional brokers)에 의해서 관리되는 실체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뮤추얼펀드가 위의 ①~③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피지배외국회사(CFC)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피지배외국회사(CFC)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 실체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였음
 - 과세당국은 외국실체(foreign entity)가 회사(company)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실체(entity)인 경우 피지배외국회사 규정을 적용하여 왔는데, 실체(entity)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여 실무상 과세대상의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음
 - 특히 뮤추얼펀드에 관한 적용 여부에 논란이 있음
 - 새로운 시행지침(ruling 23/E)은 실체(entity)에 관한 요건을 명확히 함

■ 피지배외국회사(CFC) 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납세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능동사업 요건 : 외국실체가 블랙리스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주된 활동으로 실제 제조업이나 도매업을 수행하여야 함
 - 블랙리스트 국가 : 조세회피지 협의가 있는 국가로 통합소득세 제1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Andorra, Cyprus, Macao, UAE, Vanuatu 등의 국가
- 거주지 요건 : 외국실체에 대한 투자가 블랙리스트 국가로의 소득이전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거주지 요건에 관해서는, 피지배외국회사(CFC)의 유효세율이 이탈리아의 조세부담과 유사한 세율(가상세율)인 경우에 소득은 블랙리스트 국가로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봄

- Ruling 23/E에서는 이탈리아의 조세부담과 유사한 세율(가상세율)을 계산할 때, CFC가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더라도 이탈리아의 세법규정이 여전히 과세소득의 결정에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음

나. 국제회계기준으로 계산한 조세부담 비교를 인정

- 시행지침(ruling 23/E)에 따르면, 피지배외국회사(CFC) 규정의 거주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이탈리아) 조세부담률의 계산에 국제회계기준을 기초로 계산한 과세소득을 인정함

동향 11-13

요약

- 2010년 이후 부가가치세율을 변경한 국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국가가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 전자세정 자문위원회(the Electronic Tax Administration Advisory Committee, ETAAC)는 전자신고율 80%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전자세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네덜란드 과세당국은 2011년 5월 19일에 기능통화 적용 승인요건을 명확히 하는 시행지침인 Decree No. BLKB2011/392M of 11 May 2011을 발표함

1. 2010년 이후 각국의 부가가치세율 변화 추이

〈표 1〉 2010/11 부가가치세 세율변화 국가

국 가	대상세목	대상기간	세율변화		
			전	후	상태
캐 나 다	퀘백매출세	2011.1.1~	7.5%	8.5%	인상
아 일 랜 드	부가가치세	2013.1.1~	21%	22%	인상
		2014.1.1~	22%	23%	인상
포 르 투 갈	부가가치세(표준세율)	2011.1.1~	21%	23%	인상
영 국	부가가치세(표준세율)	2011.1.4~	17.5%	20%	인상
스 위 스	부가가치세(표준세율)	2011.1.1~	7.6%	8%	인상
	부가가치세(경감세율)		2.4%	2.5%	인상
	부가가치세(특별세율)		3.6%	3.8%	인상
슬로바키아	부가가치세(표준세율)	2011.1.1~	19%	20%	인상
폴 란 드	부가가치세(초경감세율)	2011.1.1~	0%, 3%	5%	인상
	부가가치세(표준세율)		22%	23%	인상
	부가가치세(경감세율)		7%	8%	인상
라 트 비 아	부가가치세(표준세율)	2011.1.1~	21%	22%	인상
	부가가치세(경감세율)		10%	12%	인상
그 리 스	부가가치세(최저세율)	2011.1.1~	5.5%	6.5%	인상
	부가가치세(경감세율)		11%	13%	인상
뉴질랜드	일반매출세(표준세율)	2010.10.1~	12.5%	15%	인상
채널군도(Jersey)	일반매출세	2011.1.1.~	3%	5%	인상
바베이도스	부가가치세	2010.12.1~	15%	17%	인상
리히텐슈타인	부가가치세(표준세율)	2011.1.1~	7.6%	8%	인상
	부가가치세(경감세율)		2.4%	2.5%	인상
	부가가치세		3.6%	3.8%	인상
스리랑카	일부 품목 부가가치세율	2011.1.1~	20%	12%	인하
보츠와나	부가가치세	2010.4.1~	10%	12%	인상
피 지	부가가치세(표준세율)	2011.1.1~	12.5%	15%	인상

자료: Indirect tax in 2011, Ernst&Young

- 2010년과 2011년 초까지 부가가치세율에 변화가 있었던 국가를 조사함
 - 조사목적은 2009년 9월 조세동향 자료와 비교하여



일정한 추세 등을 파악하기 위함

- 2009년 9월 조세동향자료¹⁾에서 유럽이 급증하는 정부부채 관련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고 있는 내용을 다룬 바 있음

- 2010/11에 부가가치세 세율에 변화가 있었던 국가 중 스리랑카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였음
 - 폴란드의 초경감세율은 개정 전 서적에 대해 0% 세율, 미가공식품에 대해 3%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개정하여 5% 세율을 도입하게 됨
 - 스리랑카의 부가가치세율 인하는 전체 세율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치품과 금융서비스에 한정된 것임
- <표 1>을 2009년 9월에 발간된 조세동향자료와 비교해 보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 라트비아는 2009년 1월 1일 부가가치세의 표준세율을 21%로 인상한 후 2011년 1월 1일부터 22%로 추가 인상하는 조치를 취함
 - 영국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인하(17.5% → 15%)하였다가 2010년 1월 1일에 부가가치세율을 회복(15% → 17.5%)시켰고,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하여 2011년 1월 4일부터 부가가치세율을 인상(17.5% → 20%)함

2. 미국 전자행정에 관한 보고서 발표

- 전자세정 자문위원회(the Electronic Tax Administration Advisory Committee, ETAAC)는 전자신고율 80%를 목표로 미국 국세청의 전자행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전자세정 자문위원회는 1998년 국세청의 구조조정과 개혁에 관한 법률(The Internal Revenue Service Restructuring and Reform Act)에 따라 구성된 후 미국 국세청의 전자신고 및 전자행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가. 전자세정 현황 및 정책

- 미국 국세청에서 발표한 2011년 전자신고율은 전년도보다 6% 증가한 66%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개인소득에 대한 전자신고율은 77%로 예상됨
 - 주요 세무신고에 대한 전자신고 현황은 2009년 57%, 2010년 60%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근로소득에 대한 전자신고 이행률은 24%로 전자신고 목표치인 80%를 달성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전자신고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표 2> 2010년과 2011년 주요 세무신고에 대한 전자신고율

(단위: 천건, %)

신고 종류	2010년			2011년			증감률	
	총건수	전자신고 건수	전자 신고율	총건수	전자신고 건수	전자 신고율	전자신고 건수	전자 신고율
개인소득	140,403	98,100	70	141,123	109,102	77	11,002	7
근로소득	28,924	6,653	23	28,982	6,891	24	238	1
법인소득	6,456	2,188	34	6,538	2,497	38	309	4
파트너십	3,597	1,271	35	3,798	1,415	37	143	2
신탁	3,056	854	28	3,067	1,122	37	269	9
비영리단체	595	126	21	607	163	27	37	6
합계	183,031	109,192	60	184,113	121,190	66	11,998	6

자료: 2011 IRS Annual Report, p.3, 2011. 6.

1) 조세동향 09-17

- 위 <표 2>에 따르면 개인소득에 대한 전자신고율은 2011년까지 80%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국세청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전자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전자신고 의무대상인 세무대리인의 범위가 2011년 개인소득세를 100건 이상 신고하는 자에서 10건 이상 신고하는 자로 확대 적용됨
- 전자신고 오류 발생 원인을 제거하여 오류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해 신고서를 작성한 납세자가 서면신고하지 않도록 전자신고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2011년부터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던 신고안내문의 발송을 중지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전자신고를 독려할 것임

나. 2011년 이후 전자세정의 추진 과제

- 2010년 전자세정 구현을 위해 세 가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전자신고 서비스 시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세정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집중하며, 민간사업자(시스템 개발사업자 등)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선하여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전자세정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첫째, 전자신고 서비스 시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국세청은 안전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해야 함

- 미국 국세청은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유무역위원회(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에 따라 정보보안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프로그램의 작동을 계속해서 감시·감독해야 함
- 미국 국세청은 전자신고 오류 발생을 줄이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사업자 등 민간의 이해관계자들과 계속해서 협의해야 함

- 둘째, 국세청은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전액 지원받고 전자신고 프로그램(Modernized e-File, MeF)²⁾ 개발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야 할 것임

- 2012년까지 128개 서식을 전자신고 대상서식에 추가하고 2013년까지 수정신고도 전자신고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임
- 전자신고율의 증가, 전자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 전자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세청 문의의 감소 등을 통해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전자신고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 7월 31일까지 국세청과 민간개발사업자가 참여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자신고 오류를 줄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야 함
- 전자신고 오류로 인해 전자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2) MeF는 인터넷을 기반으로한 전자신고 시스템으로 기존 전자신고 프로그램과 비교해 오류 코드에 대한 설명방식을 개선(다른 서식과 비교하고 오류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함)하고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데이터의 정확성과 납세자 정보보호 기능을 개선하고, .pdf와 같은 형식의 파일을 첨부할 수 있으며, 납부 프로그램과 통합이 가능함. 또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을 철회할 수 있는 기능 등 기존 프로그램에서 지원하지 않던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임



비율이 15~20%로 분석되었으며 전자신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오류를 개선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함

- 조사 결과 15가지의 오류가 전체 오류발생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전자신고 프로그램 개발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정형화된 오류를 개선해 나가야 함

• 국세청은 근로소득에 대한 전자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고용주, 근로소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자와 납세 대리인과 계속해서 협의해야 함

■ 셋째, 납세자가 국세청에 이미 신고한 정보를 검색하고 세금을 자동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 전자신고 간소화(Simple return)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민간 시스템 개발사업자 등과 협력해야 함

• 전자신고 간소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발 자금의 확보와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사전 논의가 필요함

-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전자신고 시스템의 작동이 정지된 사례가 있었고, 영국은 최근 전자신고 프로그램의 계산오류로 600만명이 세금을 적게 신고·납부한 사례가 있었음

3. 네덜란드의 기능통화 과세제도 관련 시행지침 발행

■ 네덜란드 과세당국은 2011년 5월 19일에 세무목적상 기능통화 적용에 관한 승인요건을 명확히 하는 시행지침인 Decree No. BLKB2011/392M of 11 May 2011을 발표함

• 본 시행지침은 2011년 5월 11일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

■ 세무목적상 기능통화의 적용에 관한 시행지침(Decree No. BLKB2011/392M of 11 May 2011)은 명확하지 않았던 기능통화 승인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승인지침을 제시함

• 네덜란드 법인세법(CITA) 제7(5)조에 따르면 납세자는 과세소득의 계산에 Euro 이외의 통화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받을 수 있음

• 하지만 네덜란드 과세관청은 기능통화 승인요건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음

■ 본 시행지침에 따르면, 기능통화의 사용을 승인받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음

• 기능통화 승인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음

기능통화 승인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기능통화로 표시된 계정의 정당성이 납세자의 실제 해외사업 활동이나 당해 기업집단의 여러 국가나 대륙에 걸친 활동으로 입증되어야 함

• 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가 동일한 기능통화를 사용하여야 함

• 2011년 1월 1일 이후, 환율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에서 결정하는 Euro foreign exchange rate를 사용하여야 함

• 법인세 납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회계연도의 과세소득은 당해연도의 평균환율에 의해서 Euro로 전환되어야 함

정책 흐름



- 2012년도 예산안 요구현황 및 편성방향
- 2011년 제2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개최
-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 지방세 환급금 정보공유체계 구축으로 체납 징수 강화

2012년도 예산안 요구현황 및 편성방향

* 본 자료는 2011년 7월 7일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에서 발표한 '2012년도 예산안 요구현황 및 편성방향'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1. 요구 규모

- 각 부처가 요구한 '12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332.6조원으로 '11년 대비 7.6% 증가한 수준

(단위: 조원)

구분	'11년(A)	'12요구(B)	증감(B-A)	%
총지출	309.1	332.6*	23.5	7.6
【예산】	216.4	235.3	18.9	8.7
【기금】	92.7	97.3	4.6	5.0

* 6. 30일까지 50개 중앙관서가 재정부에 제출한 요구서 기준

* '10~'14 중기계획상의 '12년 총지출 규모는 324.8조원

2. 요구의 주요 특징

- ① '12년 요구 증가율 7.6%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요구 증가율 6.9%*를 상회하는 수준

* 요구 증가율(전년 대비, 총지출 기준, %) : ('07) 6.8 → ('08) 8.4 → ('09) 7.4 → ('10) 4.9 → ('11) 6.9

- 취득세 인하에 따른 국고 보전분 등 이번 요구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대규모 사업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12년 요구 증가율은 '05년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

- ② 12대 분야별 요구 현황을 보면

- R&D, 일반공공행정, 교육, 외교통일, 복지, 국방

등 6개 분야의 요구 증가율이 높은 수준

- (R&D) 가장 높은 13.7% 증액 요구. 이는 '12년 R&D 규모를 '08년의 1.5배로 확대한다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기인

- (일반공공행정, 교육)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증가 등으로 11.0% 증가

- (외교통일) ODA 확대 등으로 8.0% 증가

- (복지) 7.2% 증가율은 기초생보 등 의무적 복지 지출에 주로 기인

- (국방) 국지도발에 대비한 방위력 개선을 위해 6.6% 증액 요구

-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1년 수준 요구

- SOC, 문화, 환경, 농림 등 4개 분야는 '11년 예산 대비 감액 요구

- (SOC) '12년 4대강 사업 마무리로 감소율이 △13.8%로 가장 큼

- (문화) 대규모 국제대회 및 건립사업 완료 등으로 △6.2% 감소

- (환경) 4대강 수질개선 마무리 등을 감안 △5.8% 감액 요구

- (농림)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감소 등으로 △2.7% 감소

- ③ 법적·의무적 지출, 주요 정책과제 등을 중심으로 대폭 증액 요구

- 기초생활보장, 보육료,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보금자리주택 등 주요 복지지출 : +5.5조원 (53.8조원 → 59.3조원)
 - 초·중·등 교육 지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 +3.7조원 (35.5조원 → 39.2조원)
 - 지방재정 지원(지방교부세) : +3.3조원 (30.2조원 → 33.5조원)
 - 국방전력 유지 및 방위력 개선 : +2.1조원 (31.4조원 → 33.5조원)
 -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등 R&D 지원 : +2.0조원 (14.9조원 → 16.9조원)
 - 국가채무 이자 : +1.0조원 (15.3조원 → 16.3조원)
 - 세종시 건설, ODA(공적개발원조) 지원 등 : +1.9조원 (20.1조원 → 22.0조원)
- ⇒ 이러한 경직적 지출 요구 증가분이 +19.5조원 수준으로, 총요구 증가분 +23.5조원의 83%를 차지 → 지출구조의 경직성이 확대되는 추세

3. 향후 편성방향

-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해 재정총량을 엄격하게 관리
 -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함으로써 재정수지를 금년(GDP 대비 $\Delta 2.0\%$)보다 개선
 - 보조사업 존치평가,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세출 구조조정 적극 추진
 - 지출한도를 자의적으로 초과하여 요구하거나, 다른 사업을 증액하기 위해 의무지출이나 경직성 경비를 줄여 요구한 경우*에는 추후 편성과정에서 기본경비 삭감 등의 조치 검토
- * (예시) 인건비 축소, 환율 등 공통기준 미적용, 보험급여·출연금 등 의무적 지출 축소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여타 사업 증액

-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확실하게 지원
- '12년 예산은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4.23)에서 논의된 대로 '일'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
 - 이를 위해 (i)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능동적 복지, (ii) 녹색성장과 미래대비, (iii) 국민 안전 및 국격 제고 등 3대 분야를 적극 지원
- 특히, 복지 지원에 대해서는 (i) 일하는 복지, (ii) 맞춤형 복지, (iii) 지속가능한 복지 등 3대 원칙 하에 차별화되는 프레임과 세부 프로그램 제시
 - '11년 서민희망예산에 이어 '12년에도 2단계 서민희망예산을 마련, 차질 없이 지원

4. 향후 일정

- 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9월까지 부처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 9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
- 7~9월 : 예산·기금 요구 협의·보완
- 9월 중순 :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
- 9월말 : 정부안 확정
- 9.30일까지 : 국회 제출

참고 '12년 분야별 요구현황

(단위: 조원)

구 분	'11예산 (A)	'12요구 (B)	'11 대비 증감	
			(B-A)	%
1. R&D	14.9	16.9	2.0	(13.7)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2	15.1	△0.1	(△0.7)
3. SOC	24.4	21.1	△3.4	(△13.8)
4. 농림수산식품	17.6	17.2	△0.5	(△2.7)
5. 보건·복지·노동	86.4	92.6	6.2	(7.2)
6. 교육	41.2	45.7	4.5	(10.9)
7. 문화·체육·관광	4.2	3.9	△0.3	(△6.2)
8. 환경	5.8	5.4	△0.3	(△5.8)
9. 국방(일반회계 총계)	31.4	33.5	2.1	(6.6)
10. 외교·통일	3.7	3.9	0.3	(8.0)
11. 공공질서·안전	13.7	14.3	0.6	(4.5)
12. 일반공공행정	52.4	58.1	5.8	(11.0)
◆ 총 지 출	309.1	332.6	23.5	(7.6)

2011년 제2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개최

* 본 자료는 2011년 7월 5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발표한 「2011년 제2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개최」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 5(화) 09:10 정부중앙청사에서 「2011년 제2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 ‘주요 재정사업 지출효율화 방안’, ‘2011년 제1차 심층평가 추진계획’, ‘장기재정전망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향후 재정정책 방향 관련〉

- 박재완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향후 재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위기 극복의 일등 공신”이었던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 현재 우리나라 재정은 위기극복 이후 강력한 지출억제와 세수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건전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양호한 모습이지만,
 - * 재정수지(GDP 대비%, '09년 → '10년): (OECD평균) Δ8.2 → Δ7.7, (한국) Δ4.1 → Δ1.1
 - * 국가채무(GDP 대비%, '09년 → '10년): (OECD평균) 90.9 → 97.6, (한국) 33.8 → 33.5
-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잠재성장률 저하 및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 향후 통일비용 등 각종 위험요인을 고려할 때 건전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

- 특히, 최근 반값 등록금, 무상복지 논쟁에서 보듯이 내년도 총선·대선 등 정치일정을 전후하여
 -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재정지출 요구가 분출하고, 재정 포퓰리즘의 확산 등으로 재정건전성 관리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명

- 박재완 장관은 향후 수년간은 재정건전성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조기에 복원하여, 각종 재정위험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 지금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궁리하는 “베짱이”가 아니라 미래 수요를 대비해서 어떻게 돈을 아끼고 모을 것인지 고민하는 “개미”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
- 특히, 북유럽 국가는 그간 강력한 재정긴축과 복지제도 개혁을 통해 “튼튼한 재정”을 유지함으로써 금융위기의 태풍을 비켜갈 수 있었던 반면
- '80년대 남미, '90년대 일본, '00년대 남유럽은 과다한 복지지출, 정치적 포퓰리즘과 맞물린 재정사업 확대 등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아울러, 지난해 韓日재무장관회의에서 일본 예산부서 최고 책임자가 “고령화에 미리 대비하지 못

한 뼈아픈 정책실패” 경험을 토로하면서

- 현재 일본은 고령화가 상당히 진전(인구 4명당 1명이 65세 이상)되고, 고령자가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연금 민주주의”가 지배하고 있어 복지개혁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시인하며
-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한국도 자신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진심어린 조언을 했다고 언급

-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하여 재정건전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재정지출 수반 정부 입법안, 정책* 등은 원칙적으로 동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으로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 * 연간 500억원 이상, 총 2,000억원 이상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

〈주요 재정사업 지출효율화 방안 관련〉

- 박재완 장관은 그간 재정당국에서 총 45개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약 9,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고 하면서
-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심층평가를 통해 마련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 3개 사업(군)*에 대한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당부함
 - *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실질적인 지출 효율화 추진을

위해 공통의 정책목표를 지향하는 여러 부처 사업들을 군(群)으로 묶어 평가하는 방식을 시범 도입(10년)

- ① 벤처펀드에 투자하여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사업”의 경우
 - 창업초기기업 지원 등 시장실패 보완 기능이 미흡하고, 정책금융공사 등 다른 공적투자기관이 조성한 자금과 유사·중복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평가
 - ☞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등 모태펀드의 정책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공적투자기관간 역할분담 및 업무연계 제고 필요
- ② “대의 무상원조(KOICA 사업)”은 사업간 연계·조정 등이 미흡하고 외교부와 KOICA간 예산·역할이 중복되는 것 등으로 평가되었으나,
 - ODA 선진화방안(10. 10월) 및 ODA 기본계획(10. 12월) 수립을 통해 그동안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왔음
 - ☞ 앞으로도 유·무상 등 원조기관간 협의·조정을 강화하고, 외교부-KOICA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방향 등으로 차질 없이 개선할 필요
- ③ 소득보전직불금 등 “쌀농업 지원 사업군”은 쌀 공급과잉 초래와 그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직불금 증가 등 재정소요를 유발한 것으로 평가
 - ☞ 직불금 지원액이 당해 연도 생산량에 연계되지 않는 생산 중립적인 직불제 도입, 쌀에서 다른 작물로 전환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 필요

〈2011년 제1차 심층평가 추진계획 관련〉

- 아울러, 올해는 1차로 “대학경쟁력 강화 사업군” 등 3개 사업군에 대해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 이러한 3개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

심을 당부함

■ '11년 제1차 심층평가 대상사업 선정사유

- ① “대학경쟁력 강화 사업군”은 지속적인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여전히 미흡할 뿐만 아니라, 대학간 자발적인 경쟁 및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 제기
- ②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군”의 경우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으나, 유통비용은 소비자가격의 절반에 가깝고,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 급등락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제도개선 필요
- ③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군”은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등 결혼이민자의 초기 사회적 지원에 편중되어 가족해체 등 최근 대두되는 사회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문제점 제기

※ '11년 제1차 심층평가 추진계획은 세부내용 확정 후 별도 보도 자료 배포 예정

〈장기재정전망 추진방안 관련〉

- 박재완 장관은 세계에서 유례 없이 빠른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진전은 미래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가장 큰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언급

* '00년 고령화사회(노인비율 7% 이상)에서 '18년 고령사회(14% 이상), '26년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할 전망(06. 11월, 통계청)

- EU, OECD 등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정부 차원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공표 중인 반면,
- 우리나라는 연금 등 각 관리기관별로만 장기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정부 전체 재정 관점에서 종합·분석하는 시스템은 부재
 - 현재,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는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

-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장기재정전망의 현황·문제점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장기재정전망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 오늘 논의 내용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 장기재정전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 종합전망의 전제·방법 등에 맞추어 기관별 전망 전제·시기 등 일치화 추진 및 전망결과를 공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므로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함

참고 1 주요 재정사업 지출효율화 방안

①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사업

- **(사업개요)**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에 대한 정부 출자를 통해 중소·벤처 기업 및 벤처캐피탈 산업 육성

* '11년말 약 1,3조원 조성('11예산 805억원, 4,8조원의 투자 자원(민간+공공) 마련(승수효과 3.7)

- **(평가결과)** 민간 주도의 벤처시장 활성화 효과 및 시장실패 보완기능 등이 미흡하고, 他 공적 투자자금과 유사·중복 가능성 존재

- 벤처투자 어려움 확대, 자금의 신규 유입·회수 장벽 등에 따른 민간 자금 유입 위축으로 벤처시장의 모태펀드 의존도 심화

* 벤처투자가능 자금(억원, '10년말): (전체조합) 27,042, (모태투자조합) 17,316

- 공적투자기관의 자금 조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기관간 역할분담 부재로 투자자금간 유사·중복 및 투자 쏠림 현상 발생
-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신규투자 비중 감소 등 시장실패 보완 미흡

* 모태펀드 투자조합의 신규 벤처기업 투자 중 창업초기 비중(%) : (05) 32.0 → (07) 34.3 → (09) 25.0 → (10) 28.7

- 정기출자 중심의 투자조합 결성 등 사업 추진체계의 비효율성 등으로 사업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
- **(지출효율화)** 재정지원 최소화 및 민간 중심 벤처 활성화 등 추진
 - 벤처캐피탈 시장의 투자여력, 모태펀드 기 투자분에 대한 회수자금 증가 등을 고려, 모태펀드에 대한 추가 재정투입 지양
 - 회수시장 활성화 등으로 민간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 유도
 - 벤처시장의 다양한 공적투자기관간 역할 분담 및 연계 강화
 - * 정부재정 투입 자금(모태펀드 등)은 시장실패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민간자금 조달 기관(정책금융공사 등)은 성장·회수단계 벤처에 집중 투자
 -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모태펀드의 재원배분 비율 확대 등 추진
 - 투자조합 선정시 수시출자 확대 등 모태펀드 운영체제 개선

2 대외 무상원조(KOICA) 사업

- **(사업개요)**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무상원조사업으로, 전체 개발원조사업(ODA)의 31.7%(10년)를 차지
 - * '11년 KOICA 예산은 4,954억원이며, ODA 확대계획('15년: GNI 대비 0.25%)에 따라 향후 대폭 증가 예상
- **(평가결과)** 수원국의 원조 만족도가 높고, 그동안 많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 ※ 동 평가는 기본적으로 '09년까지의 KOICA 원조사업 실적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 국가별 원조재원 배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원조사업간(유·무상간, 무상간) 연계·조정 미흡
 - 사업 준비 기간이 짧고,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

관리 미흡 등 사전기획 및 사후관리 체제 미흡

- KOICA에서도 국제기구에 일반기여금*을 출연하고, UN자원봉사단(UNV)을 파견하는 등 외교부와 예산 및 역할 중복
 - * 일반기여금(다자원조): 특정 사업을 지정하지 않고 국제기구에 자금 지원(지정기여금(양자원조): 특정 수원국 또는 사업을 지정하여 국제기구에 자금 지원)
- UNV 자격 제한*, 단순 행정용 물자 원조 등 국제관행과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 존재
 - * KOICA는 UNV 선발인원의 50%를 KOICA의 귀국해외봉사단원 중에서 선발
- **(지출효율화)** 유·무상 등 원조기관간 협의·조정 강화, 성과 중심의 원조시스템 구축,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원조 등 추진
 - 원조재원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KOICA 이사회 참여부처 확대, 관계기관 협의체 활성화 등을 통해 원조사업간 연계 강화
 - 사전타당성조사를 내실화하고, 종료평가·사후평가 및 환류시스템 운용을 보다 강화
 - 외교부와 KOICA간 국제기구 기여금 출연업무를 명확히 분담*하고, UNV 지원사업은 외교부로 일원화
 - * 외교부는 일반기여금 위주로 운용하고, KOICA는 지정기여금으로만 운용
 - UNV 지원자격 제한 폐지, 단순 행정성 소규모원조 지양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원조 수행

참고 2 장기재정전망 추진방안

- **(장기재정전망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모습이나 잠재성장률 저하, 저출산·고령화 진전 등에 따라 건전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
 - * 국내외 연구기관 등에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경고하는 장기전망결과를 제시하고 있

나, 전망의 전제·결과 등의 차이 등으로 전망 결과 일관성 부족, 불필요한 혼란 등 초래

■ **(현황 및 문제점)** 연금·의료 분야는 소관기관에서 장기재정계산을 실시중이나, 정부 차원의 종합 전망은 미실시

- 그러나, 기관별 전망의 전제·방법·시기 등이 상이하고, 국민연금 외 타 분야는 재정계산결과 공개에도 소극적
- 이에 따라, 각 기관의 분야별 전망을 토대로 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장기재정전망도 실시 곤란

* EU, OECD 등 대부분 선진국은 정부 차원에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공표

■ **(장기재정전망 및 시사점)**

- (전망대상) 인구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4대공적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7개 분야
- (전망방법) 4대 공적연금의 기존 전망결과와 EU 방법 등에 따라 별도 추계(조세연)한 건강보험 등의 전망결과 종합
- (전망결과) 현행 연금·의료 등 제도 유지*시에도 고령화에 따른 지출증가로 '50년 국가채무비율이 137.7%까지 상승하는 등 장기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

* (전망의 전제) 7개 분야의 제도는 '50년까지 현행 유지, 7개 외 기타분야 지출비중(對GDP, '11년 20.8%) 및 조세부담률('09년 19.7%)은 현행 수준 유지

** 7개 분야 지출(對 GDP) : '10년 6.0 → '50년 17.8%, 국가채무(對 GDP) : '10년 33.5 → '50년 137.7%

■ **(장기재정전망 추진방안)**

- EU 방법 등을 참고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장기재정전망 추진체계 구축
-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거시지표 등 전망 전제에 대

한 통일적 전망지침 제공

- 지침에 따라 각 연금관리기관이 실시한 공적연금 전망결과와 협의회 등에서 실시한 기타분야 전망결과를 종합하여 공표

* 정부의 종합전망은 현행제도 유지시의 기준선 전망(Baseline)을 제공하고, 각 부처·기관 등은 이를 토대로 신규제도·정책의 재정효과 분석에 활용

- 전망의 실효성 확보 및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협의회 구성·운영 등 법적 근거 마련
- 새로운 장기전망 추진체계에 맞추어 기관별 전망전제·시기 일치화 및 전망결과의 공개 의무화

■ **(추진일정)** '12년 상반기부터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13년 하반기 정부 차원의 장기재정전망 결과 공표 추진

* 장기재정전망 실시근거, 전망결과의 공개 의무화 등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추진('11년 하반기)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 본 자료는 2011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에서 발표한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I. 하반기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 글로벌 위기의 성공적 극복 등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민 체감경기 개선, 경제 취약요인과 부문간 격차 완화, 미래를 위한 정책성과의 가시화 등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
- 물가·일자리·내수·사회안전망 등 일반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의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 생활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 대외 충격에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구조적 노력도 꾸준히 추진
 - ☞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선진일류경제 도약의 기틀을 마련
- 이러한 정책기조하에 아래 4개 부문의 중점 정책 과제 추진
 - ① 물가 안정
 - ② 일자리 창출 및 내수 기반 강화
 - ③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
 - ④ 경제체질 개선과 지속성장

- 현장 소통과 부처간 팀워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여 정책효과를 가시화
- 당면한 현재의 경제 여건뿐 아니라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정책신뢰 확보

II.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1 물가 안정

◇ 물가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시장친화적 물가대응과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추진

1 거시정책의 안정 운용

- 확고한 물가안정 기반 위에 고용 및 경기회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
- 현재의 예산 규모하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는 등 다소 긴축적인 재정기조* 견지
 - * 재정수지(GDP 대비, %): (08년)△1.5 (09년)△4.1 (10년)△1.1 (11년)△2.0
 - '12년 예산 편성시에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책정하는 등 재정건전화 노력

지속

- 시중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물가불안의 구조화 차단
- 환율은 대외불안요인 등에 따른 급변동을 완화하되, 외환수급과 경제 펀더멘탈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운영

2 시장친화적 물가대응

- **(농수산물 수급안정)** 수급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안정 노력을 집중하면서 직거래 활성화 등 구조적 대책 추진
 - 고랭지·가을배추 계약재배를 평년 생산량의 20%로 확대*하는 등 배추 수급과 가격의 불안정성 완화를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 * 고랭지배추: (10년) 3.8만톤, 평년 생산량의 15% → (11) 5.0만톤, 20% 가을 배추: (10년) 3.9만톤, 평년 생산량의 3% → (11) 27.0만톤, 20%
 - 수요자-공급자간 직접 계약재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개형 계약재배*' 도입
 -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요자 - 공급자간 계약대금 정산, 분쟁조정 등 중개 역할 담당(하반기 중 고랭지·겨울배추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하여 과실의 조기출하 지도를 강화하고 고등어·오징어 등 어획이 부진한 수산물의 수입 확대*
 - * 고등어 할당관세(2만톤) 운용 및 오징어 비축(807톤) 추진
 - 농수산물 직거래 사이트 통합 홈페이지 구축(8월), 생산지 인근 도시에 직거래 장터 설치 확대* 등으로 직거래를 활성화
 - * 부산(6. 18일 개장) 등 8개 자치단체에 농업인 정례 직거래 장터 개장 추진(9월)
- **(시장경쟁 확산)** 독과점 산업의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제재 강화
-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시장분석의 객관성 제고,

경쟁촉진 방안에 대한 부처협의 강화 등으로 시장별 경쟁정책보고서*의 실효성 제고

-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2개 독과점 산업을 대상으로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08년 이후 시행)
- * 영국의 경우 경쟁정책보고서를 토대로 공정거래청과 소관부처에서 시장 개선조치 및 사후평가 실시
- 경쟁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고, 상습 위반업체 고발 확대 등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포함한 제도개선 추진
- 석유·통신 T/F에서 마련된 구조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실질적인 가격인하 유도
 - * (석유T/F)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시장 개설(금년중), 석유수입업 비축 의무(내수판매량의 30일분) 폐지, 국내유가에보제 실시 등
 - * (통신T/F) 망임대사업자(MVNO) 활성화, 선택요금제, 선불요금제 활성화, 이동사에서 구매하지 않은 단말기도 개통이 가능하도록 단말기 식별번호 관리제도 개선 등
- **(관세개편)** 독과점 품목, 서민밀집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율 수준을 재평가하여 기본관세율 체계 조정
- 최근 가격이 크게 인상되었거나 인상 압력이 높은 품목, 국제가격보다 비싼 품목, 원자재 등을 중심으로 할당관세를 탄력 운용
 - 할당관세 품목을 상반기 108개에서 하반기 111개로 확대하고 원자재 가격추이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할당관세 추가 인하
-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 유통구조와 가격인하 효과를 분석하고, 수입추천제도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관련부처,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하반기 중 추진
- **(유통구조 개선)** 수급안정 및 비용절감을 위해 유통구조를 선진화하고 재활용품 시장 등을 활성화
- 소비자 인식 및 가격표시 실태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오픈 프라이스 확대에 따른 제도정착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

- 온라인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방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에 대한 감독 강화
 - * 청약철회, 표시·광고 등과 관련한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 점검
- 소비자단체를 활용하여 프리미엄상품, 리뉴얼상품 등에 대한 상품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유도
- 지역단위 재활용센터* 설립을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
 - * 현행 자원재활용촉진법상 자치단체는 1개소 이상 재활용센터 설치 의무
 - 재활용센터를 활용하여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중고물품의 재활용 활성화 유도
 - * 현재는 청소대행자 위탁수거 방식으로 재사용보다는 단순파쇄 위주로 폐기물 처리
 -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대상 확대, A/S 강화 등을 통해 저가상품 시장 및 거래를 활성화
 - * 중고품 분해·수리 등을 거쳐 신제품 수준으로 재상품화(신제품 대비 40~60% 가격)

③ 공공요금 안정

- **(공공요금 안정기조 견지)** 에너지 절약, 누적적자 시정을 위해 불가피한 요금을 중심으로 조정하되, 물가와 서민부담을 고려하여 인상 수준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
- 비용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공기업 원가 절감 계획 및 실적을 공개하고 원가절감 성과를 요금조정과 연계
- 에너지 관련요금은 에너지 절약 필요성, 누적적자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되 저소득층 지원방안 마련
- 원가보상 수준이 특히 낮은 일부 요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인상을 최소화하고 그 밖의 요금

은 동결

- 지방공공요금은 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지역별·품목별 인상시기를 분산하고
 -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치 범위 내에서 평균 인상폭이 조정되도록 '지방공공요금 가이드라인' 마련(6월말)
- **(차등요금제)** 에너지 절약 유도, 피크 수요 분산을 통한 공공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차등요금제 도입
 - 도로통행료 등 요금을 시간대별, 주중·주말에 따라 차등화
 - * 현행 도로통행료 할인제도: (출·퇴근시간 할인) 20~50%, (대형화물차 심야할인) 20%
 - 겨울철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동계 전력요금을 인상하고 선택형 피크요금제* 도입
 - * 희망고객에 대해 피크발생일·시간대에는 기존보다 높은 요금, 나머지 일자·시간대에는 낮은 요금을 부과

④ 부동산 및 전월세 시장 안정

- **(주택거래 활성화)** 투기억제 중심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공급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현행 1~5년)을 완화(1~3년, 투기과열지구 제외)
- 노후주택 정비 및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뉴타운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추진
- **(전월세 시장 안정)**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재정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촉진
 -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 배제
 - * 149㎡ 이하 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세 증과배

제 등

- 단기간 내에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LH공사 등)를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기준단가 상향 등)
- 1인 가구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원룸 등 소형 주택 건설자금 지원 대상 등 확대
- 보금자리 주택은 공급계획 총량(150만호)을 유지하면서 연도별 물량을 탄력 조정하되, 서민 수요가 많은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

* 분양주택 중 소형주택(60㎡ 이하) 공급 비중: (현행) 20% → (조정) 70%

- **(취약계층 주거지원)** 총 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
- 저소득층의 소득수준별 국민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방안 검토*
 - *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마련
- 부처별로 분산·중복 시행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개보수 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지원의 효율성 제고
 - * 취약계층 자기주택 개보수 사업(국토부),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복지부)

5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 **(보육)** 우수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서비스 질 개선
 - * '11년 하반기중 9백개소 지정 (1개소당 월 300만원 수준의 운영비 지원)
- 빈 교실, 근린공원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확충
 - * 빈 교실 리모델링시 1개소당 3억원(일반시설은 15억~20억원) 소요 (인천시)
- '엄마표 온종일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야간 돌봄인력 지속 확충

* 저소득층·맞벌이가구 자녀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오전 6시 반~오후 10시)

- **(교육)** 만 5세아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화된 교육·보육 공통 과정을 도입하고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
 - * (11년) 소득하위 70%, 교육·보육비 월 17.7만원 → (12년) 전 계층, 월 20만원
- 대학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자구 노력을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되, 학생부담 경감, 재정의 지속가능성, 대학경쟁력 강화 등을 종합 고려하고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법 모색
- **(의료)** 환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확대*하고 약국 수가를 합리화**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
 - * 종합병원 이상의 필수 진료과목에 대해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 의무 배치 등
 - ** 만성질환자 등 7일 이상 장기치방 환자의 부담 경감 등
- 당뇨·골다공증 치료제, 최신 암수술 기법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 경감
 - * 당뇨치료제 및 당뇨관리 소모품 급여(7월),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10월) 등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12. 4월)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의료 사고 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방안 마련
- **(세제·금융)** 금년 말 일몰 예정인 서민 세제지원 제도*를 연장하고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7월, 44 → 39%) 등을 통해 서민 금융부담 완화
 - *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제도 등

2 일자리 창출 및 내수 기반 강화

- ◇ 정책·제도를 고용유인형으로 개편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 미스매치 해소 추진
- ◇ 서비스업, 중소기업 등 내수산업 기반을 강화

1 고용유인형 제도개편

- **(세제)** 고용창출 유인 강화를 위해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 중소기업이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을 추가로 채용하는 데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업무 분야를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분야로 확대
 - * 현재 일반 연구개발비용의 3~6%(중소기업 25%),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용의 20%(중소기업 3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금융)**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대출시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 수수료 인하 등 신용보증 지원 강화
 - 정책금융공사 간접대출*(On-lending) 지원시 일반 중소기업 배정 금액 일부를 전환하여 고용창출 우수기업 대출 한도를 별도 설정
 - * 정책금융공사가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은 공급된 자금을 바탕으로 자기책임하에 지원 대상기업을 선별하여 대출
- **(재정·조달)** 평가모델 개발, 전문연구기관 참여 확대 등 고용 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고용과 예산의 연계 강화
 - * 평가 전담기관 지정·운영, 평가결과의 활용 및 사후점검 강화 등
 - 조달 적격업체 선정 평가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등 고용 유인형 조달 시스템 구축

* 적격심사 항목에 시공경험·납품실적, 기술능력 이외에 '고용창출 실적' 신설

2 분야별 일자리 창출 대책

- **(청년·여성 고용)**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시범도입('12년)을 위한 훈련 과정 평가기준 마련 등 '청년 내일만들기'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기관별 목표 및 실천계획 수립(8월)
 - * 지역인재 채용이 부진한 49개 기관(평균 13.6%)의 채용률을 '13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연도별 계획 마련
 - 공공기관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등 채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고교 졸업생의 취업기회 확대
 - * 기업은행은 창구전담직으로 특성화고 출신을 채용하였고, 한국전력·동서발전 등은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배전전기원 등으로 채용
 - 직장보육시설 확충 등 일·가정 양립을 지속 추진하고, 경력단절·고학력·농촌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창업 활성화)** 창업 및 재도전 촉진 등으로 창업생태계의 활력을 높이고 청년·기술·지식창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 대덕특구 내 '기술창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벤처 창업을 위한 휴직·겸직 특례대상 확대* 등으로 고급 연구인력의 기술창업 촉진
 - * (현행)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 (개선) 정부출연연, 전문생 산연구소 등 추가
 -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설('12년) 등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매칭형 벤처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의 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 엔젤투자자분 의무보유기간 완화(5년 → 3년), 엔젤투자자와 유망 기업을 연계해 주는 엔젤정보망 구축 등으로 창업투자 활성화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장애인 활동보조인 확대('10년 1.9만 → '11년 3.2만) 등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역할 지속
 - 간병인 업무범위 규정, 질환 정도에 따른 다양한 간병모델(1대1~1대6 간병 등) 개발 등으로 간병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 사회적 기업에 대해 특별보증제도 신설(지역신보), 공공기관 조달 및 정부 공공서비스 참여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 단축(연 1회 → 2회), 자율 경영공시제도 도입 등으로 책임성·투명성도 함께 강화
- **(재정일자리아업 효율화)** 취약계층 참여비율을 높이고(70% → 80%), 중앙과 자치단체의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
 -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훈련 지원을 내일배움카드제(실직자 대상)로 통합*(7월)하여 취업·실직이 반복되더라도 연속성 있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 * 연간 지원한도 확대: (능력개발카드제) 100만원 → (내일배움카드제) 200만원
 - 중소기업 청년인턴 수혜인원 확대, 취업지원금 상향조정 등 청년인턴제 개선 추진

③ 노동시장 인프라 개선

- **(노사관계 선진화)**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복수노조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여 선진 노사문화 정착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현장 컨설팅, 노동위원회의 기능 보강* 등으로 복수노조 제도의 원활한 시행 지원
 - * 교섭창구단일화 이의신청 처리,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의 무 위반 시정 등
 - 근로시간 면제제도 이행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 조치

- **(비정규직 등 근로개선)** 사내하도급, 시간제 근로자 및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강화
 - 사내하도급의 적정운영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사업주의 의무·노력사항 등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정
 - * (원청 의무) 원청 귀책의 임금체불시 연대책임, 산재 위험장소 안전조치 등
 - * (하청 의무) 사회보험 가입, 근로조건 서면 명시 등
 -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차별시정 신청기간 확대, 근로감독관에 대한 차별시정 지도권한 부여 등 제도 개선
 -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을 위해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1. 하)
 - * 임금과 근로조건 시간비례 원칙,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등 규정
 - 공공기관 인사·보수규정에 임금·휴일·복리후생 등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 최저임금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6~8월)하고, 근로 시간 특례업종*을 합리적으로 축소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제한(주 12시간 이내)의 적용이 배제되는 운수업, 물품판매업 등 12개 업종
 - 영세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쿠파서비스·택배기사·간병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12년) 추진
 -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9~10월중, 1천개소)하는 등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 **(인력 미스매치 해소)** 산업수요에 부응하여 맞춤형 형태로 인력 양성
 - 폴리텍대학 전공심화과정 개설, 한국기술교육대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도입 등 신성장동력 분야 기술인력 양성 강화

* 정규학기 및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기업체에서 6개월 이상 현장실습 수행

•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가 연계된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하여 운영을 활성화

* 특성화고(실습/기본교육)와 전문대(이론/심화교육)가 협약을 통해 교육 과정을 연계(5년)하여 체계적으로 인력 양성

• 고교생 진로 전환과 조기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을 목적으로 위탁 직업교육을 받는 일반고교생에 대해 수업료 등 지원 검토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 (예시) 현장교육 비용에 대해 R&D 세액공제 수준의 혜택 부여

4 내수기반 강화

■ (서비스산업 선진화) 각 분야의 규제완화 실적을 종합 점검하여 성과 미진과제에 대한 재추진 전략 마련 등 추진동력 제고

• 전문자격 분야 등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시장창출·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

*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법인 도입, 보건·관광·교통 분야 등의 진입규제 개선, 네일·메이크업 등 뷰티서비스 자격 정비 등

• 사회서비스업(돌봄, 아동발달지원 등), 복합 고용서비스 기업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된 서비스산업 활성화 추진

- 사회서비스 시장 성숙화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 「사회서비스 산업 진흥법(가칭)」 제정 추진

■ (중소기업·소상공인) 내수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사업 기회를 확충하여 성장지체 부문의 소득창

출 기반 조성

• 전통시장을 지역상권과 연계하여 개발하고, 전통 시장 등의 제품 구입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대 방안 검토

•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나들가게·골목수퍼 등)하고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 캠페인 및 '기관-1시장' 자매결연 확산 추진

• 중소형 공사계약, 소프트웨어 사업 및 소규모 조달 계약 등 공공 조달시장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 확대
* 중소형 공사에 대해 시공경험 평가 완화·저가심사 간소화, S/W사업 발주시 중소기업 참여비용 평가 의무화 등

• 공공부문의 소모성 자재 공급계약시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방안 검토

• 중소기업 제품 전용 A/S 콜센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 A/S 저변을 단계적으로 확충

• 교통불편에 따른 인력채용 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등에 통근버스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 SNS·소셜 커머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직접 마케팅 역량 강화 (중소기업 전용 상품몰 마련 등)

■ (삶의 방식 전환) 국내 소비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근로·휴가 및 기업 마케팅 행태를 개선

• 주40시간 근무제(7월), 주5일제 수업(2학기 시범사업) 등을 고려하여 여가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강구

* 공공부문 근로시간 조정(9~18시 → 8~17시, 육아·간병부담이 있는 여성 근로자 등에 대한 보완조치 포함) 등도 검토

• 문화접대비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문화상품 수요 확대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일몰기한 연장(11월 → '14월), 최저사용액 기준 인하(총접대비 3% 초과 → 1.5~2% 초과) 등

■ (국내관광 활성화)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해외관광 수요 전환 및 외국인

관광객 유입 유도

- 수학여행·MT 등의 지방개최를 유도하기 위하여 테마별 관광 명소 100곳을 선정·홍보하고 철도요금 할인 등 지원 검토
 - 한류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고 자전거를 활용한 패키지 여행 상품*, 현장체험형 학습관광, 관광상품권 활용 촉진 등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노력 강화
- * 자전거 여행코스 개발 및 판매·대여·수리 등을 제공하는 숙박여행(Bitel: Bicycle+Hotel) 등

3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

◇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고 동반성장 기반 강화

1 일을 통한 복지

- **(탈수급 유인 강화)** 취업·창업을 통해 기초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제공되는 의료·교육 지원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 마련
 - * (현행)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하는 경우에 한해 이행 급여 지원 → (개선)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가 탈수급하는 경우 등도 지원
- 탈수급자에 대해 주거지원, 고용촉진, 자산형성 등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적용을 확대
 - * 임대주택 입주권 유지, 탈수급자 채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행복키움통장 적용,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등
- **(근로장려세제 개선)**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유인 제고와 소득확충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확대
 -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유인 제공 및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08년부터 시행
- 지원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부양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는 수급대상 소득기준 및 최대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

- **(기초수급자 근로 촉진)**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관리를 내실화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근로 인센티브*를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수급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
 - *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얻은 소득은 생계급여 산정시 70%만 소득으로 간주
-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기준을 개선*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우선 연계**
 - * (현행) 주3일 이상 근로자는 자활사업 면제 → (개선) 근로자의 소득신고액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자활사업 회피 방지
 - ** 수급자 여건·특성, 직업능력 평가 등을 반영하여 적용대상 여부 평가

2 복지 사각지대 축소 및 취약계층 지원

-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와 고용유인 제고를 위해 사각지대 축소 노력 지속
- 연구용역·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사업효과,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 **(기초생활 보호)** 기초생보제도의 수급기준을 개선하여 최저 생계비 이하 빈곤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 소외자 지원 강화
- 실질적으로 수급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양의무자 심의기준·절차 개선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마련

- * 현재는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수급필요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 합계액의 130% 미만인 경우 수급 대상
- ** 소득환산을 산정시 금리수준 감안, 생업형 자동차 인정범위 현실화 등

■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등 원천 약자와 복지 소외자 지원 강화

-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이외에 방문목욕·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시행(10월)
-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가속화하고, 기업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 노후 소득보장 강화
 -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신설사업장에 퇴직연금 우선설정의 무화 등
- 거주지 불분명 등으로 인한 복지 소외계층 발굴을 상시화*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 민간복지기관과의 연결 등으로 보호 강화**
 - * 시군구 신고 콜센터를 운영하고 경찰서, 노숙인 센터 등과 긴급연락망 구축
 - **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5~6월)를 통해 1.2만건(2.4만명)을 발굴, 4천건 지원 실시

■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복지직 신규충원, 행정직의 복지직 배치 등을 통해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인력을 확충

- 「복지정보공유시스템」(행안부)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복지부)으로 통합하고 국세청과의 정보연계를 확대

③ 동반성장 기반 구축

- **(공정경쟁 질서 강화)**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선정
-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지원 행위 감시 및 내부거래

공시의무 강화 등으로 기업경영에 대한 시장친화적 견제장치 확충

-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를 위해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6~8월)
 - * 가맹사업법 개정안(10. 7월) 국회계류중: (현행) 연간매출액 5천만원 이상 가맹본부 → (개선) 가맹점주 수 5개 이상 가맹본부 추가
- 원도급자가 건설하도급 대금의 현금지급 또는 선금 지급을 조건으로 공사금액을 삭감하는 사례 등을 부당특약으로 규제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10월)

■ **(동반성장 문화 확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자율적 동반성장 유인 제공

- * (현행) 연구개발,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출연 → (개선)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출연 등 추가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의 지방확산을 위해 '자치단체 동반 성장 추진모델 및 실행방안' 추진(8월)
 - * 동반성장 지역협의체 구성, 하도급 개선, 지역산업 발전 등 검토
- 해외진출 유망 대기업의 영업망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해외에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간 협약체결 추진
 - * '대·중소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대책'을 마련(7월)하여 MOU 체결 추진
- 건설부문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
 - *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 (현행) 내공사 시범사업 → (개선) 도공·수공·철도시설공단 추가

④ 공정성 제고와 사회적 자본 확충

- **(시장경제의 건강성 회복)** 공평과세 강화 등을 통해 경제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
 - 국내외에 재산을 은닉·도피시키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형사고발·출국규제 등 대응을 강화
 - 장기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국세 징수업무의 민간 위탁 추진
- **(나눔문화 확산)** 기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기부금품 모집규제 완화*를 추진하되, 모집단체의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
 - * (현행) 국제구호, 재난구호, 자선사업 등 11개 사업만 모금 허용 → (개선) 정치·종교·영리활동만 모금 금지(네거티브 시스템 전환)
 - 사회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청년·전문직 은퇴자 등으로 구성되는 '대한민국 사회봉사단'(Korea Hands) 시범운영
 - * 하반기 중 경기도·전라남도에서 청년봉사단 500명, 시니어 봉사단 200명 운영(청년봉사단은 6개월 봉사시 인센티브 부여)
- **(재기 지원)**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재창업 활성화 대책' 마련(7월)
 - * 납품수수 등으로 매출처가 확보된 재창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재창업스쿨' 운영, 창업컨설팅·마케팅 등 일괄지원 방안 마련 등
-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검소하고 실용적인 관혼상제 문화 정착을 위해 민간 합동으로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실천 협의회' 운영(7월)

- 공직사회 경조금 지급기준 구체화, 공공시설의 예식장 활용 확대 등 공공부문이 건전문화 선도
- 모범사례 발굴, 가이드북 보급 등 교육·홍보 강화

4 경제체질 개선과 지속성장

◇ 위기 이후 내재되었던 경제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

① 경제 취약요인 개선

- **(가계부채 연착륙)**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대출구조를 개선
 - 시중유동성의 안정적 관리, 일자리 창출 등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제고를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거시경제 환경 조성
 -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및 여신건전성 분류 기준을 강화하여 가계부채 위험관리 및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
 - 상호금융, 신용카드사 등 비은행권 대출의 건전성 관리 강화
 -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을 위해 장기·분할상환·고정금리부 대출에 대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
 - * (현행)1,000만원 → (개선)고정금리·비거차식·분할상환대출 1,500만원, 기타대출 500만원
 - 은행의 장기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장기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매입·유동화(MBS발행) 지원 확대
- **(구조조정 가속화)** 'PF 정상화뱅크'를 활용하여 부동산PF 대출을 정리하고, 저축은행은 자구 노력을 통해 건전화를 유도하되, 정상화 곤란시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통해 신속 정리

- 장기·고액·한계기업에 대한 가산보증료율* 인상 등으로 신용보증을 축소하고 창업기업 등을 집중 지원

* 현재 장기·고액보증 등에 대해 0.1~0.4%p의 가산보증료 부과

-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7~10월)를 통해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속 추진

- **(자금시장 선진화)** 증권사 콜 차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RP·CP시장 등 대체 단기자금시장 활성화

* (11. 4월) 자기자본의 100% → (12. 7월) 자기자본의 25%

- Basel III 등 국제금융규제 개편에 따른 국내외 자금흐름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법령정비 등 적응기반 마련

- **(외환부문 건전성 제고)** 최근의 단기외채 증가에 유의하면서 유럽재정위기 등 대외불안에 따른 자본유출입 급변동 가능성에 대비

- 선물환포지션 제도(10. 9월), 외국인채권투자 과세(11. 1월)를 신속 운용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 시행(11. 8월)을 차질 없이 준비

-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등 주요국의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자본 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

- **(금융감독 혁신)** 금감원 내부 통제제도 강화, 감독제도 및 검사 관행 개선 등을 통해 금융감독·감사에 대한 시장신뢰 회복

*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회사 재취업 규제 강화, 재산등록 대상 확대, 피검기관 방어권 보장 등

② 재정건전성 강화

- **(균형재정 달성)** '13~'14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

- **(재정규율 확립)**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한 사전심의, 장기재정전망 공표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 기반 강화

- 재정수반 정부입법안·정책 등은 원칙적으로 「재정위험관리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관련 현안에 대한 민관 협의기구로 '11. 4월부터 운영

- 장래 재정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연금·의료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공표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 구축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일반정부부채 산출 등 재정통계 개편*

* 7월중 개편안 확정 후 D-Brain 시스템 보완 등 후속조치 추진

* 회계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하고, 정부 포괄범위도 중앙·지방정부에서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공공기관까지 확대

-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9월)하여 자치단체별 재정위험등급을 심의·통보

* 자치단체별 재정위험 수준을 「정상 → 주의 → 심각」으로 등급화하고, '심각' 등급인 경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공표,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지방채 발행 제한 등 재정건전화 조치 시행

- **(공공기관 재무구조 개선)**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재무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재무구조 개선방안 마련

- 사업구조조정, 원가절감 등 자구 노력을 포함한 5개년 단위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시험작성(11월)

-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심사를 확대*하고, 민영화 등 지분매각 촉진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탁하는 방안 추진

* 상반기중 최초로 12개 사업(4.1조원) 예타 수행 → 7월중 내년 대상사업 선정

■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출효율화 및 보험료 부담 합리화 추진

- 행위별 수가 중심의 지불제도를 개선*하여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약기구조**를 경쟁방식으로 개편하여 약제비 부담 완화

* 포괄수가제, 선택의원제 등 다양한 방안 검토

** 최초등재 의약품의 특허만료 후 등재되는 복제약 가격이 등재순서에 따라 낮아지는 구조

- 건강보험 국고지원 종료('11년말)에 대비하여 대안을 마련하되 지원규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

- 고액재산가 등 피부양자 제외대상을 확대하고, 보험료 상환을 인상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 체납정보 금융기관 제공 등 제재*

* 고용·산재보험에서는 기실시 중

③ 성장잠재력 확충

■ (신성장동력 확충)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R&D, 인력, 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

* 3/4분기중 예산·세제지원 차등화 등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 신성장기업의 자금조달 개선을 위해 신성장동력 정책펀드*의 투자촉진 및 기술평가보증 공급 확대** 추진

* 하반기 중 글로벌 공동협력 펀드 등 3개 펀드(총 2,810억원) 조성

** '11~'13년간 총 10조원의 기술평가보증 공급('11년 중 3조원 공급)

-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환경 및 산업기반 조성*, 공공부문 전산망의 클라우드 환경 전환** 등으로 IT 융합 기반 강화

* 클라우드서비스 인증제 도입, 서비스수준 협약 가이드 제정, R&D·표준화 지원 등

**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범정부 클라우드서비스 환경 구축

■ (연구개발투자 효율화) R&D 투자 확대와 함께 성과 제고

- 기초·원천기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개편하고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

* R&D 예산의 기초·원천투자 비중 확대: ('10년) 43.5%→('12년) 50%

** 현재 5개 정부 출연연구소에 '중소기업 협력센터' 시범 설치·운영 중

- R&D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신규 R&D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우수 연구성과에 대한 후속연구 및 사업화 지원 비중 확대(R&D예산 대비 '10년 1.3%→'15년 3.0%)

* 예타 수행기관 일원화(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표준지침 개발 등

- 범부처 차원에서 R&D사업간 유사·중복성을 정밀 분석*하여 사업간 연계·통합, 정부지원 예산 조정 등 추진

* 국과위에서 태양광발전, IT인력양성, 플랜트 등 10대 사업군을 선정하여 분석 중

- 국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을 위한 중장기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 (부품소재 산업 육성) 투자유치·R&D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대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해외 부품 소재 기술/기업 맵(Map)*」을 구축하여 기업유치 등을 추진

* 자동차·전자·기계부품 중심으로 해외 부품소재 관련 주요

기업 및 인력, 상호연관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취합·정리

- 금년 중 만료되는 「부품소재특별조치법」 시한을 10년 연장
- 핵심 소재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R&D 지원을 강화하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 확보 및 국산화를 집중 지원

- **(녹색성장 촉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을 통해 녹색 기술개발 가속화 및 녹색산업 활성화 유도
 -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7월), 대규모 온실 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별 감축목표 설정(9월) 추진
 - 배출권거래제법('11. 4월 국회제출)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배출권 할당계획 등 필수적 제도기반을 차질 없이 준비

- **(인적자원 개발)** 대학경쟁력 제고,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지식기반사회에 부응
 - 대학 재정지원을 취업률 등 성과지표, 산업체 관점 대학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대학교육의 질 제고 유도
 -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여 인적자원 투자 및 생산성 향상 유도
 - 평생학습계좌제 활성화, 시·도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추진 등 평생학습 사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④ 미래 대비

- **(에너지 절약형 구조 전환)** 고유가,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경제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소비절약 유도

- 3대 에너지효율제도* 적용품목 확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1만㎡ 이상)에 대한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 등 에너지 효율 제고

* 에너지 효율등급, 고효율 기자재 인증,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현재 총 85개)

- 에너지절약시설 세제지원 범위 확대*, 자금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으로 산업 부문 효율향상 투자 촉진

* 업계 건의와 부처협의를 거쳐 '12년 세제개편안에 반영(11년 55개 품목)

** 중소기업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용자시 금리 우대

-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그린카드* 제도 도입(7월)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행위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전기·수도·가스 절약, 녹색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에 연간 20만원 수준 적립이 가능한 그린포인트 제공

- **(자원·식량 확보)** 에너지 자주개발률 제고를 위해 유망광구 매입, 기존광구 증산과 UAE 유전개발 후속협상* 등을 차질 없이 추진

* UAE 3개 미개발광구 본계약을 '11. 7월중 추진('13년 조기생산 목표)

- 민간 에너지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참여 촉진을 위해 금융·인력지원 확대*

*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11년 2,900억원)의 민간기업 지원비 중 확대('12년 100% 목표), 특성화대학을 통해 '15년까지 1,500명의 전문인력 양성 등

- 축산관계자의 방역의식 및 책임 강화를 통해 구제역 등 전염성 가축질병에 대한 사전예방 유인 강화

* 백신비용·살처분보상금에 대한 농가·자치단체 부담, 방역 의무 준수 여부에 따른 살처분보상금 금액 기준 구체화 등

- **(인구변화 대응)** 고령인구의 취업기회 확대, 건강관리·자산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100세 시대 대응을 위한 종합방안 마련 추진

5 글로벌 위상 제고 및 경제협력 강화

- **(금년 G20 대비)** 서울 선언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트로이카 의장단으로서 깐느 정상회의 성공 개최 지원
-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등 우리나라가 제안한 의제(Korea Initiative)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 수행
 - * 아시아 지역금융안전망인 CMIM과 IMF간 협력강화 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인프라 개발 분야 고위급 패널회의를 서울에서 개최(10월)
- **(글로벌 통상네트워크 확충)** FTA 확대로 교역·투자 기반을 확충하고 한-EU FTA 발효 등을 계기로 국내 보완대책 강화
 - 미국, 페루 등 旣타결 FTA의 비준 및 협상 중인 FTA(호주·콜롬비아 등)의 조속한 타결 추진
 - 역내 경제통합 진전을 위해 금년 중 한-중 FTA 개시, 한-일 FTA 재개 여부 결정
 - 농수산업 소득보전 직불제 확대*,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기준** 완화 등 피해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
 - * (가격하락요건) 80 → 85%, (보전비율) 80 → 90%, (적용기간) 7→10년
 - ** 현행은 매출액 또는 생산량 25% 이상 감소시 대상기업으로 지원
 - 국내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원산지증명 절차 컨설팅, 해외시장 정보제공 등 지원 확대
- **(경제협력)**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신시장 개척 노력을 강화하고,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실효성 제고 추진
 -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등 ODA와의 연계, 신흥경제권 시장 연구·조사 강화 등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개도국 수요에 부응하여 KSP 지원을 확대하고 사전조사·후속사업 연계·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 사업개선 추진
- 제4차 부산 세계 개발원조 총회(HLIF-4) 개최(11월)로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글로벌 위상 제고

지방세 환급금 정보공유체계 구축으로 체납 징수 강화

- 타 자치단체 지방세환급금 포함, 연간 300억원 체납징수 가능 -

* 본 자료는 2011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에서 발표한 「지방세 환급금 정보공유체계 구축으로 체납 징수 강화」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행정안전부는 2011년 6월 30일부터 ‘지방세정보 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정보를 전 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체납 사각영역을 해소하는 등 지방세 체납징수가 철저히 강화된다”고 말했다.
- 지금까지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금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지방세 체납자 주소지 자치단체내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서만 압류·징수를 하였으나
 - ※ '10년 자치단체내 압류징수 실적 : 214억원
- 6. 30부터 “지방세 환급금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타 자치단체에 체납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되
 - 타 자치단체에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느 자치단체든지 압류 및 징수가 가능하게 된다.
- 그간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수 확충과 공정과세 원칙 아래 지방세 체납·징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 2008년말에 국세청과 국세 환급금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였고, 2009년 10월에는 관세청과 관세

환급금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여

- 2009년부터 2011년 5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던 국세 환급금 4천 334억원과 관세 환급금 5억 9천만원 등 총 4천 340억원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이제, 국세·관세 환급금 정보까지 포함하여 지방세 환급금 정보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자치단체가 공유하는, “지방세·국세·관세 환급금 정보 공유체계”가 완결된 것이다.
- 김현기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방세·국세·관세 환급금 정보공유로 연간 최소 300억원의 지방세 체납징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관리 및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재정통계 |



- 일반회계 일반재정 세입세출 결산규모
- 일반회계 세출 소관별결산액

1. 일반회계 일반재정 세입세출 결산규모

구 분	세입규모	1. 조세	내국세	관세	방위세	교통세	교육세	종합 부동산세	2. 전매납부금	3. 관제수익	4. 부정축재 처리수입	5. 기타 특별회계수입
1948	31	5	5	0					8	5	-	1
1949	92	15	13	2					15	1	-	4
1950	236	43	40	3					16	5	-	14
1951	653	395	350	45					88	20	-	57
1952	1,906	978	831	147					293	35	-	352
1953	5,886	2,096	1,745	351					400	75	-	327
1954	10,450	5,199	4,200	999					585	223	-	-
1955	17,325	11,054	8,808	2,246					1,000	80	-	16
1957	20,007	11,736	9,355	2,381					1,620			13
1958	23,130	14,659	11,690	2,969					2,121			-
1959	26,630	22,086	18,526	3,560					2,270			-
1960	31,693	24,971	19,821	5,150					2,300			-
1961	37,296	23,199	17,892	5,307					2,645			
1962	64,488	28,242	21,497	6,745					4,234	1,244		
1963	49,611	31,078	24,693	6,385					4,832			
1964	51,367	37,421	29,190	8,231					4,530			
1965	69,391	54,634	42,058	12,576					3,598			
1966	115,362	87,646	70,011	17,635					7,500			
1967	160,979	129,241	103,828	25,413					10,000			
1968	242,299	194,288	156,407	37,881					16,400			
1969	352,140	262,823	218,099	44,724					24,250			
1970	422,158	334,723	283,799	50,924					30,100			
1971	530,502	407,683	355,496	52,187					45,372			
1972	695,184	433,446	374,340	59,106					42,900			
1973	697,585	521,492	439,121	82,371	-				57,000			
1974	1,046,386	844,673	717,976	126,697	-				69,000			
1975	1,630,242	1,255,479	1,012,291	181,004	62,184				135,500			
1976	2,378,185	1,914,747	1,370,532	275,512	268,703				178,000			
1977	2,990,844	2,402,682	1,675,179	385,871	341,632				220,000			
1978	4,040,546	3,372,262	2,252,546	646,425	473,291	-			280,000			
1979	5,507,334	4,401,708	3,037,510	732,294	631,904	-			360,000			
1980	6,635,181	5,297,700	3,675,795	766,063	855,842	-			510,000			
1981	8,174,449	6,577,938	4,595,782	890,616	1,091,540	-			680,000			
1982	9,525,922	7,636,435	5,250,666	1,012,564	1,175,335	197,870			760,000			
1983	10,753,349	9,220,719	6,188,425	1,463,202	1,306,032	263,060			830,000			
1984	11,828,884	10,053,724	6,697,373	1,593,959	1,477,565	284,827			846,000			
1985	13,008,894	11,047,427	7,496,925	1,566,125	1,663,233	321,144			829,000			
1986	14,699,339	12,622,319	8,463,984	1,942,560	1,843,368	372,407			984,000			
1987	17,883,898	15,439,376	10,011,971	2,696,464	2,319,603	411,338			904,333			
1988	22,040,762	18,537,147	12,540,239	2,573,562	2,911,063	512,283			947,045			
1989	25,590,915	21,232,564	15,208,394	2,117,581	3,483,157	423,432			1,536			
1990	31,304,595	26,847,430	19,130,226	2,765,371	4,430,570	521,263						
1991	32,928,665	28,209,444	23,510,896	3,435,502	1,263,046							
1992	34,534,059	32,172,078	28,856,011	3,153,190	162,877							
1993	38,583,715	35,866,071	32,858,931	2,885,860	121,280							
1994	44,935,820	42,707,950	36,725,200	3,448,887	76,696	2,457,167						
1995	52,927,958	50,431,491	42,363,391	4,633,211	63,137	3,371,752						
1996	60,275,805	57,058,091	46,910,363	5,309,471	14,288	4,823,969						
1997	65,959,066	60,909,218	49,572,943	5,797,617	-8,464	5,547,122						
1998	74,641,290	58,837,569	48,496,191	3,835,992	1,423	6,503,963						
1999	84,280,642	65,067,034	53,122,432	4,687,298	1,646	7,255,658						
2000	92,602,205	81,984,556	67,784,162	5,799,720	-2,939	8,403,613						
2001	102,008,392	86,418,773	70,210,255	5,923,381	-930	10,286,066						
2002	113,380,045	94,285,819	79,550,499	6,601,292	807	8,133,221						
2003	119,675,515	104,925,725	89,495,724	6,847,339	2,256	8,580,405						
2004	119,646,006	108,170,446	92,680,966	6,796,491	57,119	8,635,870						
2005	136,459,192	122,391,630	101,826,807	6,317,690	-8,551	10,287,765	3,526,592	441,328				
2006	147,866,757	132,675,388	111,470,303	6,858,419	838	9,593,771	3,424,545	1,327,511				
2007	171,172,144	155,390,222	130,240,178	7,410,763	333	11,463,503	3,861,189	2,414,256				
2008	181,585,775	160,719,971	133,725,227	8,775,691	323	11,909,295	4,179,572	2,129,863				
2009	204,947,465	157,928,712	133,706,046	9,169,127	197	10,092,007	3,754,232	1,207,102				
2010	205,233,544	170,938,679	140,627,854	10,666,286	483	13,970,115	4,645,009	1,028,932				

재정통계

(단위: 백만원)

6. 집수입	7. 산업 부흥국채	8. 예탁금수입	9. 국공채 및 차입금	10. 외국원조	11. 부정축재	12.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13. 세외수입	14. 예탁금 및 이자수입	15. 재정차관 예탁금	16. 예탁금	17. 차관수입	18. 파월자수 수입
2	-	-	10									
3	-	-	54									
5	-	-	153									
53	-	-	40									
128	-	-	120									
265	500	-	2,223									
495	1,294	-	2,654									
1,846	1,961	-	1,368									
1,201	2,964		2,473									
1,471	849		4,030									
924	210		1,140									
2,430	191		1,801									
	2,984		1,300	-	334	1,800	5,034	-	-			
	17,038		3,565		1,595	645	6,834	1,091	-			
	1,434		1,762	793	1,470	112	6,803	1,327	-			
	-		-	-	1,546	114	5,938	1,818	-			
	-		-	-	1,457	-	7,426	2,276	-			
	-		-	-	-	-	11,016	6,077	3,123			
			-				12,467	4,244	5,027			
			-				18,678	7,933	5,000			
			-				20,265	12,275	32,527			
			-				21,739	6,996	28,600			
			-				26,391	7,366	43,690			
			95,000				23,658	11,440	88,740			
			5,000				55,842			53,300	2,083	2,868
			45,702				52,647			30,081	4,283	-
			20,773				92,800			112,680	13,010	-
			6,000				151,980			81,460	45,998	-
			-				270,398			23,126	74,638	-
			-				298,568			7,500	82,216	-
			-				646,763			8,299	90,564	-
			100,000				638,334			3	89,144	-
			411,400				427,423			2	77,686	-
			350,000				660,652			25,600	93,235	-
			30,000				604,246			11,578	56,806	-
			-				886,676			-	42,484	-
			-				1,076,496			-	55,971	-
			-				1,020,125			-	72,895	-
			-				1,456,975			-	83,214	-
			3				2,504,895				51,672	-
			1				4,331,462				25,352	-
			-				4,384,309				72,856	-
			-				4,635,297				83,924	-
			-				2,285,302				76,679	-
			-				2,651,162				66,482	-
			-				2,183,376				44,494	-
			-				2,447,876				48,591	-
			-				3,128,971				88,743	-
			560,720				4,420,594				68,534	-
			264,680				15,456,267				82,774	-
			3,300,920				15,868,958				43,731	-
			39,846				10,563,831				13,971	-
			3,712,903				11,875,396				1,320	-
			6,740,258				12,353,396				572	-
			1,349,420				13,399,828				542	-
			586,278				10,889,282				0	-
			120,270				13,947,292				0	-
			769,944				14,421,425					-
			101,182				15,680,739					-
			70,576				20,795,228					-
			62,205				46,956,548					-
			130,922				34,153,943					-

1. 일반회계 일반재정 세입세출 결산규모 <계속>

구 분	19. 외국원조	20. 대총자금	21. 파월경비 지수	세출규모	1. 일반 공공행정	2. 공공질서 및 안전	3. 통일, 외교	4. 국방	5. 교육	6. 문화 및 관광	7. 환경	8. 사회복지
1948	-			30								
1949	0			91								
1950	13			243								
1951	-			618								
1952	307			2,150								
1953	796			6,069								
1954	4,470			14,204								
1955	15,054			28,144								
1957	22,451			35,003								
1958	24,580			41,097								
1959	18,910			40,023								
1960	16,763			41,995								
1961		24,058	-	56,878								
1962		28,726	-	88,239								
1963		26,312	-	72,656								
1964		28,020	-	74,920								
1965		36,090	-	93,134								
1966		38,415	-	140,395								
1967		35,238	2,801	180,382								
1968		30,655	2,763	261,414								
1969		21,868	2,033	369,881								
1970		17,696	6,002	440,699								
1971		12,189	8,760	545,688								
1972		4,399	7,300	700,643								
1973				653,350								
1974				1,009,632								
1975				1,528,277								
1976				2,127,043								
1977				2,739,935								
1978				3,538,675								
1979				5,053,242								
1980				6,486,054								
1981				7,907,837								
1982				9,178,908								
1983				10,180,764								
1984				11,072,062								
1985				12,409,393								
1986				13,796,462								
1987				15,794,454								
1988				18,025,000								
1989				21,653,120								
1990				27,436,744								
1991				31,283,510								
1992				33,362,459								
1993				37,268,004								
1994				42,794,678								
1995				51,498,089								
1996				58,480,817								
1997				63,962,100								
1998				73,225,982								
1999				80,509,887								
2000				87,464,491								
2001				98,668,535								
2002				108,918,281								
2003				117,222,909								
2004				118,236,238								
2005				134,207,676								
2006				144,836,014	32,063,224	9,984,790	1,679,080	22,580,412	28,456,766	1,286,112	1,699,119	12,857,896
2007				154,330,868	33,074,406	10,422,680	1,756,507	24,017,792	30,395,130	1,285,524	1,776,953	15,350,591
2008				175,469,505	37,025,840	10,736,068	2,035,533	26,769,727	35,764,625	1,449,120	1,948,572	18,282,570
2009				199,875,979	41,815,072	11,240,114	1,568,391	29,139,575	36,655,770	1,587,891	2,928,014	22,867,161
2010				197,137,094	43,203,434	11,937,793	1,807,475	29,247,654	37,420,396	1,656,853	2,736,560	22,486,257

1. 일반회계 일반재정 세입세출 결산규모 <계속>

(단위: 백만원)

구 분	4. 국방비	5. 공익사업비	6. 사회적경비	7. 경제적경비	8. 지방재정 교부금	9. 채무상환 및 기타	10. 일반경비	11. 투융자	12. 사회개발	13. 경제개발	14. 교육비	15. 방위비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7	11,246	1,050	4,578	10,976	1,353	1,509						
1958	12,732	797	5,320	13,958	1,817	1,374						
1959	13,919	1,033	7,675	9,327	2,447	1,022						
1960	14,707	995	8,613	8,365	2,187	1,050						
1961	16,599						23,314	16,965				
1962	20,474						43,868	23,897				
1963	20,479						31,844	20,333				
1964	24,926						33,312	16,682				
1965	29,874						41,815	21,445				
1966	40,542						59,169	40,684				
1967	49,553						84,721	46,108				
1968	64,708						116,404	80,302				
1969	84,382						153,843	131,656				
1970	102,335						189,798	148,566				
1971	134,738						233,600	177,350				
1972	173,909						286,543	240,191				
1973	183,469				71,920	21,571			149,327	143,480		
1974	296,846				81,400	109,503			203,389	207,658		
1975	442,437				117,670	95,099			297,478	402,305		
1976	703,752				151,448	79,895			438,641	531,426		
1977	949,623				183,411	101,431			580,550	623,383		
1978					246,907	108,347			791,540	725,067	-	1,307,596
1979					336,310	138,439			1,145,054	1,405,352	-	1,556,229
1980					410,000	176,462			1,564,542	1,397,440	-	2,308,437
1981					520,000	381,505			1,934,070	1,493,743	-	2,675,500
1982					700,905	215,194			569,828	1,607,817	1,909,067	3,171,235
1983					858,787	296,585			663,669	1,752,640	2,150,011	3,357,473
1984					1,019,950	369,715			706,202	2,081,828	2,265,393	3,510,099
1985					1,008,494	505,358			843,305	2,499,542	2,496,140	3,802,457
1986					1,295,903	311,147			1,087,285	2,620,136	2,766,011	4,327,805
1987					1,609,639	319,419			1,298,060	3,070,716	3,125,648	4,801,013
1988					1,720,822	1,240,147			1,410,348	2,628,991	3,692,875	5,540,028
1989					2,186,915	1,567,188			1,937,422	3,228,897	4,336,102	6,165,331
1990					2,764,654	3,110,034			2,450,283	3,867,732	5,586,021	6,856,192
1991					3,452,403	2,505,595			3,179,234	5,136,284	5,549,376	7,961,013
1992					3,927,749	726,323			3,234,967	6,211,539	6,462,736	8,624,959
1993					4,367,529	778,043			3,416,558	7,696,036	7,397,248	9,158,170
1994					4,770,125	1,159,762			3,859,541	9,875,261	8,241,342	10,127,910
1995					5,484,226	3,785,148			4,163,156	11,506,945	9,738,027	11,367,637
1996					6,377,734	3,701,914			5,021,080	13,122,903	11,029,826	12,944,951
1997					6,798,732	2,439,808			5,899,254	16,281,404	12,067,851	13,653,221
1998					7,039,226	3,194,155			7,204,020	22,190,889	12,130,975	14,161,956
1999					6,710,770	7,954,872			9,200,348	23,498,961	11,417,942	13,915,462
2000					8,266,546	8,371,053			10,599,647	23,879,288	12,704,309	15,479,216
2001					12,288,991	4,050,414			13,606,055	25,493,010	17,868,588	16,171,267
2002					12,259,425	4,551,507			13,846,376	31,995,767	18,726,285	17,400,132
2003					14,802,209	2,655,190			15,331,704	32,499,345	20,749,658	18,491,391
2004					14,389,254	2,497,420			16,579,986	30,752,853	22,112,749	19,995,120
2005					20,017,486	3,858,521			17,897,232	28,248,832	27,466,891	21,975,932
2006												
2007												
2008												
2009												
2010												

- 주: 1. 1948~50년도 일반회계, 1951~76년도 일반재정, 1977년부터 일반회계
 2. < > 내는 전원 단위
 3. 1948~55년도 관재수입은 전매사업특별회계전입금을 제외한 관업 및 관유재산수입
 4. 관세에는 순세포함
 5. 1973~76년도 세출규모에는 현물, 용역차관금액이 제외되어 있어 경제기획원 예산개요(1977~78)와는 차이가 있음
 6. 1980년 이전까지 국방비로 분류되었던 기타 방위비(전경 및 해경)와 경제개발로 분류되었던 재정용자지수(자금관리특별회계 예수금 상환)가 1981년도에
 는 각각 일반행정과 채무상환 및 기타로 분류됨
 7. '97년도부터 '국공채'와 '차입금' 항목이 '국공채 및 차입금' 항목으로 통합됨
 8. '97년도부터 '기타' 항목이 '채무상환 및 기타' 항목으로 바뀜
 9. 세출규모는 2006년 대폭 개편으로 통계의 일관성을 가져오지 못하였으므로, 회색부분을 과거자료로 처리하고 신분류의 편제에 의해 통계를 수록함. 단,
 신분류는 항목별 세분화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연구자에 따라 자료를 재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자료: 재무부, 『대한민국정부결산관계통계자료』, 제1집, 1961.
 _____, 『재정금융의 회고』, 1958, 8, 15
 재정경제부, 『결산개요』, 각 년도
 기획재정부, 『결산개요-통계편』, 2010

2. 일반회계 세출 소관별결산액

구 분	감사원	감재원	감재위원회	감찰위원회	건설부	건설교통부	경제과학 심의회의	경제기획원	경찰청	고시원	고시원사무국	고시위원회	공동 경제위원회
1948			<162> ¹⁾									<64>	-
1949			<323>									<122>	-
1950			<404>									<114>	-
1951			<727>									<371>	-
1952			3									2	-
1953 ²⁾			17									5	7
1954		20								7	1,985		
1955		-								-	423		
1957		-								-	288		
1958		-								-	400		
1959		-								-	605		
1960		-								-	6,256		
1961	-			19	-			231					
1962	-			30	1,782			4,874					
1963	56			8	427			9,607					
1964	81			-	369			6,957					
1965	103			-	694			12,191					
1966	147				791		23	28,020					
1967	165				503		24	38,204					
1968	213				789		44	73,557					
1969	271				1,421		56	104,856					
1970	383				1,251		52	124,821					
1971	440				1,505		81	138,723					
1972	511				2,946		102	160,346					
1973	841				1,790		82	114,077					
1974	975				4,972		141	257,420					
1975	1,203				4,641		165	419,933					
1976	1,589				5,351		185	580,081					
1977	22,358				191,839		244	117,780					
1978	2,738				247,758		299	57,143					
1979	3,406				317,589		496	67,688					
1980	4,265				389,620		476	108,373					
1981	5,535				428,895		455	164,306					
1982	6,752				564,754			126,489					
1983	7,065				681,620			127,547					
1984	7,365				599,000			134,694					
1985	7,916				830,530			142,580					
1986	8,868				1,030,889			154,418					
1987	9,886				1,179,574			195,027					
1988	11,234				1,038,032			210,921					
1989	12,662				1,457,462			245,819					
1990	15,404				1,627,054			340,491					
1991	18,737				2,453,688			302,041					
1992	21,410				2,600,682			350,197	1,930,857				
1993	23,283				3,017,435			390,109	2,145,230				
1994	25,667				3,705,049	122,788		391,007	2,434,330				
1995	30,398					5,517,421			2,756,140				
1996	36,219					6,617,959			3,103,149				
1997	38,441					7,831,286			3,263,861				
1998	37,821					11,209,209			3,213,157				
1999	39,936					12,342,598			3,238,769				
2000	48,206					13,298,202			3,480,949				
2001	57,523					13,962,457			4,020,799				
2002	61,794					15,081,250			4,352,250				
2003	64,025					16,392,956			4,675,087				
2004	71,662					15,121,638			4,938,410				
2005	75,738					15,337,425			5,282,577				
2006	79,256					15,440,629			5,637,970				
2007	82,303					14,865,783			6,462,013				
2008	85,107					14,933,483			6,828,988				
2009	89,082								7,097,977				
2010	90,647								7,176,845				

재 정 통 계

(단위: 1948~60년도 백만원, 1961년 이후 백만원)

공보부	공보실	공보처	공업 지관리청	공업진흥청	공정 거래위원회	과학기술원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¹⁹⁷²	관세청	교육부	교육 인적자원부 ¹⁹⁷⁹	교통부	국가보훈처
		<768>							17		56	
		4							75		-	
		5							121		-	
		7							159		-	
		48							435		-	
		169							1,249		-	
	464								6,029			
	1,547								24,916			
	1,509								30,613			
	1,672								39,611			
	1,934								58,148			
	-								61,868			
406												37
727												284
533												250
546												275
640												343
1,137							-	-				520
1,315							177					519
1,864							378					830
2,170							503					1,040
2,757							572	1,475				1,228
				-	-		671	1,452				1,477
				-	-		980	1,904				1,626
			155	371			1,469	2,026				2,113
			234	672			1,186	3,009				3,011
			443	779			1,438	3,615				4,342
			566	877			1,991	4,609				3,142
			164	4,993			16,755	6,291				19,660
			-	4,860			19,446	8,227				29,803
			-	7,006			31,444	12,143				67,102
			-	12,357			45,800	16,487				67,503
			-	17,023			76,815	20,749				44,661
				12,331			87,952	24,995				72,417
				11,808			105,437	24,543				78,990
				11,051			108,592	25,216				81,648
				10,112			172,853	29,441				84,200
				11,613			214,057	33,487				97,917
				15,951			246,492	38,063				91,905
				20,012			248,746	46,917				100,271
				28,321			266,389	53,753				100,358
		22,941		23,087			392,008	64,099	5,586,021		189,404	366,712
		27,682		23,382			355,816	76,379	5,549,377		285,606	527,428
		32,159		31,389			391,804	90,104	6,462,736		414,160	590,242
		36,203		40,329			395,325	99,720	7,397,249		842,446	624,447
		41,859		46,127		3	557,092	109,558	8,241,342		1,156,024	719,127
		50,304		44,430	10,307		666,191	124,771	9,738,027			793,261
		53,724		51,602	13,983		803,401	144,765	11,029,825			883,485
		53,557			17,144		915,880	158,609	12,067,851			1,011,831
		6,383			15,999		946,876	160,473	12,130,975			1,072,282
					17,603		807,537	160,268	11,417,942			1,092,545
					19,317		850,844	182,665	12,704,309			1,257,628
					22,010		985,927	218,695		17,868,588		1,408,741
					24,615		1,137,861	241,200		18,726,285		1,618,712
					26,425		1,268,155	269,543		20,749,658		1,964,025
					28,779		1,414,374	294,310		22,112,749		2,121,461
					33,288		1,833,409	315,531		27,466,891		2,246,996
					38,688		2,071,580	336,338		28,540,223		2,391,394
					39,488		2,044,830	357,062		30,486,331		2,678,361
					66,950		2,802,370	378,933		35,318,990		2,975,230
					75,874		39,126,994	398,493				3,193,259
					73,829		40,872,523	402,767				3,432,533

2. 일반회계 세출 소관별결산액 <계속>

구 분	국가안전 기획부 [㉠]	국가안전 보장회의	국가 인권위원회 [㉡]	국가정보원	국가원로 자문회의	국가청렴 위원회 [㉢]	국가청소년 위원회	국무총리실	국민경제 자문회의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	국방부	국세청	국정홍보처
1948								<39>			55		
1949								<411>			239		
1950								<137>			1,324		
1951								<397>			924		
1952								<664>			2,257		
1953								2			-		
1954								3			-		
1955								-			-		
1957								-			-		
1958								-			127,323		
1959								-			139,198		
1960								-			147,067		
1961								-			16,599		
1962								-			20,474		
1963								-			20,479		
1964								57			24,926		
1965								68			29,874		
1966		21						101			40,542	1,500	
1967		34						121			49,553	2,109	
1968		72						145			64,708	2,921	
1969		83						188			84,382	3,742	
1970		101						291			102,335	4,317	
1971		131						415			134,738	4,834	
1972		133						443			173,909	5,284	
1973		190						616			183,469	5,659	
1974		216						937			293,923	8,444	
1975		305						1,920			438,574	12,239	
1976		409						1,509			698,564	17,679	
1977		486						2,050			941,979	25,453	
1978		559						2,514			1,279,660	33,076	
1979		666						3,891			1,513,365	44,172	
1980		855						4,712			2,240,707	52,327	
1981		1,114						7,018			2,654,405	65,953	
1982	8,340	1,206						9,399			3,053,996	79,350	
1983	8,462	1,116						8,000			3,221,854	88,364	
1984	8,603	1,056						8,350			3,361,263	92,747	
1985	9,297	1,136						9,698			3,665,604	102,081	
1986	9,995	519						11,252			4,182,149	113,807	
1987	11,094	59						12,624			4,626,848	126,324	
1988	12,425	66			403			14,220			5,334,756	146,685	
1989	13,917	73			79			13,411			5,950,938	174,117	
1990	16,224	80						15,033			6,607,589	211,263	
1991	96,923	86						20,294			7,679,216	257,065	
1992	198,763	105						18,883			8,309,050	313,866	
1993	198,631	114						18,556			8,811,638	347,860	
1994	166,699	132						12,379			9,743,525	393,808	
1995	186,279	150						15,745			10,935,809	471,945	
1996	193,486	181						17,632			12,459,081	551,158	
1997	229,196	186						19,108			13,101,615	582,151	
1998	189,793	411						36,965			13,594,109	581,021	
1999		525		204,090				312,892	96		13,337,003	595,132	29,152
2000		665		227,680				556,729	1,410		14,879,520	691,228	43,927
2001		721	388	244,199				616,108	1,076		15,496,841	755,329	43,054
2002		786	14,776	264,147				723,749	1,209		16,671,633	817,385	48,309
2003		4,997	17,068	287,984				786,982	1,257		17,706,771	879,652	50,802
2004		4,629	18,729	389,299				824,176	1,431		19,153,796	949,235	55,952
2005		4,444	20,406	396,026		19,073	18,722	294,835	2,074	3,012	21,049,440	976,479	61,697
2006		5,360	21,557	429,226		19,695	19,824	307,390	2,285	14,515	22,512,864	1,048,002	61,351
2007		2,271	21,908	449,891		22,840	35,387	328,664	2,282	23,193	17,816,487	1,154,182	62,635
2008		2,451	23,349	476,616		25,126	27,804	356,218	2,328	27,367	18,967,714	1,372,898	62,089
2009			23,373	485,983				393,009	58,060		20,266,306	1,340,283	
2010			22,284	483,672				453,519	60,748		20,459,698	1,414,490	

재정 통계

(단위: 1948~60년도 백만원, 1961년 이후 백만원)

국도통일원	국토해양부 ³³⁾	금융위원회 ³⁴⁾	국회	민의원	참의원	군사원호청	기상청	기획예산위원회 ³⁵⁾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³⁶⁾	기획처	내각	내각사무처
			<786>							<300>		
			3							136		
			7							81		
			17							2,267		
			42							8,658		
			138							16,576		
				359	-					23,832		
				1,158	-					-		
				1,197	-					-		
				1,674	-					-		
				2,533	-					-		
				2,911	446					-		
			181	129	52	1,458					-	283
			-	-	-	-					-	596
			17	-	-	-					47	827
			444	-	-	-					-	-
			550	-	-	-					-	-
-			941									
-			1,046									
-			1,474									
93			1,592									
194			1,930									
264			2,555									
413			3,519									
461			3,160									
563			4,154									
561			5,665									
707			7,254									
1,059			10,135									
1,345			12,057									
1,748			14,173									
2,454			15,348									
7,038			18,932									
4,938			24,505									
4,888			27,042									
5,224			28,191									
5,734			32,557									
7,042			36,466									
8,061			40,436									
10,618			60,982									
16,119			71,803									
17,226			80,231									
24,608			89,682									
27,468			97,120									
21,946			107,608						17,887			
23,371			121,709						23,313			
28,331			130,302						26,675			
32,638			151,549						31,598			
92,367			169,697						36,698			
56,205			152,397						42,802			
			153,883						49,389			
			177,262						50,515	6,561		
			194,996						55,721	5,026	237,107	
			218,932						67,232		420,712	
			250,563						82,284		420,369	
			293,582						88,387		419,446	
			335,286						99,086		431,247	
			356,601						113,564		403,098	
			394,264						129,702		1,536,499	
			421,066						153,369		4,158,608	
			439,533						177,336		4,714,238	
	803,830		421,066						200,004		7,234,049	
	22,502,966	2,886,807	439,533						223,951		15,808,385	
	21,961,356	3,146,391	447,856						242,592		14,445,785	

2. 일반회계 세출 소관별결산액 <계속>

구 분	내무부	노동부	노동청	농림부 (농림수산식품부) ²⁰⁰	농수산부	농촌진흥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실	대통령실 ²⁰¹	동력자원부	무인소장관실	문교부	문화부
1948	40			16			1		1		-		
1949	188			60			6		<342>		-		
1950	408			60			8		<649>		-		
1951	536			459			17		<275>		-		
1952	1,335			101			60		2		-		
1953	1,968			2,447			219		5		<506>		
1954	4,767			5,617			482		10		<371>		
1955	29,147			6,094			1,183		28		-		
1957	31,446			4,564			1,092		28		-		
1958	36,548			5,045			1,487		40		-		
1959	50,035			7,153			1,984		49		-		
1960	50,556			11,880			2,405		74		-		
1961	5,002		-	2,843		-	299		19			7,291	
1962	5,139		-	3,724		-	278		15			8,603	
1963	5,891		17	1,266		-	328		26			10,005	
1964	6,263		32	1,288		229	359		152			11,391	
1965	8,169		41	1,243		213	575		269			13,938	
1966	15,875		114	777		284	849		133			19,292	
1967	28,490		116	878		296	991		144		-	24,557	
1968	40,076		199	1,997		377	1,067		204			35,332	
1969	57,955		331	1,444		474	1,377		637			45,269	
1970	76,357		411	2,359		470	1,815		399			58,205	
1971	94,348		576	2,768		400	2,134		358			74,460	
1972	108,022		609	2,953		488	2,741		502			94,475	
1973	105,430		566	1,926		513	2,981		490			99,485	
1974	127,760		980	4,237		805	3,785		831			134,338	
1975	185,470		981	4,880		1,075	5,564		763			195,042	
1976	250,122		1,355		6,856	1,430	8,229		2,719	-		317,249	
1977	329,417		10,918		107,922	7,055	12,050		1,597	-		469,662	
1978	435,382		15,722		117,681	8,181	17,425		2,943	92,507		613,968	
1979	599,463		25,246		452,416	10,470	23,336		2,756	148,458		861,920	
1980	808,404		34,450		265,017	12,407	30,807		3,086	196,438		1,125,720	
1981	1,001,755		35,369		406,821	15,385	41,068		5,268	282,759		1,461,578	
1982	1,283,364	46,145			359,993	20,527	50,821	6,645	7,286	185,280		1,909,167	
1983	1,544,490	52,893			377,581	22,532	58,524	8,200	8,403	166,212		2,150,011	
1984	1,715,397	65,188			774,558	23,197	62,466	7,486	8,588	152,147		2,265,393	
1985	1,744,499	66,146			900,745	26,434	68,435	8,393	9,069	150,640		2,493,140	
1986	2,108,609	60,188			829,983	29,983	75,831	9,286	10,333	127,151		2,766,011	
1987	2,551,545	76,071			1,061,716	33,303	84,760	10,213	11,177	104,713		3,125,648	
1988	2,796,194	94,865			730,512	37,450	103,471	11,462	11,927	86,596		3,692,875	
1989	3,414,677	120,549			885,472	43,718	125,226	12,843	22,571	91,456		4,336,101	
1990	4,414,441	131,279			1,230,825	49,822	145,423	14,556	33,816	90,371		85,924	85,924
1991	5,394,445	126,703			1,361,275	67,225	181,243	17,434	23,487	98,073		119,755	119,755
1992	4,250,377	147,229			1,900,591	93,380	218,175	21,026	21,988	112,116		134,008	134,008
1993	4,754,036	166,964			2,226,501	113,708	249,073	22,021	21,600	4,249		15,697	15,697
1994	5,368,085	191,506			2,742,235	136,450	193,279	22,837	24,015				
1995	6,035,396	222,406			3,841,955	173,643	228,872	28,495	26,508				
1996	6,950,646	265,529		2,880,210		201,597	268,861	37,549	30,474				
1997	7,121,092	298,610		2,849,360		227,885	301,416	43,325	32,262				
1998	717,183	527,018		3,278,715		219,162	306,960	35,216	32,601				
1999		696,358		3,643,228		219,875	321,451	36,153	34,100				
2000		621,149		3,414,988		245,828	372,633	42,824	36,533				
2001		608,385		3,849,883		270,587	437,900	46,178	42,085				
2002		564,960		5,898,172		303,404	499,041	49,674	42,576				
2003		579,428		5,670,896		330,963	566,598	55,266	50,415				
2004		744,322		5,566,230		353,944	621,290	54,261	54,896				
2005		698,071		5,108,258		366,352	666,242	57,129	57,586				
2006		732,089		4,962,718		397,415	754,324	59,437	61,240				
2007		854,573		5,392,450		416,894	935,457	72,926	64,580				
2008		894,427		4,435,577		448,564	1,038,557	105,881	66,938				
2009		1,325,651		4,916,255		507,811	1,087,368		140,209				
2010		1,142,211		4,815,140		539,328	1,123,122		162,130				

재정 통계

(단위: 1948~60년도 백만원, 1961년 이후 백만원)

문화공보부	문화관광부 ⁵⁾	문화재청	민주평화통일 지문회의	반민중행위 특별위원회	방송위원회	방위사업청 ⁶⁾	법무부	법제실	법제처	병무청	보건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 ³⁰⁾
				<351>			6		<170>			
				<690>			29		<291>			
				-			42		<284>			
				-			84		<357>			
				-			207		2			
				-			687		5			
							1,620	15			405	
							4,433	-			-	
							4,402	-			-	
							4,865	-			-	
							5,602	-			-	
							6,127	-			-	
							692		3			
							825		20			
							1,019		22			
							1,050		20			
							1,836		18			
							1,791		27			
							4,136		36			
							3,126		42			
							3,932		62			
							4,722		78			
2,973							5,522		86	-		
4,149							9,348		80	-		
4,234							8,134		105	-		
4,880							11,119		165	2,923		
6,894							15,135		176	3,864		
7,223							22,076		220	5,188		
17,736							29,209		285	7,643		
23,307							41,949		360	9,761		
25,222							54,412		471	12,946		
631,492							70,458		795	16,971		
31,721							100,343		752	21,095		
36,802							137,672		848	27,110		
36,072							132,444		915	28,431		
43,581							135,582		970	28,597		
57,011							150,138		1,052	32,511		
76,410							165,167		1,237	36,286		
69,823							184,230		1,288	41,156		
69,772			4,735				214,381		1,492	47,519		
91,260			5,311				258,623		2,448	56,985		
			5,517				312,306		2,211	66,505		
			6,508				384,031		3,354	79,860		
			7,355				467,536		3,995	91,059		
191,099			7,765				522,436		4,463	96,979		
257,130			7,902				525,744		5,237	108,712	1,765,709	
328,684			8,652				607,845		6,054	115,891	1,981,867	
434,639			9,350				721,990		8,910	137,422	2,354,139	
602,557			9,910				807,136		8,734	158,417	2,829,394	
760,080			1,086				826,752		8,849	157,696	3,302,424	
786,835	85,413	5,554					838,305	7,432	136,626		4,124,892	
851,184	276,552	8,130			7,684		932,216	8,299	124,873		5,357,108	
968,855	314,577	9,255			274		1,089,971	9,521	131,831		7,582,070	
1,059,863	299,852	9,540			3,314		1,217,281	10,699	124,512		7,815,388	
1,130,741	345,255	9,940			5,411		1,344,102	12,416	112,541		8,646,805	
1,169,026	360,188	11,298			468		1,449,568	13,445	124,491		9,120,526	
858,182	290,265	12,748			479		1,564,974	15,635	130,976		8,901,656	
966,434	331,806	12,723			4,837		1,665,120	17,937	139,030		9,706,334	
1,005,783	358,014	13,733			4,844	6,680,669	1,969,419	20,207	149,245		11,529,241	
1,104,545	387,937	16,657			12,998	7,681,344	2,154,587	25,267	216,459		14,487,033	
1,155,658	459,517	16,767			318,935	8,714,014	2,202,597	21,332	215,066		19,451,104	
1,249,425	478,440	21,202			325,637	9,103,017	2,256,528	22,027	174,702		19,608,338	

2. 일반회계 세출 소관별결산액 <계속>

구 분	보건사회부	보위부	부통령실	부패방지 위원회 ²⁾	부흥부	사정위원회	사회부	산림청	산업자원부	상공부	상공자원부	소방방재청 ²⁾	수산청
1948		-	-				11			14			
1949		8	-				18			73			
1950		27	-				139			3			
1951		73	<184>				122			8			
1952		197	<649>				447			69			
1953		377	3				334			326			
1954	1,005		11		12	-	454			649			
1955	10,208		20		80	50	-			3,581			
1957	9,348		16		76	55	-			3,818			
1958	11,176		22		124	58	-			7,680			
1959	12,030		28		138	86	-			9,639			
1960	17,962		23		183	59	-			10,348			
1961	1,153		436							1,314			
1962	1,896		183							1,045			
1963	2,886		219							661			
1964	2,470		-							261			
1965	2,784		-							328			
1966	2,546		103					-		460			519
1967	3,084		139					194		438			701
1968	4,452		182					281		644			902
1969	4,281		216					400		893			859
1970	4,292		229					681		1,003			959
1971	4,789		280					724		969			961
1972	5,993		352					713		1,083			841
1973	6,685		405					663		676			807
1974	22,611		475					748		834			1,208
1975	10,728		601					949		3,238			1,642
1976	14,034		872					1,538		1,407			2,302
1977	52,149		2,415					21,108		129,987			11,541
1978	61,138		1,845					22,355		48,141			15,819
1979	128,934		2,319					27,007		40,594			24,187
1980	161,238		2,647					34,354		80,503			32,112
1981	174,711		3,298					39,903		57,060			38,729
1982	221,636							46,874		61,022			44,499
1983	274,960							42,664		58,266			43,217
1984	290,047							43,164		61,129			49,246
1985	337,035							45,279		86,192			54,394
1986	398,719							46,632		103,152			83,397
1987	521,763							51,269		89,647			119,335
1988	705,303							57,757		66,079			97,707
1989	923,531							68,572		83,588			127,868
1990	1,149,501							75,874		135,890			154,666
1991	1,457,553							94,595		191,340			177,717
1992	1,528,217							102,808		242,716			191,103
1993	1,653,591							121,011		48,705	308,806		192,014
1994								136,792					230,775
1995								155,302					253,336
1996								180,588					413,518
1997								227,785					
1998								302,037					
1999								461,951	1,033,582				
2000								419,748	1,190,228				
2001								469,337	1,468,646				
2002				12,369				462,210	1,542,965				
2003				15,852				605,885	1,866,955				
2004				15,231				554,725	1,992,571			373,616	
2005								532,626	1,662,671			377,800	
2006								537,224	1,595,105			982,444	
2007								792,097	1,961,847			132,026	
2008								892,537	2,163,289			147,189	
2009								1,287,644				135,877	
2010								1,194,293				478,700	

재정 통계

(단위: 1948~60년도 백만원, 1961년 이후 백만원)

식품의약품 안전청 ⁽¹⁾	심계원	여성부 (여성가족부 05-) ⁽²⁾	여성특별 위원회 ⁽³⁾	예산청 ⁽⁴⁾	외교통상부 ⁽⁵⁾	울산개발계획 본부	원자력원	원자력청	원호처	재건국민운동 본부	재정경제부 ⁽⁶⁾	정무장관(제1)실
	<146>				<802>						64	
	<318>				4						49	
	<410>				11						185	
	1				12						568	
	6				23						5,057	
	18				141						3,461	
	44				333		-				13,888	
	170				1,053		-				54,505	
	165				988		-				52,317	
	199				1,227		-				38,846	
	265				1,550		533				17,893	
	266				1,731		1,271				28,409	
	27				537	-	153				11,750	
	43				590	18	121			386	21,470	
	10				666	6	95			383	3,882	
	-				999	-	95			228	3,804	
	-				1,353	-	94			-	5,625	
					1,919			159	-		5,675	
					2,006			188	-		4,998	
					2,704			279	-		24,978	
					3,316			375	-		3,344	
					3,910			393	45		2,408	
					4,848			472	13		1,080	
					7,411			526	15		1,161	
					9,156			53	-		3,901	
					11,078			-	-		11,713	
					17,228			-	-		12,079	
					21,994				-		12,249	
					25,890				-		102,543	
					36,038				39,864		129,742	
					45,193				48,952		156,833	
					61,008				62,455		306,423	
					80,373				79,285		285,626	
					91,486						165,238	
					97,448						251,518	
					99,422						329,435	
					118,063						490,790	
					136,454						296,003	
					136,120						314,607	
					143,593						1,105,818	
					162,898						1,410,130	
					236,050						2,889,660	
					394,685						2,362,588	
					347,862						538,136	
					314,918						565,281	
					356,494						943,684	2,286
					379,828						3,231,410	2,307
					415,568						3,858,608	2,636
					477,041						2,721,720	2,822
33,634			12,508	336,797	611,053						4,213,924	408
51,111			11,011	200,710	529,201						8,272,552	
58,033			10,354		542,769						8,391,783	
65,612		31,250	220		610,576						4,060,421	
89,818		42,309			676,256						4,569,083	
100,105		42,917			787,190						4,859,459	
108,086		278,087			890,879						2,917,135	
130,807		684,035			923,920						4,744,248	
154,842		872,938			879,990						6,639,795	
165,352		1,137,934			1,095,963						4,206,603	
178,511		1,556,501			1,167,803						4,005,229	
207,950		86,046			1,317,103							
239,102		90,261			1,520,357							

2. 일반회계 세출 소관별결산액 <계속>

구 분	정무장관(제2)실	정보통신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중앙정보부*	지식경제부 ³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³¹⁾	철도청*	체신부	체육부 (체육청소년부 90~)
1948											13	
1949											-	
1950											-	
1951											-	
1952											-	
1953											-	
1954					-							
1955					-							
1957					-							
1958					15							
1959					36							
1960					1,752							
1961					30		-					
1962					-		107					
1963					251		75					
1964					76		67					
1965					87		216					
1966					107		198					
1967					861		188					
1968					256		348					
1969					690		603					
1970					284		908					
1971					1,742		1,639			-		
1972					1,833		1,767			694		
1973					993		1,391			-		
1974					545		2,039			-		
1975					2,515		1,915			-		
1976			-		1,011		2,620			-	-	
1977			-		1,518		3,399			-	-	
1978			-		6,755		4,325			21,381	-	
1979			101,848		2,582		4,670			69,756	-	
1980			2,000		10,495		5,730			27,213	11,945	
1981			2,000		16,954		6,560			25,093	12,560	
1982					6,507					52,750	6,678	12,310
1983					6,912					62,900	6,832	22,445
1984					7,877					55,500	-	32,251
1985					18,264					47,000	2,340	44,031
1986					9,092					52,000	2,588	38,961
1987					31,310					52,018	2,721	39,846
1988					25,767					60,800	4,200	38,847
1989					17,961					137,662	9,300	46,655
1990					29,786					69,417	7,000	44,061
1991					42,316					123,778	10,940	47,897
1992					130,604					104,107	10,500	58,883
1993					59,057					172,702	13,000	5,409
1994	7,237	16,600			71,567					383,041		
1995	8,904	17,376			143,338					635,677		
1996	7,919	21,200		73,505	169,095					907,669		
1997	13,605	208,316		871,104	179,052					1,204,566		
1998	1,200	299,126		1,783,385	182,894					417,760		
1999		495,893		2,050,024	92,145	3,174				368,530		
2000		442,083		1,431,229	207,328	4,559				801,962		
2001		394,770		1,596,659	107,548	6,246				794,025		
2002		242,443		1,664,981	302,814	6,644				904,424		
2003		280,169		1,842,440	166,347	7,894				1,065,774		
2004		141,914		2,091,478	345,142	65,075				1,073,202		
2005		180,652		1,431,704	171,792	84,212			2,217			
2006		170,205		1,879,714	225,577	100,864			9,410			
2007		788,825		1,408,572	367,427	121,414			11,933			
2008		887,551		1,339,036	622,207	126,168		1,957,100	19,657			
2009				4,944,905	216,036			4,258,436	17,789			
2010				1,475,374	275,666			3,450,514	14,131			

2. 일반회계 세출 소관별결산액

구 분	해양경찰청 [※]	해양수상부 [※]	해양항만청	해우청	해시위원회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2)(3)}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 89~)	혁명경찰부	혁명재판소	환경부	합 계
1948								-				300
1949								-				910
1950								-				2,429
1951								<69>				5,800
1952								<31>				21,640
1953								<74>				29,923
1954				391	4			-				64,045
1955				-	-			<300>				138,596
1957				-	-			-				141,921
1958				-	-			-				278,013
1959				-	-			-				309,439
1960				-	-			1				351,596
1961									21	18		50,902
1962									12	14		73,256
1963									-	-		59,959
1964									-	-		62,907
1965									-	-		81,778
1966												125,209
1967												167,184
1968												242,820
1969												328,226
1970												403,985
1971								-				491,904
1972								-				602,137
1973								45				569,992
1974								45				929,267
1975								50				1,374,376
1976			3,056					61				2,019,230
1977			38,140					96				2,739,935
1978			48,959					117				3,538,675
1979			67,069					190				5,053,242
1980			92,522					202				6,486,054
1981			108,166					256				7,907,837
1982			138,893					285			19,079	9,178,908
1983			117,691					307			18,720	10,180,764
1984			120,149					372			29,015	11,072,062
1985			118,208					328			36,539	12,406,393
1986			157,240					345			47,091	13,796,462
1987			167,818					355			63,039	15,794,454
1988			224,066					1,216			52,451	284,156
1989			242,111					4,430			63,282	310,867
1990			245,347					8,481			81,493	339,667
1991			303,416					11,337			175,369	518,111
1992			404,224					19,759			53,858	508,253
1993			402,693					16,001			69,323	520,420
1994			341,889					8,412			134,193	42,794,678
1995			346,284					6,789			192,359	1,106,732
1996	81,934	375,463	306,319					8,118			249,633	58,480,817
1997	248,765	1,074,021						8,506			236,183	63,962,100
1998	266,467	1,333,590				8,153,201		8,158			396,799	73,225,982
1999	289,658	1,235,995				9,942,375		8,225			375,140	11,955,966
2000	316,722	1,215,258				10,480,015		9,527			453,175	87,464,491
2001	371,644	1,400,996				14,390,413		10,132			476,672	98,668,535
2002	421,067	1,713,524				16,767,823		12,095			428,194	108,918,281
2003	489,585	2,444,548				16,816,191		13,519			542,133	117,222,909
2004	506,862	2,264,937				15,900,997		15,777			365,799	118,236,238
2005	576,919	2,300,184				21,844,573		15,339			1,546,800	27,112,889
2006	626,299	2,413,948				23,864,362	45,259	17,626			1,547,645	29,456,203
2007	748,773	2,420,602				26,906,241	80,122	19,961			1,698,600	32,637,913
2008	813,403	2,582,182				31,509,697	326,665	22,728			1,820,254	38,021,203
2009	844,781					31,196,597	577,087	23,591			2,788,712	36,135,311
2010	901,235					31,193,191	690,798	25,931			2,605,111	36,336,254

- 주: 1) < >는 천환 단위
- 2) 1954, 1954년 국회는 국회 민의원
 - 3) '95년 재무부에서 재정경제원으로 바뀜, 그리고 '98년부터는 재정경제부로 바뀜
 - 4) '98년부터 외무부가 외교통상부로 바뀜
 - 5) '98년부터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로 바뀜
 - 6) '96년에 해양수산부 신설
 - 7) '98년에 과학기술처가 과학기술부로 바뀜
 - 8) '96년에 해양경찰청 신설
 - 9) '96년에 중소기업청 신설
 - 10)~14) '98년 신설
 - 15) 1999년부터 국가정보원으로 바뀜
 - 16) 2001년부터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뀜
 - 17)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신설
 - 18) 2005년부터 부패방지위원회가 국가청렴위로 변경
 - 19) 2005년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신설
 - 20) 2002년에 부패방지위원회 신설
 - 21) 2004년 소방방재청 신설
 - 22) 2001년 여성부 신설, 2005년 여성가족부로 변경
 - 23) 2005년 신설
 - 24) 민영화
 - 25) 2005년 신설
 - 26) 2005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행자부소속에서 특허청소속으로 환원
 - 27) 2008년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
 - 28)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기획재정부로 통합
 - 29) 2008년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
 - 30) 2008년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
 - 31) 2009년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변경
 - 32) 2009년 대통령비서실에서 대통령실로 변경
 - 33) 2008년 국토해양부 신설
 - 34) 2009년 금융위원회 신설
 - 35) 2007년 방위사업청 신설
 - 36) 2008년 지식경제부 신설
 - 37) 2009년 특임장관실 신설
 - 38)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신설

자료: 재무부, 『대한민국정부결산관련통계자료』, 1961
 재정경제부, 『결산개요』, 1961~2000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http://www.digitalbrain.go.kr/>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한국 GDP 대비 법인세 비중, OECD 평균의 1.2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세수 비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율을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12일 열린 토론회에서 “2008년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5%보다 높다”고 말했다. 같은 해 미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는 1.8%, 일본은 3.9%로 한국보다 낮았다.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감안한 투자자의 실질 세율도 한국이 주요국보다 높았다. 전 실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 세율이 한국은 47.8%로 OECD 평균인 41.7%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이 세율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법인의 세부담이 개인에 비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08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개인소득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 대비 44.4%에 불과했지만 법인세 비중은 OECD 평균의 1.2배였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합친 비율도 개인은 OECD 평균의 52%였지만 법인은 78.2%에 달했다.

전 실장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또 “법인세액은 경기 상황에 따라 증감이 크

다”고 말했다. 세율을 낮추더라도 경기가 좋아지면 세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법인세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목”이라며 “법인세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2011-7-12일자〉

2050년 국가채무 1경(京)원 넘는다

재정부-조세研 장기재정전망 추계

현행 연금·의료지출 수준이 계속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20년에는 1천조원, 2050년에는 1경(京)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의료 지출이 일정 속도로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국가채무는 2020년 1천조원이 넘고, 2050년 1경2천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결과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작성한 205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추계에 담겼다.

기존에 연금과 의료 등의 분야에서 소관 기관별로 장기재정계산이 실시된 적은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장기재정전망이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 추계에 따르면 조세부담률 수준, 연금·의료 등을 현행 제도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오는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2.6%, 2030년 61.9%, 2040년 94.3%, 2050년 137.7%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제가 된 성장률과 국내총생산 등의 전망치는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기 거시경제 계획치와 2008년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에서 설정된 거시경제전망 전제가 사용됐다.

이런 전제에 따라 계산하면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963조5천억원으로 1천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에는 9천 807조7천억원으로 1경원을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산됐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1인당 의료비가 소득증가율보다 높게 상승하는 등 의료지출이 크게 증가하면 재정 악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의료지출 증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고 가정하면 국가채무는 2010년 GDP의 33.5%에서 2020년 47.1%, 2030년 73.4%, 2040년 114.5%, 2050년 168.6%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거시경제 전망치를 전제로 이를 계산하면 2020년의 국가채무는 1천65조3천억원, 2050년은 1경2천8조5천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처음으로 종합적인 장기재정전망 추계를 실시한 것은 연금과 의료분야의 소관기관에서 각자 장기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지만 기관 간 전망 전제·결과 등의 차이와 일관성 부족으로 불필요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지만 잠재성장률 둔화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저출산·고령화 진전에 따른 복지지출 급증 등에 따라 건전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보고 종합적인 장기재정전망의 필요성을 절감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7개

분야를 대상으로 4개 공적연금의 기존 전망결과와 유럽연합(EU) 방법 등에 따라 조세연구원이 별도 추계한 건강보험 등의 전망 결과를 종합해 추계결과를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연금·의료 등 현행제도를 유지할 때에도 고령화에 따른 급속한 지출증가가 중장기 재정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따라서 연금·의료 등 재정개혁에 본격 착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 장기재정전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정부는 유럽연합(EU) 방법 등을 참고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장기재정전망 추진체계를 구축, 재정위험성을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에 장기재정전망 협의회를 구성해 거시경제지표 등 재정전망의 전제에 대한 통일적인 지침을 제공, 새로운 장기전망 추진 체계에 맞춰 각 기관별 전망 전제와 시기 등을 일치시켜 나갈 계획이다.

각 연금관리기관의 전망결과 공개 의무화도 추진되며 정부는 각 기관의 전망결과를 종합해 2013년 하반기에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11-07-05일자)

5대공기업 빚 200조 넘었다..국가 재정위험 키워

정부·지자체·가계부채도 눈덩이

1997년 외환위기의 근본 원인이었던 대마불사(大馬不死)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덩치만 키우면 무조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이번에는 공공 부문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주택, 전력, 가스, 석유, 철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5개 분야 공기업이 단적인 사례다.

이들 5대 공기업이 빚을 과도하게 늘리고 있어 국가 재정, 나아가서는 국민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공기업 빚은 당장 재정 부담은 아니지만 사업이 부실해지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5대 공기업의 지난해 말 부채 총액은 199조9,000억원에 달했다.

2006년 88조8,000억원에서 불과 4년 만에 2.25배나 급증한 것이다. 286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386조6,000억원)에서 5대 공기업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51.7%로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4년 전 39.2%였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들어 급증한 셈이다.

대대적 구조조정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자금 투입을 막을 수 없는 셈이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 영향으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공기업 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포퓰리즘을 감안하지 않아도 대형 공기업 부채 급증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5대 공기업 부채는 2012년 271조원, 2015년에는 329조원까지 늘어나 3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게 정부 예상이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외환위기 때 은행처럼 부실해진 공기업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 빚은 부채공화국 한국의 한 단면일 뿐이다. 국가채무(393조원)와 가계부채(801조원), 지자체 부채(75조원) 등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재정위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매일경제신문 2011-7-4일자〉

장기요양보험, 노인건강·재정절감에 기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방문요양과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서비스 대상인 노인의 건강을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주년을 맞아 29일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이태화 연세대 간호학과 교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은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 교수가 지난 2008년 4월부터 3년 연속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 15만5천317명(사망자 제외)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요양등급은 2008년 평균 2.27등급에서 지난해에는 2.37등급으로 개선됐다.

같은 기간 등급별 비율을 보면 1등급은 23%에서 17%로 줄어든 반면, 2등급은 26%에서 28%로, 3등급은 51%에서 55%로 늘었다. 장기요양 필요도가 가장 높은 1등급 비율은 줄고 3등급 비율은 늘어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를 낸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박노옥 박사는 제도 도입 이전인 2007년 2만3천535명이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수가 지난해 말 현재 20만3천465명으로 급격하게 늘어 막대한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2008년 8천266억원, 2009년 3조3천975억원, 2010년 4조3천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예상되는 부가가치 창출 규모는 6조9천33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박사는 또 2008년과 2009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 15만1천359명의 진료비 변화 형태를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비교해 건강보험 급여에 미친 영향도 분석했다.

비교연구 결과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1인당 총 진료비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418만원이나

적게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9년 한 해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집단의 건강보험 급여비 감소 규모는 1인당 평균 307만~34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진료비 절감효과를 장기요양보험 전체 이용자 29만천389명에 적용하면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 감소분은 약 8천954억~9천9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1-06-29일자〉

재정포럼

2011년 7월호 통권 제181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허경선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정숙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권재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행정원)

■ 월간 재정포럼

2011년 7월 15일 발행 / 제15권 제7호(통권 제181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해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